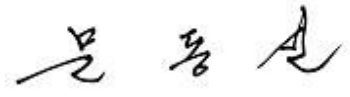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정보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39호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이 조제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및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회 개최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시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사전심의 조정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정보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

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 3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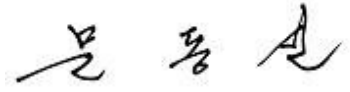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조달) 시장은 군산시 정보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읍·면·동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0호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군산시 이·통·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고 통의 밑에 반을 둔다.

③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통장을 두며,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확정기준) 통·반과 분리의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의 반은 20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1개 법정동의 총 세대수가 1개통 구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통으로 구성한다.
3. 분리의 반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통장의 임명)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기진작)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통·반 의 명칭과 관할구역

1.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구읍	옥정리	옥정	1	옥정	윗골	일원
	"	"	2	"	아래뜸	"
	"	척동	1	척동	윗뜸·아랫뜸	"
	상평리	읍내	1	읍내	동문밖	"
	"	"	2	"	동문안	"
	"	"	3	"	목화실	"
	"	광월	1	광월	한절	"
	"	"	2	"	샛터뜸	"
	"	"	3	"	서문안	"
	"	신덕	1	신덕	강낭실·신덕메	"
	이곡리	개정	1	개정	개그뜸	"
	"	"	2	"	농장뜸	"
	"	원이곡	1	원이곡	귀일·메외뜸	"
	"	신흥	1	신흥	향교골·들메뜸	"
	"	신평	1	신평	신평	"
	"	평유	1	평유	평유동	"
	수산리	수왕	1	수왕	안녁골	"
	"	"	2	"	웃골·반녁골	"
	"	양등	1	양등	양등	"
	"	"	2	"	지너별	"
	"	가산	1	가산	장뚝뜸·교회뜸	"
	"	"	2	"	가산뜸	"
	"	신기	1	신기	신기뜸·창고뜸	"
	"	우포	1	우포	아랫뜸	"
	"	"	2	"	윗뜸	"
	"	김제	1	김제	김제	"
	오곡리	원오곡	1	원오곡	오리실·윗뜸	"
	"	다기	1	다기	다기·방죽뜸	"
	"	신장	1	신장	안동네·장뚝뜸	"
	선제리	선제	1	선제	건너뜸	"
	"	"	2	"	자은뜸	"
	"	"	3	"	큰뜸	"
	"	"	4	"	밭가운데	"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구읍	선제리	정리	1	정리	지서뜸·다리뜸 일원	
	"	"	2	"	떡메뜸 "	
	"	오산	1	오산	자리메·회관뜸 "	
	"	우치산	1	우치산	넘어뜸 "	
	"	"	2	"	가운데뜸·건너뜸 "	
	"	어은리	동마산	1	동마산	멀메 "
	"	"	"	2	"	뒷뜸 "
	"	"	서마산	1	서마산	바산 "
	"	"	"	2	"	양수뜸 "
	"	"	둔산	1	둔산	석산뜸 "
	"	"	"	2	"	중뜸 "
	"	"	"	3	"	웃뜸 "
	"	"	상산	1	상산	원뜸·석산뜸 "
	"	"	사호촌	1	사호촌	정수뜸 "
	"	"	"	2	"	외난인촌 "
	"	"	칠호촌	1	칠호촌	칠호촌·철로뜸 "
	"	"	중야	1	중야	중야123호 "
	"	"	광야	1	광야	콩나물고개, 양수뜸 "
	"	"	"	2	"	사겨장 "
	"	"	신어은	1	신어은	구레이촌 "
	"	"	"	2	"	큰뜸 "
"	"	"	3	"	다리뜸 "	
"	"	어은	1	어은	산밑·염전뜸 "	
"	"	"	2	"	동뜸 "	
"	"	"	3	"	수문뜸 "	
읍계	7	33	58			
옥산면	옥산리	여로	1	여로	장수고개 일원	
	"	"	2	"	나무절 "	
	"	"	3	"	새뜸 "	
	"	"	4	"	큰뜸 "	
	"	대려	1	대려	원두만개 "	
	"	"	2	"	원대리 "	
	"	"	3	"	그옥리 "	
	"	내류	1	내류	안버들 "	
	"	옥교	1	옥교	옥교 "	
	"	신성	1	신성	신성뜸 "	
	"	"	2	"	대상APT "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산면	남내리	망동	1	망동	망동	일원
	"	남내	1	남내	지제	"
	"	"	2	"	원남내	"
	"	구성	1	구성	구성물	"
	"	"	2	"	용호실	"
	"	우동	1	우동	우동	"
	쌍봉리	북내	1	북내	북내	"
	"	접산	1	접산	접산	"
	"	봉동	1	봉동	산정	"
	"	"	2	"	큰땀	"
	"	"	3	"	당매	"
	"	봉서	1	봉서	돌머리	"
	"	"	2	"	아래땀	"
	"	평사	1	평사	평사	"
	"	신기	1	신기	신기촌	"
	당북리	신당	1	신당	신당	"
	"	원당	1	원당	원당	"
	"	"	2	"	내당	"
	"	"	3	"	정자나무골	"
	"	"	4	"	외당	"
	"	백석	1	백석	백석	"
	"	한림	1	한림	한림	"
	"	"	2	"	칠다리	"
	"	석교	1	석교	석교	"
	금성리	금성	1	금성	정지멸	"
	"	"	2	"	큰땀	"
	"	"	3	"	방죽안	"
"	외류	1	외류	외류	"	
면계	5	22	39			
회현면	월연리	오봉	1	오봉	뜯밑	일원
	"	"	2	"	밭가운데	"
	"	"	3	"	돌땀	"
	"	용연	1	용연	용땀	"
	"	"	2	"	연못.세가오땀	"
	"	중야	1	중야	안땀.바깥땀	"
	"	월하산	1	월하산	태변땀	"
	"	"	2	"	안동네	"
	금광리	월평	1	월평	매바끄	"
	"	"	2	"	돌땀	"

읍면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회현면	금광리	월평2	1	월평2	큰뜸.방아뜸	일원	
	"	월당	1	월당	큰뜸.구렁목	"	
	"	금당	1	금당	금당	"	
	"	광지산	1	광지산	광지산	"	
	"	금광	1	금광	동곶뜸	"	
	"	"	2	"	간치앵이	"	
	"	신기촌	1	신기촌	위뜸	"	
	"	"	2	"	아래뜸	"	
	"	옥성	1	옥성	동뜸	"	
	"	"	2	"	중뜸.서뜸	"	
	"	옥흥	1	옥흥	동뜸.서뜸	"	
	"	옥삼	1	옥삼	동뜸.서뜸	"	
	대정리	대지산	대지산	1	대지산	안뜸.간치앵이	"
	"	전중	전중	1	전중	안터	"
	"	"	"	2	"	중터.서당뜸	"
	"	내기	내기	1	내기	내기	"
	"	서기	서기	1	서기	안뜸.바깥뜸	"
	"	유평	유평	1	유평	평유동	"
	"	"	"	2	"	구평	"
	세장리	죽동	죽동	1	죽동	윗뜸.아래뜸	"
	고사리	대위	대위	1	대위	대위	"
	"	척동	척동	1	척동	안동네	"
	"	"	"	2	"	바깥뜸	"
	학당리	구학당	구학당	1	구학당	구학당	"
	"	원학당	원학당	1	원학당	원학당	"
	"	신평	신평	1	신평	안풍촌	"
	"	"	"	2	"	원풍촌	"
	"	풍성	풍성	1	풍성	동곶	"
	"	"	"	2	"	충뜸.서곶뜸	"
	"	풍신	풍신	1	풍신	풍삼.신당촌	"
	"	신당	신당	1	신당	큰뜸.새뜸	"
	"	신학당	신학당	1	신학당	신학당	"
	"	오산촌	오산촌	1	오산촌	중뜸	"
	"	"	"	2	"	안뜸	"
	원우리	표산	표산	1	표산	안동네	"
	"	"	"	2	"	바깥동네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회현면	원우리	용화	1	용화	안뜸	일원
	“	“	2	“	신개뜸	“
	“	“	3	“	두메	“
	“	구울	1	구울	매바꾸	“
	“	“	2	“	안터	“
	“	“	3	“	영멸	“
	증석리	증석	1	증석	길가뜸	“
	“	“	2	“	중뜸·안동네	“
	“	구복	1	구복	구복	“
	“	“	2	“	들가운데	“
	“	방채	1	방채	방채	“
면계	8	36	57			
임피면	읍내리	동상	1	동상	백골동·구구장터	일원
	“	남상	1	남상	개양골	“
	“	“	2	“	범호재·셋터	“
	“	성내	1	성내	성안·향교	“
	“	“	2	“	감나무골	“
	“	서상	1	서상	다리코·재석골	“
	“	“	2	“	구장터·상가	“
	“	안흥	1	안흥	쪽지골·백산골	“
	축산리	교축	1	교축	재살방죽·안유곡리	“
	“	“	2	“	지사골	“
	“	계남	1	계남	한달고개·윗동네	“
	미원리	서모	1	서모	신흥촌·갯벌	“
	“	미산	1	미산	모정뜸·비삼거리	“
	“	서원	1	서원	서원골·바늘고지	“
	“	남서원	1	남서원	남정골·인천골	“
	보석리	구절	1	구절	선바위·종바위	“
	“	왕산	1	왕산	초장말·재실뜸	“
	“	죽엽	1	죽엽	죽엽쟁이	“
	“	보곡	1	보곡	보암리·비암리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임피면	보석리	남산	1	남산	남산리	일원
	“	공창	1	공창	공창라 원땀이	“
	“	술산리	1	상주	상주구석땀	“
	“	“	1	상전	암메·술비	“
	“	“	1	양주	양지·주암골	“
	“	“	1	하전	닭메남닭메북 역전동	“
	“	“	1	중전	아래땀·술메	“
	“	“	1	금산	신땀메	“
	“	“	2	“	닭메·죽골	“
	“	월하리	1	상갈	상갈우리등새	“
	“	“	1	농막	농막	“
	“	“	1	중하	중갈우리등새	“
	“	“	2	“	하갈우리	“
	“	“	1	서황	상동	“
	“	“	2	“	월돈명·송고리	“
	“	영창리	1	소령	소령통	“
	“	“	1	대령	대령통·버금재	“
	“	“	1	신기	신기구신기	“
	“	“	1	창성	다리목·원급	“
	“	“	1	만신	만석·선정·탑천땀	“
면계	7	32	39			
서수면	서수리	용 회	1	용회	윗땀	일원
	“	“	2	“	아래땀·중땀	“
	“	용 성	1	용성	윗땀	“
	“	“	2	“	아래땀	“
	“	신상용전	1	신상용전	움은들·상용전	“
	“	하용전	1	하용전	윗땀·아래땀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서수면	서수리	아이	1	아이	윗뜸 일원
	“	“	2	“	가운데뜸아래뜸 “
	“	독자개	1	독자개	윗뜸·아래뜸 “
	“	오일	1	오일	오일 “
	“	“	2	“	오동 “
	“	호산	1	호산	윗뜸·아래뜸 “
	“	성자	1	성자	가자 “
	“	“	2	“	영성 “
	“	옥하	1	옥하	윗뜸·아래뜸 “
	축동리	신장	1	신장	아래뜸 “
	“	“	2	“	윗뜸 “
	“	복우	1	복우	복우 “
	“	내무장	1	내무장	윗뜸·아래뜸 “
	“	외무장	1	외무장	윗뜸·아래뜸 “
	“	내흥	1	내흥	윗뜸·아래뜸 “
	관원리	산간	1	산간	윗뜸·아래뜸 “
	“	원관원	1	원관원	윗뜸 “
	“	“	2	“	아래뜸 “
	“	“	3	“	신관원 “
	“	방령	1	방령	방령 “
	마룡리	운원	1	운원	윗뜸 “
	“	“	2	“	중뜸·아래뜸 “
	“	신중용귀	1	신중용귀	윗뜸 “
	“	“	2	“	아래뜸 “
	“	원용귀	1	원용귀	윗뜸·아래뜸 “
	“	상장곤	1	상장곤	윗뜸·가운데뜸 “
	“	“	2	“	아래뜸 “
	“	하장곤	1	하장곤	윗뜸·벌구산 “
	“	“	2	“	아래뜸 “
	화등리	석화	1	석화	윗뜸 “
	“	“	2	“	아래뜸 “
	“	신기촌	1	신기촌	윗뜸·아래뜸 “
	“	화월	1	화월	원화등 “
	“	“	2	“	월암 “
	“	신구	1	신구	신촌 “
	“	“	2	“	구산·새막리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상금	윗뜸	일원	
서수면	금압리	상금	1	상금	윗뜸	일원	
	"	"	2	"	중뜸	"	
	"	"	3	"	아래뜸	"	
	"	하금	1	하금	윗뜸·교동	"	
	"	"	2	"	아래뜸	"	
	"	마포	1	마포	마포·아래뜸	"	
	"	장자	1	장자	윗뜸·아래뜸	"	
면계	6	31	49				
대야면	산월리	백월	1	백월	건널목	일원	
	"	"	2	"	삼거리	"	
	"	"	3	"	동부	"	
	"	"	4	"	서부	"	
	"	신월	1	신월	검문소	"	
	"	"	2	"	우시장등	"	
	"	오봉	1	오봉	구시장등	"	
	"	"	2	"	오메봉	"	
	"	동오산	1	동오산	오산리	"	
	"	"	2	"	오맥봉	"	
	"	"	3	"	무지개a1	"	
	"	"	4	"	무지개a3	"	
	"	"	5	"	무지개a5	"	
	"	"	6	"	무지개a7	"	
	"	서오산	1	서오산	오산리	"	
	"	"	2	"	고개넘어뜸	"	
	"	서악	1	서악	서악리	"	
	"	'	2	"	소재골	"	
	"	오동	1	오동	방축골	"	
	"	"	2	"	중골	"	
	"	남홍	1	남홍	나막리	"	
	"	"	2	"	장터	"	
	"	석화	1	석화	북부	"	
	"	"	2	"	중부	"	
	"	"	3	"	서부	"	
	"	"	4	"	말방뜸	"	
	"	지경리	백마1구	1	백마1구	역전동	"
	"	"	"	2	"	지서삼거리	"
	"	"	백마2구	1	백마2구	농협부근	"
	"	"	"	2	"	백마안동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대야면	지경리	우덕1구	1	우덕1구	지경연립A
	“	“	2	“	지경연립B
	“	“	3	“	대야연립
	“	“	4	“	원우덕 일원
	“	우덕2구	1	우덕2구	채석장
	“	“	2	“	돌간땀
	“	우덕3구	1	우덕3구	방죽쪽
	“	“	2	“	명성A(a)
	“	“	3	“	명성A(b)
	“	대덕	1	대덕	우덕신
	“	“	2	“	대덕연립
	“	동만자	1	동만자	교회
	“	“	2	“	농조부근
	“	“	3	“	계사부근
	“	“	4	“	동편
	“	남만자	1	남만자	한신A1라인
	“	“	2	“	한신A2라인
	“	“	3	“	한신A3라인
	“	“	4	“	한신A45
	“	서만자	1	서만자	학교부근
	“	“	2	“	창고부근
	“	“	3	“	서편
	“	금반	1	금반	회관부근
	“	“	2	“	서부
	“	“	3	“	남부
	“	남중	1	남중	중리
	“	경창	1	경창	영남촌
	“	“	2	“	셋집
	“	대차	1	대차	북부
	“	“	2	“	남부
	“	소차	1	소차	소차상리
	“	내상	1	내상	내상
	“	복교리	남우	남우	나무쟁이
	“	“	신동	신동	신동
	“	“	상리	상리	북부
	“	“	“	“	남부
	“	“	“	“	남상리
	“	고산	1	고산	고산촌
	“	함열	1	함열	함열촌
	“	신촌	1	신촌	신촌
“	“	“	“	신기땀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대야면	북교리	신창	1	신창	신창	일원
	“	“	2	“	북천	“
	“	장좌	1	장좌	북부	“
	“	“	2	“	남부	“
	“	신복	1	신복	신복	“
	“	“	2	“	서측	“
	광교리	신광	1	신광	신광교	“
	“	하광	1	하광	북부	“
	“	원두	1	원두	원두골	“
	“	중광	1	중광	중광	“
	“	상광	1	상광	상광	“
	“	“	2	“	대광	“
	접산리	원접산	1	원접산	신기	“
	“	“	2	“	원접산	“
	“	라궁	1	라궁	나바메	“
	“	“	2	“	취락땀	“
	“	광산	1	광산	취락땀	“
	“	삼길	1	삼길	취락땀	“
	“	야주	1	야주	하주	“
	“	“	2	“	야중	“
	“	모산	1	모산	모산평	“
	죽산리	고척	1	고척	고척리	“
	“	“	2	“	아래땀	“
	“	장자	1	장자	장자골	“
	“	용절	1	용절	내기	“
	“	“	2	“	용절매	“
	“	“	3	“	취락촌	“
	“	탐동	1	탐동	남부	“
	“	“	2	“	중부	“
	“	“	3	“	북부	“
	“	“	4	“	양땀	“
	보덕리	내덕	1	내덕	내덕리	“
	“	덕곡	1	덕곡	덕실	“
“	외덕	1	외덕	덕곡리	“	
“	안정	1	안정	문월영	“	
“	초산	1	초산	대초산	“	
“	“	2	“	역적골	“	
“	분토	1	분토	분초동	“	
“	덕봉	1	덕봉	영말	“	
“	“	2	“	송정	“	
면계	7	55	111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개정면	아동리	울북	1	울북	뒷뜸	일원	
	"	"	2	"	학교뜸	"	
	"	"	3	"	가운데뜸	"	
	"	"	4	"	학교위뜸	"	
	"	"	5	"	팽나무뜸	"	
	"	동정	1	동정	모탱이뜸	"	
	"	"	2	"	가운데뜸	"	
	"	"	3	"	재너머뜸	"	
	"	충량	1	충량	원충량	"	
	"	"	2	"	안뜸	"	
	"	"	3	"	신디골	"	
	"	아촌	1	아촌	여수메	"	
	"	"	2	"	아차울	"	
	"	호덕	1	호덕	차돌백이	"	
	"	"	2	"	모쟁이뜸	"	
	"	송호	1	송호	금당실샛터	"	
	"	"	2	"	검죽골	"	
	"	"	3	"	안터	"	
	"	"	4	"	분화동	"	
	"	당산	1	당산	당실메	"	
	"	"	2	"	뒷뜸	"	
	"	와룡	1	와룡	똥외	"	
	"	"	2	"	큰뜸	"	
	"	정수	1	정수	정수메	"	
	"	"	2	"	취락메	"	
	"	아산리	아산	1	아산	와등	"
	"	"	"	2	"	안터	"
	"	원아산	1	원아산	주실	"	
	"	"	2	"	옛채	"	
	"	"	3	"	억원동	"	
	"	발산리	월령	1	월령	사망골	"
	"	"	원발산	1	원발산	원발산	"
	"	"	"	2	"	장군뜸	"
	"	대방	1	대방	대방골	"	
	"	"	2	"	만금쟁이	"	
	"	"	3	"	안터	"	
	"	신발산	1	신발산	웃뜸	"	
	"	"	2	"	가운데뜸	"	
	"	"	3	"	아래뜸	"	
	"	남발산	1	남발산	부자뜸	"	
	"	"	2	"	가운데뜸	"	
	"	"	3	"	행길뜸	"	
"	대항	1	대항	철도뜸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개정면	발산리	대황	2	대황	서대황	일원	
	"	"	3	"	동대황	"	
	"	"	4	"	총각골	"	
	통사리	능동1구	1	능동1구	윗뜸	"	
	"	"	2	"	아래뜸	"	
	"	능동2구	1	능동2구	곰동	"	
	"	"	2	"	넘어뜸	"	
	"	신장산	1	신장산	신장산	"	
	"	"	2	"	방죽교	"	
	"	장산	1	장산	원장산	"	
	"	"	2	"	샛터	"	
	"	동화	1	동화	음지뜸	"	
	"	"	2	"	행길뜸	"	
	"	신동화1구	1	신동화1구	양지뜸	"	
	"	"	2	"	윗뜸	"	
	"	신동화2구	1	신동화2구	건너뜸	"	
	"	"	2	"	서당골	"	
	"	우산	1	우산	윗뜸	"	
	"	"	2	"	아래뜸	"	
	"	옥석리	옥석	1	옥석	아래거문돌	"
	"	"	"	2	"	윗거문돌	"
	"	"	"	3	"	건너뜸	"
	"	"	신흥	1	신흥	옥흥	"
"	"	"	2	"	신기	"	
"	"	"	3	"	건너뜸	"	
면계	6	27	68				
성산면	성덕리	성덕	1	성 덕	성덕	일원	
	"	항동	1	항 동	항동	"	
	"	요동	1	요 동	요동	"	
	둔덕리	상 흥	1	상 흥	상흥	"	
	"	대 동	1	대 동	대동	"	
	"	흔 옥	1	흔 옥	흔옥	"	
	"	둔 덕	1	둔 덕	둔덕	"	
	"	중 흥	1	중 흥	중흥	"	
	고봉리	만 즐	1	만 즐	만즐	"	
	"	고 봉	1	고 봉	고봉	"	
	"	성 일	1	성 일	외얏골	"	
	"	"	2	"	고산메	"	
	"	"	3	"	점촌	"	
"	만 동	1	만 동	만동	"		
"	"	2	"	구이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성산면	도암리	식 천	1	식 천	밤남골 일원
	"	"	2	"	도특골 "
	"	창 암	1	창 암	새터 "
	"	도 암	1	도 암	도암골 "
	"	마 동	1	마 동	막골 "
	"	곡 동	1	곡 동	세골 "
	"	"	2	"	환등 "
	여방리	여 방	1	여 방	원여방 "
	"	기 린	1	기 린	기린 "
	"	남 전	1	남 전	남전 "
	"	수 심	1	수 심	수심동 "
	"	동 요	1	동 요	원촌 "
	대명리	대 명	1	대 명	옥곡 "
	"	"	2	"	행정 "
	"	우 곡	1	우 곡	참새골 "
	창오리	창 안	1	창 안	창안 "
	"	창 오	1	창 오	논담 "
	"	"	2	"	머우리 "
	"	상 작	1	상 작	상작 "
	산곡리	산 곡	1	산 곡	산곡 "
	"	산 남	1	산 남	홀범이 "
	"	작 촌	1	작 촌	간치멸 "
	"	"	2	"	하작 "
	"	구 작	1	구 작	의작 "
	"	"	2	"	구역 "
	면계	8	31	40	
나포면	나포리	원나포	1	원나포	선창가 일원
	"	"	2	"	갯마을·갯마을 "
	"	옥 동	1	옥 동	윗 땀 "
	"	"	2	"	아랫땀 "
	"	혜 곡	1	혜 곡	윗땀·아랫땀 "
	"	신 방	1	신 방	신곡·방멸 "
	"	"	2	"	수 철 "
	장상리	원장상	1	원장상	고성·원장상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나포면	장상리	군 둔	1	군 둔	군 둔 일원
	“	와 촌	1	와 촌	안잠밭·배잠밭
	“	서 지	1	서 지	“
	옥곶리	강 정	1	강 정	큰말밭·큰말밭
	“	“	2	“	작은말
	“	외 곶	1	외 곶	강 변
	“	“	2	“	한 절
	“	“	3	“	윗 땀
	“	“	4	“	아랫땀
	“	교 동	1	교 동	아랫땀
	“	“	2	“	윗 땀
	“	등 동	1	등 동	만호뜰
	“	“	2	“	아랫땀
	“	“	3	“	윗 땀
	“	문 화	1	문화	옥곶리 459~461의 15
	“	“	2	“	옥곶리 451~452의 14
	“	“	3	“	옥곶리 455~458의 15
	주곡리	신 촌	1	신 촌	신 촌 일원
	“	둔 기	1	둔 기	윗땀·아랫땀
	“	외 곡	1	외 곡	안 땀
	“	“	2	“	바깥땀
	“	대 동	1	대 동	윗 땀
	“	“	2	“	아랫땀
	“	원주곡	1	원주곡	산바밭
	“	“	2	“	구역터
	“	“	3	“	자양동
	부곡리	후 죽	1	후 죽	후 죽
	“	원부곡	1	원부곡	장 자
	“	“	2	“	죽 림
	“	입 점	1	입 점	입 점
	“	진 장	1	진 장	진 장
	서포리	원서포	1	원서포	장 터
	“	“	2	“	강 변
“	내 촌	1	내 촌	내 촌	
“	서 왕	1	서 왕	윗땀·아랫땀	
“	“	2	“	수 락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나포면	서포리	신 기	1	신 기	신기·밤내골 일원
	“	신 성	1	신 성	아랫뜸 “
	“	“	2	“	아랫뜸 “
면계	6	27	47		
옥도면	개야도	개야1구	1	개야1구	개야도 일원
	“	“	2	“	“ “
	“	“	3	“	“ “
	“	“	4	“	“ “
	“	개야2구	1	개야2구	“ “
	“	“	2	“	죽 도 “
	“	“	3	“	개야도 “
	“	“	4	“	“ “
	연도	연 도	1	연 도	연도 “
	“	“	2	“	“ “
	“	“	3	“	“ “
	어청도	어청도	1	어청도	어청도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선유도	선유1구	1	선유1구	통 리 “
	“	선유2구	1	선유2구	진 리 “
	“	선유3구	1	선유3구	신기리 “
	“	“	2	“	전원리 남암리 “
	무녀도	무녀1구	1	무녀1구	서두리 “
	“	무녀2구	1	무녀2구	모감리 “
	“	“	2	“	중 리 “
	신시도	신시도	1	신시도	신기촌 “
	“	“	2	“	앞장불 “
	“	“	3	“	“ “
	야미도	야미도	1	야미도	새 금 “
	“	“	2	“	안동네 “
	장자도	장자도	1	장자도	가제미장제미대장도 “
	관리도	관리도	1	관리도	꽃 지 “
	말도	말 도	1	말 도	끝 섬 “
	“	방축도	1	방축도	방축금 “
“	명 도	1	명 도	밝은널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옥도면	비안도	비안도	1	비안도	불 동	일원
	"	"	2	"	앞장불	"
	"	"	3	"	마피지	"
	"	"	4	"	상 도	"
	"	두리도	1	두리도	두리도	"
면계	11	18	39			
옥서면	옥봉리	수라	1	수라	큰뜸	일원
	"	"	2	"	수녀원뜸	"
	"	남수라	1	남수라	싼동	"
	"	"	2	"	아래뜸	"
	"	"	3	"	아래삼판	"
	"	남동	1	남동	안뜸	"
	"	"	2	"	너머뜸	"
	"	계산	1	계산	닭메	"
	"	"	2	"	원뜸	"
	"	신동	1	신동	신동	"
	"	"	2	"	구말	"
	"	성남동	1	성남동	아래뜸	"
	"	"	2	"	안뜸	"
	"	"	3	"	소씨뜸	"
	"	"	4	"	중뜸	"
	"	원성산	1	원성산	병원뜸	"
	"	"	2	"	산아래	"
	"	"	3	"	농장뜸	"
	"	내성산	1	내성산	밭뜸	"
	"	"	2	"	학교뜸	"
	"	삼거리	1	삼거리	장터뜸	"
	"	"	2	"	용안뜸	"
	"	"	3	"	창고뜸	"
	"	"	4	"	네가오뜸	"
	"	외성산	1	외성산	콩나물고개뜸	"
	"	"	2	"	비석거리	"
	"	"	3	"	양수장뜸	"
	"	"	4	"	안뜸	"
	"	"	5	"	지서뜸	"
	"	신성산	1	신성산	윗뜸	"
	"	"	2	"	아래뜸	"
	"	구호촌	1	구호촌	수문뜸	"
	"	"	2	"	가운데뜸	"
"	"	3	"	회관뜸	"	
"	오산촌	1	오산촌	원뜸	"	
"	"	2	"	신뜸	"	
"	"	3	"	방앗간뜸	"	

읍·면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옥서면	옥봉리	신오산촌	1	신오산촌	서촌뜸	일원
	“	“	2	“	열일곱뜸	“
	선연리	송촌	1	송촌	서술밭뜸	“
	“	“	2	“	동술밭뜸	“
	“	“	3	“	진고개	“
	“	“	4	“	앞고개뜸	“
	“	산동	1	산동	남서당뜸	“
	“	“	2	“	북서당뜸	“
	“	“	3	“	후문뜸	“
	“	장전	1	장전	돌뜸	“
	“	“	2	“	서진밭	“
	“	“	3	“	아래진밭	“
	“	“	4	“	방앗간뜸	“
	“	장원	1	장원	절골	“
	“	“	2	“	윗골	“
	“	“	3	“	종뜸	“
	“	“	4	“	아래뜸	“
	“	신장원	1	신장원	정문뜸	“
	“	“	2	“	안뜸	“
	“	하제	1	하제	상가뜸	“
	“	“	2	“	리장뜸	“
	“	“	3	“	회관뜸	“
	“	중제	1	중제	북녘뜸	“
	“	“	2	“	고개뜸	“
	“	“	3	“	샘뜸	“
	“	“	4	“	교회뜸	“
	“	신하제	1	신하제	신하제	“
	“	“	2	“	에루니이뜸	“
	“	난산	1	난산	동녘뜸	“
	“	“	2	“	서녘뜸	“
	“	“	3	“	중간뜸	“
	“	신난산	1	신난산	낙벽뜸	“
	“	“	2	“	북녘뜸	“
“	“	3	“	교회뜸	“	
면계	2	24	71			
읍면 총계	73	336	618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명	통	반	관할구역
해망동	1	1	1000의4,7,9,11,13,45,68~71,74~77,80~81,83~84,86~88,129~132,148,151~153,155~171,177~187
		2	1000번지,10003,16,29,33,34,38~40,42,50~51,53~54,57,60~61,64~66,94,103~106,108~113,115,117~118,135~140,144,146,174,998번지,998의1,3,21,999번지,999의101,102
		3	9994,6~8,11,13,15,19,78~80,87~90,84~86,121~123,125~130,138~150,152~156,158~159,166~169,1000의45, 132
	2	1	998의1~2,5,7,8,105,107,109~110, 999번지,99964,66,69~70,74~75
		2	998의1~3,217~226,264~268,297~299
		3	998번지,998의1~2,998의200,232~237,240~245,257,258
		4	998의1~3,207~216,269~279,281~288
	3	1	산4,998번지,998의1~2,141~144, 161~168,246~249,251~256
		2	산4,998의1~2,115~120,122~127, 139~151,153~157,169~170,
		3	994의19,998번지,998의1~2,175~188
		4	998의1,31~39,999의3,36,39~40,42, 52~56,58, 93,108~117, 132~137,164,1001의1,4,1001의5
	4	1	998의2,66~80,90,104,129~137, 305~316,319,323
		2	998의2,94~103,105,317~318
		3	998의2,23~30,40~64,1002의3,19
	5	1	산5번지, 990의18,994의1,15~16, 1003번지,1003의 2,22,34~35,37, 39,40,42~43,45,64,1004번지,1004의 8,16,48,53~54,56,64,66,68, 113,114,115,1010번지
		2	산5의1,121,994의14,18~19,55, 1003번지,1004번지,1004의55,1010번지
		3	1004번지,1004의3,51,56,58~59, 1010번지,1010의2,5,7~11,13,36, 산5번지,1011번지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해망동	6	1	1004의5,120~121,124~128,130~131, 133,1004번지, 산5번지, 1010의17,1011의16,
		2	990의1,8~17,20~27,35~37,41~44, 45~49,52~53,61~64 993의1,~5,9, 10~17,19,21,25,27,32,35,36, 994의4,12,22,999의15,18,1004의10, 21~22,24,26,27,75~86,88,90,92,93,95,99~101,103~105,107, 108,110,116,136,1005번지,1005의4,6,7,1008번지, 1010번지,1010의18, 산5번지, 산5의56
		3	990의1~4,6~7,32~34,38~40,,50, 55~56,58~60,67,70,72~73,산5번지
		4	990의1,8~17,20~27,35~37,41~49,52~53,61~64, 993의16,21,25, 27,29,32,35~36
		5	산5의10,산5의43,57,1006의2~4, 1008의24,32~34,43,54,56 산5의10,산5의43,1006의1,3, 1012의2~16 산5의57,1007의3~4,10~35 산5의10,50,1008의14,16~22, 24,26,28~29,35 산5의10,1008의77~79,81~87,1009번지
신흥동	7	1	4의2,3~6,9~10,11~24,52~55,61,65, 67~68,8의1~7,10~18
		2	4의25~28,43,51,57~59,64,5의1~2, 4,6~14,6의2~3
		3	4의1,7~8,29~39,41~42,44~48,50,56, 60,63, 12의4
		4	산5임,산9임,19의3~9,12~15, 17~20,22번지,22의1~3,23의1~6, 24번지,25의1~21,26의1~2,5,7,9,21,25~27,109~113,27번지,28의 1~6,8~13,26, 29의5~11,14~15,20~21
	8	1	11의1,3,6,9,20~22,25~26, 12의 1~3,6,14의1,15의12,16,18~32, 35~40,42~45,50~51,54,58,60~61,63~67,141,149,153,156~157, 161,168,64의2
		2	15의2,8~9,14~15,49,93~97,99~114, 117~121,128~132,134,136~137, 144~146,154,159~160,162,177, 16번지
		3	15의7,11,13,17,46~48,122~124,127,147~148,65의4~5,10~14, 16~17,21~23
		4	65의3,18~20,71의1,3,5,72의1,6~8,11~12,13,15~16,18~19, 29~30,74의1~3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신흥동	9	1	57의1~2,4,6~11,16, 58의1~3,5~7,10~15,17,20,25,28,33,35~36, 39~40, 60의1,3~4,62번지,63의1,6,9,12,18, 25,27,72의3,5,93의6
		2	산13의10~12,산13의15,26의4,6, 11~15,17~18,20,24,28,30~31, 34~36,38,40,47,56~58,70~72,81,92,93, 30의1,5,17, 31번지, 32의3~4,13~18,21,24~25,27~28,35~44,46,36의4,6, 8~9,11, 13~15,18~19,24,28~29, 31~33,35~36,38,48,51,37번지, 38의1~2, 39번지,39의1,3~13,41의1,53의1,9,12
		3	17의2,5~12,14~18,20~21, 18의1~5, 11~13,15~19,30의4,9~11, 32의1~2,5~6,20,26,31,34의1~5,7~18,35의1~3,5,7,10,34
		4	14의2~4,6~8, 15의1,7,10,62,68~72, 74~76,78~82,87,139~140, 150~151,164
금동	10	1	1의1,3,6~11,15~20,22~23,27~28,30~31,35~36,38~39,41~42, 44~49,64~65,67~69,72~74,76~77,80, 83~86,96~102,104~108, 114~115
		2	1의3~4,12~14,21,25~26,37,50~54, 59,78~79,81,89,90~91,93, 109~110,112~113, 2번지,3의1~2,4,8,12, 4의1~5,8~9,5의1~3, 9~10,12~13,17,27,51번지,51의2,53번지,56의1,4~7, 57의4~5
		3	7의3~6,8의1~5,7,9의1,6~7,61의1,6, 62의10~13,63의9~11,14~16, 19~23,64의2~4,8,10,12
		4	60번지,60의1,3~4,6~7
		5	14의3~4,6~7,9,55의1,4,58의1~3,5~6,59의1~6,8~10,12,14~16,20~24
	11	1	45의4~18,20,22~23,25~28,31~35, 47번지,46의1
		2	2의3~7,13~15,18,21~25, 26의1,4,6,8~15,17,19,20,22~35,38~45 26의51~56,58~73,76~77,87,90,94,96,97,97의1
		3	26의2 한신아파트101~312호,26의91 상가
		4	26의2 한신아파트 401~912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금동	12	1	9의 1~4, 9~14,17~18,21~22,28~30, 47~52, 25의3,6~8, 19번지,14의1
		2	2의1,8~10,20,9의36~37,39,41,44, 26의80~84,98,28의2,35의1~4, 6~8,10~15,22,24,38의4~10,41의9,18,27
		3	9의33~35,40,46, 10의1~5,11의12, 38번지, 38의1
		4	13의2~48
		5	2의17,12의7~20,22~26,14의11~16, 26의85, 28의1,3~6,8~17, 21,35의20,38의3,41의28
		6	11번지,12의1~6,13의1,49~50,14의1,20의3,21번지,22의2,23번지, 23의1~3
	13	1	3의11,,76의1~5,77번지,77의1~8, 78의1~8,79번지,79의1~8,82번지, 84의1~4, 86의1,2,5
		2	10 동신아파트 가동 101~1103호,상가
		3	10 동신아파트 가동 104~1107호
		4	10 동신아파트 가동 108~1111호
		5	10 동신아파트 나동 101~608호
동계	13	5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월명동	1	1	13
		2	1, 11, 12
		3	1, 9
		4	7
	2	1	8, 16
		2	2, 3, 6의 1, 6의 17~6의 26, 17의 1~17의 11, 17의 38~17의 44, 17의 53
		3	4, 5, 6의 2~6의 11, 6의 15
		4	17의 12, 17의 14~17의 37, 17의 52, 18, 19
	3	1	20, 21, 22~22의 2, 22의 19, 22의 22, 22의 24~22의 32, 22의 44, 22의45, 133
		2	14, 22의 3~22의 18, 22의 20~22의 21, 22의 35, 22의 41, 38의 2
		3	24, 25, 26
		4	29, 29의 1~29의 7, 29의 12, 29의15, 29의19, 29의20, 29의 23, 29의 24~29의 35, 29의36~29의 99, 산19의 17, 29의 8~29의 10, 29의 36, 30, 30의 13~30의 15, 120, 121
	4	1	27, 28의 8~28의 25, 28의28~28의 99, 28~28의 7, 28의 26~28의 27, 30의 16, 30의 1~30의 12, 30의 16~30의 99
		2	31의 6~31의 18, 31의 25, 37, 38의 75, 31의 1~31의 5, 32의 8~32의 18, 32의20, 32의21, 32의 34, 32의 35
		3	32의 2~32의 5, 32의 7, 32의27~32의 29, 33~33의 3, 33의 26~33의 28, 33의 32~33의 39, 33의 29~33의 31, 34의 1~34의 7, 35의 15 , 46
		4	33의 9~33의 25, 33의 45, 33의 123, 35~35의 14, 35의 16~35의 99, 36,109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신창동	5	1	1의 1, 1의 2, 2, 3의 1~3의 8, 4, 5~5의 1, 6, 12~17, 18, 20~24, 25, 26, 27~27의2, 27의6~27의8, 27의10, 28, 30~30의 14, 32번 지만 해당, 32의 3~32의 6, 59
		2	33, 35, 37, 38, 39, 40, 41의 3~41의 12, 45~45의 9, 46, 47, 48, 49, 49의 8, 49의 12, 49의 23, 49의 25~49의 33
		3	41의 15, 41의 16, 41의19, 41의20, 41의22~41의 25, 41의31, 41의32, 41의34, 41의36, 41의37, 41의 42, 42~44의 11, 49의 2~49의 7, 49의 9, 49의 10, 49의 15, 49의 16, 49의 17, 49의 20, 49의 35~49의 37
		4	1, 1의 3~1의 99, 2의 1, 3의 9~3의 99, 4의 1~4의 99, 5의 3~5의 20, 6의 3, 6의 4, 7
중1가동	6	1	1, 2, 3, 4
		2	5, 6, 7, 8, 9
		3	10, 11, 12, 13, 14, 15, 16
		4	17, 18, 19, 20, 21, 22, 23, 24
영화동	7	1	7, 8, 9, 20, 21
		2	5, 6, 10
		3	3, 4, 11, 12
		4	18, 19, 22, 23
	8	1	1, 2, 13, 14
		2	17, 24
		3	16, 25
		4	15, 2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장미동	9	1	1의 12~1의 15, 9번지만 해당, 9의 7~9의 18, 10의 41, 10의 44~10의 49, 12의 22, 14의 5, 19의3~19의 10, 20~20의 4	
		2	1의 16~1의 30, 1의 40, 1의 55, 1의 56, 1의 59, 1의 66, 2의 36~2의 39, 2의 42~2의 59, 2의 61, 10의 11~10의 35, 10의 37, 10의 43, 11~11의 27, 12의 25, 12의 41, 14의7	
		3	2의 33, 2의 36~2의 61, 3의 2, 3의 7~3의 15, 4의5, 4의 7~4의 9, 5의 28, 5의 29, 7의14~7의15, 7의 26, 7의 27, 8의18, 8의28, 10의 36, 14의 6, 14의 9, 28의3, 32의2, 33의 3, 33의4, 37의9, 38의3~38의6, 38의8, 46의 12, 51의1, 64의11, 64의13	
		4	4의 12, 6의 8~6의 11, 7번지만 해당, 7의 20~7의 25, 8의 31, 8의 32, 12의 3~12의 21, 12의 23, 12의 24	
	10	1	1의 53,1의 62, 1의 63, 2의 34, 2의 62, 3의 3, 3의 6, 3의 16~3의 99, 5의 3~5의 7, 5의 12, 5의 13, 5의 16~5의 27, 6의 1~6의 7, 7의 12, 7의 31, 8의 1~8의 3, 8의 5~8의 13, 9의 1~9의 6, 9의 25, 10의 50, 10의 2~10의 10, 11의 28~11의 31, 12의 27~12의 40	
		2	1의 49~1의 52, 2의 21~2의 30, 3번지만해당, 5번지만해당, 8의14~8의17, 28의1, 28의 3,1의 2, 1의 10, 1의 11, 5의 9, 6, 7의 1~7의 10	
		3	18의 1~18의 9, 23의 1, 31의 1, 31의 7, 33의 1, 34의 2, 34의 6, 34의 7, 35의 3, 37의 1~37의 3, 38의 1, 39의 1,42~42의 2,40번지 모두, 41의 1~41의 7, 43~45, 47의 3, 47의 4, 49의 13~49의 37	
		4	1의 7, 13의 1, 14의 1~14의 3, 15의 1~15의 19, 16의 1~16의 5, 21의 4, 22의 4~22의 14, 24의 3~24의 5, 26-1,27의 1~27의 5, 29의 3, 30의 1,	
	월명동	11	1	15의1 현대오솔아파트 101동 1호~2호
			2	15의1 현대오솔아파트 101동 3호~4호
3			15의1 현대오솔아파트 101동 5호~6호	
4			15의1 현대오솔아파트 101동 7호이후 2층~6층	
5			15의1 현대오솔아파트 101동 7호이후 7층~11층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월명동	12	1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1동 1호~2호
		2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1동 3호~4호
		3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2동 1호, 2호
		4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2동 3호~4호
		5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3동 1호~2호
		6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3동 3호~4호
		7	23의1 다원클래시움아파트 203동 5호~6호
선양동	13	1	208의 1~20, 221의 2~20, 213, 217의 1~10, 915의 1~30, 223의 1~33, 224의 1~24, 230의 3~7, 228의 103, 225의 4~10, 226의 1~3, 920의 1
		2	208의 1~16, 217의 1~6, 211의 1~10, 219, 908의 2~11, 917의 3, 907의 2~10, 223의 1~16, 224의 1~21, 228의 10, 907의 25
		3	228의 33~99, 904의 1~30, 229, 230, 241, 233~239, 240의 1, 245, 905의 10
		4	243의 3, 228의 80~91, 242, 242의 3, 27, 905의 1~30, 907의 1~10, 908의 1~9
	14	1	923의 1~10, 922의 1~10, 920의 3, 4, 5, 909, 905의 1~15, 908, 923의 31, 903~925, 925의 1~11, 924, 904의 1~17, 925, 908, 905, 925의 4
		2	905, 925, 243의 9, 257의 1, 243의 1~16, 249의 1, 905의 2, 247, 908, 232, 253의 9, 250~252, 256의 1, 259의 2, 256의 1, 257의 1~19, 255, 258, 254
		3	257의 25, 259의 8, 60의 3, 258, 904의 41, 904, 905, 925
		4	901의 1~18, 925의 28, 901의 15~16, 904의 1~19, 925, 904의 8, 925의 5~76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둔율동	15	1	186, 186의 16, 186의 36, 203의 2, 202의 4, 205의 2, 201의 2, 198, 200, 206의 4, 204의 2
		2	193의 2, 191의 1, 186의 11, 194, 190의 2, 197, 195의 1, 189의 3, 170의 6, 174의 9, 189의 6, 174의 11, 173의 1, 171의 2, 169의 5, 170의 2
		3	147, 151의 5, 12, 19, 43, 153의 3, 157의 29
		4	166의1, 167, 164, 160의 2, 178의 2, 175~177, 182의 4, 181, 156, 183, 184의 2, 186의 16
창성동	16	1	24의 8, 16, 17, 19~22, 23의 2, 38의 53
		2	24, 25의 4, 24의 6, 27, 26, 29, 21
		3	30의 1, 31~33, 37, 38의 21, 34의 1, 36
		4	113, 107~110, 115의 4, 112, 92의 8, 102의 1, 103~106, 96, 97, 100, 88~90, 192의 10, 92, 81~84, 93의 1, 94, 94의 16, 80, 79의 1, 5, 92의 23,28, 78, 77의15, 77, 116의 94, 92, 92의 38, 94의 19, 96, 115의 2
명산동	17	1	1의 1~4, 2의 1~12, 6의 1~23
		2	7의 1~10, 8의 1~13, 13의 1~21, 12의 1~18
		3	5의 5~18, 4의 11, 4의 1~10, 12~17, 5의 1~4, 3의 1~22
		4	10의 1~21, 9의 1~6
		5	11의 1~12, 15의 1~27, 16의 1~4
	18	1	14의 1~33, 19의 1~18(명산상가아파트)
		2	18의 1~50
		3	20의 1~13, 21의 1~22
		4	17의 1~12, 22의 1~2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송창동	19	1	3의 1, 7~17, 42, 52, 60, 86~94, 2의 1~2, 3의 19~21, 43, 46, 49, 54~57, 68, 72, 74, 107, 126
		2	3의 29~30, 64~97, 117, 30의 80~81, 3의 24, 27~28, 33, 62, 82~84, 108, 116,
		3	153의 1~12, 16~18, 23~29, 155의 1~28
		4	송창동의 18의 2~10, 19, 20의 1~2, 21~27, 7, 9의 1~3, 10의 3~7, 18의 1, 17, 19, 23~26, 8의 3, 10의 1~2, 11~13, 18의 11~15, 18, 20~22, 4의 1~3, 8, 15, 18, 19, 6, 3의 2, 4의 6~7, 13~14, 17, 20, 5
개북동	20	1	1의 1~18, 2의 1, 3의 1, 3의 2~9, 4의 10~12, 18, 4의 1, 15, 4의 2~9, 13~14, 16, 5의 1, 2,
		2	6의 1~16, 7의 1~16
		3	8의 1~20, 11의 1~10 9의 1~18, 10의 1~14
		4	12의 1~18, 13의 1~13
창성동	21	1	95번지 주공아파트 101동
		2	95번지 주공아파트 102동
		3	95번지 주공아파트 103동
		4	95번지 주공아파트 104동
	22	1	95번지 주공아파트 105동
		2	95번지 주공아파트 106동
		3	95번지 주공아파트 107동
		4	95번지 주공아파트 108동
동 계	22	93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오룡동	1통	1	834의1, 834의4, 19, 20, 25, 26, 30~36, 119, 124 832의9, 25, 834의22~123, 836의 4~106, 837의 1, 2
		2	834의 8, 61~69, 931의 4~12
		3	928의 1~7, 929의 1~5
		4	836의 1~28, 934의 88~117 836의 29~39, 75~90
		5	840의 1~5, 836의 40~49, 836의 50~74 840의 1~11, 838의 1~9
	2통	1	894의 1~56
		2	896의 1~54, 900의 1~130
		3	893의 1~19, 896의 1~59, 897, 900의 14, 31, 39, 40
		4	832의 35~42, 832의47, 832의 69~74, 838의43, 842, 843, 844, 846의94
		5	832의 44~46, 832의 63,77, 838의42, 842의7, 843의21, 845의1, 846의1, 846의 4,5,12~15,42,46,63,72~79,86,88, 847, 894
	3통	1	860의 1, 861의 1, 823, 827, 861, 861의 2~6
		2	828
		3	859의 2~5, 865의 1~5, 862, 871의 1~5
		4	857, 858, 852의 1,2,5, 855, 856의12, 864, 871, 872
		5	849, 853, 832의 53~56, 846의2, 846의45,49, 846의68~70,84, 850, 851, 854
	4통	1	939
		2	942
		3	940, 941
		4	834의 2, 3, 18, 38~47, 49, 115, 116, 128, 136, 143, 145
		5	834의 12, 17, 832의 4, 5, 7, 8, 11, 13, 15, 16, 17, 21, 22, 23, 24, 29, 36, 39, 60, 62, 92, 104, 107, 932의 2
		6	830의 1, 2, 831의 1, 2, 832의 2, 28, 61, 68, 79, 81, 83, 84, 85, 86, 93, 830의 1~2, 834의 12, 856의 1~3, 832의 2

동명	통	반	관할구역	
금광동	5	1	157	
		2	170	
		3	156	
		4	171	
		5	159, 162, 166의 13, 22~24	
	6	1	164, 165의 1~33, 166의 9	
		2	134, 135	
		3	165의 5, 7, 16, 29, 32, 35, 36, 37, 167의 9~26, 168	
		4	167의 8, 169	
	7	1	172 삼성아파트 1동 101~1201호, 102~1102호, 103~903호, 105~805호	
		2	172 삼성아파트 2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3	172 삼성아파트 3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4	172 삼성아파트 5동 101~1101호, 102~1102호, 103~1103호, 105~1105호	
	8	1	172 삼성아파트 6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2	172 삼성아파트 6동 106~1206호, 107~1207호, 108~1208호, 109~1209호	
		3	172 삼성아파트 7동 101~1201호, 102~1202호, 103~1203호, 105~1205호	
		4	172 삼성아파트 7동 106~1206호, 107~1207호, 108~1208호, 109~1209호	
		5	172 삼성아파트 7동 110~1510호, 111~1511호	
	삼학동	9	1	888 주공아파트 101동 1~6층
			2	888 주공아파트 101동 7~12층
3			888 주공아파트 104동 1~7층	
4			888 주공아파트 104동 8~15층	
10		1	888 주공아파트 102동 1~6층	
		2	888 주공아파트 102동 7~12층	
		3	888 주공아파트 103동 1~7층	
		4	888 주공아파트 103동 8~15층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삼학동	11	1	811의 1 대우아파트 101동 각 1~2호
		2	811의 1 대우아파트 101동 각 3~4호
		3	811의 1 대우아파트 101동 각 5~6호
		4	811의 1 대우아파트 103동 각 1~2호
		5	811의 1 대우아파트 103동 각 3~4호
		6	811의 1 대우아파트 104동 각 1~2호
		7	811의 1 대우아파트 104동 각 3~4호
	12	1	811의 1 대우아파트 102동, 상가
		2	811의 1 대우아파트 105동 각 1~3층
		3	811의 1 대우아파트 105동 각 4~6층
		4	811의 1 대우아파트 105동 각 7~9층
		5	811의 1 대우아파트 105동 각 10~12층
		6	811의 1 대우아파트 105동 각 13~15층
	13	1	314의 1~9, 11~21, 25, 28~29, 361의 2, 362의 2~3, 5~6, 363의 1, 3, 6~8, 10, 364의 2
		2	316의 1, 4~10, 12~20, 22~23, 25~26, 30~31, 33~39, 358의 1, 361의 3~5, 7~17, 25, 364의 18, 364의 20
		3	312의 1~11, 13~24, 26~27, 29, 31~50
		4	297의 1, 298의 1, 3, 5, 9, 313의 5~7, 9~10, 12~20, 23~28, 313의 30, 32~33
	14	1	320의 1, 3~11, 13~30, 32, 34~35, 332의 1, 333의 1, 3~4, 357의 1, 3~8, 10~13, 358의 4
		2	321의 2, 8~18, 20~23, 34~39, 42~45, 47~51, 53~57, 333, 333의 2, 336, 336의 1, 336의 5, 337의 1, 338의 1, 2~4, 894의 2, 4~6
		3	321의 1, 3~7, 19, 24~28, 40~41, 59~61, 795의 2, 4, 11~13, 19~21, 33~38, 40~41, 43~45, 61
		4	795의 3, 5~7, 9~10, 14~18, 23~24, 28~32, 39, 62, 796의 1, 3, 5~7, 10, 12~15, 17~24, 26, 28~31, 34, 36, 38, 40~41, 44, 47, 54, 5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삼학동	15	1	792의 1~16, /18, 20~27, 29~30, 32~37 ,38~39, 41~43
		2	795, 795의 1, 48~54, 56~57,
		3	326의 1~3, 5~13, 14~15, 17~22, 24~27, 29~31, 33~31, 33~34, 36~38
		4	323의 1~28, 30~31, 35
	16	1	272의 11, 275의 17, 275의 22~23, 276의 8~10, 12, 278의 1, 24~25, 29, 35~37, 42, 44, 45, 279, 280의 1~2, 281의 1~4, 282의 3, 283, 283의 1, 3~5, 285의 1~4, 289의 13, 302의 1~3, 303, 303의 1~4, 304의 1, 305의 1, 306의 1, 3, 308, 308의 3, 5, 309, 309의 4, 310
		2	315의 1, 3~5, 7, 10~15, 18, 21~23, 25~29, 33
		3	327의 9~12, 14~15, 17~18, 22~23, 27, 34~35, 37, 39, 41~52, 55~58
		4	275의4, 21, 46, 48~57, 59~61, 80, 276의3~7, 13~18, 277의 1~2, 278의 3, 278의 5~8, 11~12, 21~22, 28, 30, 32, 46~47, 49~50, 52~59
		5	327의 1~5, 7, 19~21, 28~31, 33, 36
	17	1	271의 4~6, 8~10, 12, 17, 19, 275의 2~3, 5, 16, 18, 62, 64~75, 276의 1, 12, 282, 282의 1, 3, 287, 289의 3~4, 7~11, 290의 1~6, 8, 291의 1~10
		2	272의 2, 8, 9, 12
		3	268의 3~8, 77, 269의 1~4, 6, 9~12, 270의 1~6, 8, 10, 11, 13, 15, 271의 2, 272의 1, 3~7, 273의 2, 275의 10, 20, 43
		4	265의 5, 14~17, 19, 21, 31~32, 38~40, 42~43, 48, 50, 52~54, 266의 2, 4~6, 8, 12, 16, 267의 3, 268의 2, 8, 15, 20~32, 33~35, 43~44, 48~49, 71, 269의 5, 275-8
5		261, 261의 2~4, 8~21, 24~25, 27, 29, 32~36, 38~50, 262, 263의 1~7, 265의 7, 9, 28~29, 34, 36, 44~47, 55~56, 59~61, 63~64, 66~67, 69~70, 72~81, 83, 266의 1, 3, 10~11 13~15, 17~22, 24~28, 268의 1, 16, 37, 67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삼학동	18	1	330의 1, 3, 4, 15~17, 19, 24, 786의 1~7, 9 ~14, 881의 1, 2~5, 6~19, 21~29, 36, 38~49, 51~53, 55~58, 60~61, 63, 65, 882의 2~4, 6, 888의 34, 37, 82~84, 97, 888의 100, 386, 391, 406~409, 889의 4, 7, 891의 2, 7	
		2	268의 10, 11, 51~60, 63, 69, 70, 79~82, 275의 1, 7, 9, 11, 13~15, 19, 24~33, 35, 38	
		3	278의 2, 27, 880의 1, 6~9, 10~18, 883의 1, 2, 4, 5, 8, 10, 12~15, 883의 1, 10, 12~15, 884의 2, 3, 4, 6, 7, 12, 13, 17~21, 23, 30~36, 38, 40~42, 44~47, 50~55, 58~65, 95	
	19	1	330의 5~7, 13, 14, 18, 22, 23, 26~38, 40, 42~43	
		2	787의 1~15, 24~39, 788의 1~13, 15~22, 24~28,	
		3	791의 1, 4~16, 18~19, 21~25, 27~30, 32, 36	
		4	790의 1, 3~18, 20~23, 27, 30~39, 41~42, 44~45	
		5	789의 1~16, 18~19, 21~30, 32~33	
	20	1	812의 3~12, 15, 17~32, 34, 37~40, 42, 821의 1, 5, 11~12, 870의 1, 4~6, 8~12	
		2	814의 1~27, 31~32, 35~39, 42~43, 46~48, 51	
		3	813의 1~7, 10~21, 23~24, 26~27, 29, 31, 32~35, 815의 1~4, 18, 22, 27, 816의 1~2, 4~6, 8~17, 19, 24, 29~30, 34~35, 38	
	동계	20	93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신평동	1	1	876, 877, 878, 880, 881, 882, 998, 999, 1000
		2	886의1 신평부향하나로아파트
		3	886, 890, 891의1~13, 892, 997, 1001
	2	1	889, 909의19, 911의2, 3, 6, 13, 14, 19~22
		2	914의2, 24, 909의23, 56, 62, 68, 909의4, 7, 16, 24, 71, 910, 911의3~5, 8, 9, 912의1, 2, 914의2, 3
		3	909의11, 12, 44, 45, 46, 54, 77, 909의35~37, 39, 40, 47, 48, 73, 908의5~16, 909의2, 14, 20, 26
		4	909의1~6, 987의2, 40, 42, 909, 983의54~57
		5	900의4, 8, 9, 11, 17, 23, 24, 904의3, 5, 7, 903의10, 901, 902
	3	1	892의33, 35, 892의35, 산23
		2	892의35, 892의80~81, 986
		3	892의14, 18, 905, 907, 987, 896, 892의49~53, 892의100~121
		4	895의1~4, 44, 892의56~70, 892의95, 905의7
		5	985의1~5, 899, 987, 939
	4	1	892의8 월명아파트 A, B
		2	892의8 월명아파트 C, D
		3	892의8 월명아파트 E, F
		4	892의8 월명아파트 G, H
		5	893-7미도3차골든빌리지 893, 892의43, 산25-8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송풍동	5	1	918의1, 921, 915	
		2	921의2, 104, 921의108, 1122, 909	
		3	921의 30, 50	
		4	922의 3, 32	
	6	1	937의2, 943, 983의1, 943의1진양연립주택	
		2	980의1, 979의1,978, 973의15, 977	
		3	973의3, 45	
		4	972의5, 18~20, 24, 28, 988	
	7	1	969의1, 970의2, 972의1~4, 6~17, 22, 23, 25~27	
		2	961, 964	
		3	957의2, 960, 956의1, 958, 945의2,4,19(호산맨션)	
		4	948의4, 951, 952, 932의16(우일빌라)	
		5	492의1, 945의3,16(미성아파트)	
	문화동	8	1	876의 3~10, 19,24,32,33, 876의1, 14, 15, 18, 20, 22, 23, 25, 27, 28
			2	888의1~7, 14~26
3			888의9,~38, 889의1, 2, 3, 24, 25~34	
4			889의6~23, 32, 35	
5			824의 55~57, 59, 823의3~12, 822, 824의 6~23	
9		1	774, 769, 789, 812, 821, 822, 892, 778, 769의1~7	
		2	747~749, 744, 920, 785, 680	
		3	769의2 문화아파트 가동, 나동	
		4	769의2 문화아파트 다동, 라동	
		5	769의2 문화아파트 마동	
10		1	893	
		2	894, 895	
		3	890	
		4	89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문화동	11	1	880의 1~19, 879의 1~18, 878의 1~25
		2	877의 1~24
		3	1의 1~13, 881의 1~6
		4	1의 14~44
		5	2의 1~54
	12	1	886, 885의 1~27, 887
		2	884의 1~32
		3	883의 1~38
		4	895, 896
		5	897의 1~21, 897의1(동산연립)
	13	1	14의1~3, 5~13, 15, 59, 75~79, 83, 84, 86~91, 115
		2	900의 1~25, 898의 1~22
		3	899의 1~20, 3의 1~10, 5의 1~17
		4	882의 1~19
	14	1	914, 914의 18, 20(한신연립)
		2	915, 547의2, 5, 548의3, 549의3, 9, 13, 24, 29
		3	917의 1~5
		4	916의1~39
		5	918의1~9, 919의 1~7, 594의 1~23, 597의 5~10
	15	1	913
		2	912의 1~19, 912의 1(남전연립)
		3	911의 1~28
		4	910의 1~25
		5	532, 533의3, 534의5, 535, 536의1, 2, 5, 6, 8, 13, 537, 537의3, 4, 540의1~3, 6(문화연립), 544의4, 545의1, 3, 547의3, 549의2~4, 8, 12, 20~23, 26, 28
	16	1	907
		2	906
		3	22, 23, 539, 905
		4	27의6, 540의8, 10~15, 908, 909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문화동	17	1	14의16~17,20,23~26,36~46,67,69,72,73,93~95,97,105,110,112,113,117,901	
		2	14의27,29,30~35,60~62,64,80,98,107,108,902	
		3	903의1(삼학연립),903의 2~25	
		4	904 다우미빌아파트 101~1503호,904의1	
		5	904 다우미빌아파트 104~1506호 19의3,21,26의6,30의2,33~37,851의6,852의4	
	18	1	26 삼성아파트 1동 101~1502호	
		2	26 삼성아파트 1동 103~1504호, 105~1506호	
		3	26 삼성아파트 3동	
		4	26 삼성아파트 4동	
	19	1	26 삼성아파트 5동 101~1502호, 103~1504호	
		2	26 삼성아파트 5동 105~1506호, 107~1508호	
		3	26 삼성아파트 6동 101~1502호, 103~1504호	
		4	26 삼성아파트 6동 105~1506호, 107~1508호	
	20	1	26 삼성아파트 2동	
		2	26 삼성아파트 7동 101~1502호, 103~1504호	
		3	26 삼성아파트 7동 105~1506호, 107~1508호	
		4	26 삼성아파트 8동, 30,30의3,5,31의2,533의13	
	동계	20	90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중앙로2가	1	1	1, 1의 1, 14의1, 2, 15의 5, 16의 1, 7, 21의 2, 23, 24, 25의 16, 26, 26의 1, 27의 2, 29의 2 112의 1, 3, 4, 6, 7, 11, 113, 113의 4, 6, 115의 1, 2, 132의 2, 3, 133의 7~9, 134의 1, 3~7, 9, 134의 11, 135, 139, 140의 7, 10
		2	2의 6, 7의 1, 5, 8의 6, 7, 9의 1, 12의 1, 126, 118의 1, 119의 1, 120의 3, 4, 123의 1, 2, 4, 5, 124의1, 4, 125의 2, 4, 126, 133의 1, 6의 1,2의 3, 5의 3, 8의 3, 107의 1, 2, 108, 110의 3, 111의 1, 3~5, 119의 6, 120의 4, 6, 121의 1
		3	81의 2, 6, 82의 3, 6, 141의 3~5, 7, 144, 146의 10, 147의 4, 150, 150의 112의 6, 7, 97, 101, 106의 3, 146의 10, 8의 4, 9의 8, 11, 92의 2~4, 93의 1, 2, 94의 2, 95, 96의 6~8, 97의 99, 99의 1, 101, 104, 106의 2, 3
		4	76의 2~3, 77의 1, 78의 2, 3, 82의 4, 5, 85의 1, 87의 1, 88, 71의 73, 75의 1, 79, 80의 2, 147의 165의 3, 80의 9, 19의 3, 4, 24의 2, 25의 3, 5, 24, 26의 1, 2, 63의 1, 3, 67의 3
영 동	2	1	2, 3의 1, 2, 4의 1, 2, 5의 1~6, 9의 3, 14, 15, 17, 18, 10의 2, 7, 10의 8, 14의 1, 3
		2	6의 1, 5의 7, 7의 1, 2, 8의 1, 11의 1~3, 5의 7, 12의 2, 13의 1, 2
		3	17의 1, 2, 20, 21의 1, 3, 4, 22의 1~5, 7, 9, 10, 12, 18, 19, 22, 47의 3, 48의 1, 4, 5, 49의 1, 2
		4	15의 3, 4, 6, 15, 16의 1, 3, 25, 26의 2, 27의 1, 2, 5, 28의 3, 5
신영동	3	1	1의 1~4, 2의 1~16, 5의 9, 11, 15, 16, 19~23, 18의 23, 30, 6의 1~5, 7~10, 45, 50
		2	6의 11~28, 30, 35, 44, 62, 77, 6의31~44, 6의 50, 64, 6의 32, 33, 34, 36~42, 41~42
		3	3의 1~20, 4의 1~23, 7의 9, 10, 12~19, 61
		4	7의 1, 2, 4~8, 19~25, 8의 1~30
	4	1	9의 1~38, 10의 1~23
		2	11의 1~29, 12의 1~10, 13의 1~34
		3	15의 1~21, 14의 1~7, 12, 14의 13~19
		4	14의 7, 9~12, 14의 20, 16의 1, 3, 5, 18의 1, 16의 7, 9~13, 17의 2~6, 8, 10, 1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죽성동	5	1	23의 1, 5, 2의 1, 22의 3~6, 23의 8, 9, 23의 11~15, 28, 21의 1, 2, 23의 33, 29의 4, 6~9, 11, 15, 16, 21~23, 24, 19의 13
		2	25의 4~10, 13
		3	10의 1, 4, 5, 11의 2, 12의 6~9, 13의 4, 9, 12~14, 17
		4	23의 15, 18~19, 23, 24의 1~3, 5~9, 22, 25~28, 30의 8~10, 31의 4, 7, 11, 34의 8~9, 11, 14, 17, 29의 1~5, 30의 3, 32의 2~8, 35의 2~3, 6~9, 45의 2~4
		5	19의 1, 2, 22의 5~7, 9, 23의 24, 35, 24의 11, 12, 25의 15, 16, 26의 3~6, 32의 9, 11, 12, 33의 7~14, 34의 10, 13, 35의 10
		6	19의 1, 2, 22의 5~7, 9, 23의 24, 35, 24의 11, 12, 25의 15, 16, 26의 3~6, 32의 9, 11, 12, 33의 7~14, 10, 13, 35의 10
		7	27의 1~3, 30의 3~7, 31의 1, 3, 4, 10, 28, 33의 1~5, 10, 13, 15, 17~20, 34의 1~5, 35의 1, 36, 36의 6~16, 18~20
평화동	6	1	45의 1, 4~6, 42의 1, 2, 46의 1, 5, 7~9, 47의 1~6, 48의 1, 2, 49의 1, 2, 4, 50의 7~9, 11, 12, 51의 1~6, 11, 52의 4~8
		2	109의 3, 110의 1, 3, 4, 7, 8, 111의 3, 4, 112의 1, 3, 4
		3	96의 1~3, 97의 1, 2, 98의 1, 4, 99의 1~4, 100의 1, 2, 101의 1, 4, 102의 2~4, 103의 3, 104의 1~3, 105~106의 6, 107의 1, 3
		4	116의 1~4, 117의 1~4, 118의 4~8, 115의 2, 4, 7~9, 119의 1, 120의 1~3, 121의 1, 65의 11, 17~35, 41
		5	114, 114의 4~2, 4, 154의 2~6, 155의 2, 4, 156의 1~5, 159의 1~4, 160, 160의 2, 157의 1~3, 158, 158의 1~6
중 동	7	1	274의 11, 32~38 274의 23~24, 26~31, 87~91, 193, 195~197
		2	274의 18, 41~44, 48, 99~106, 135~136 274의 51~57, 107~109, 111~112
		3	274의 16, 19, 115, 117~178, 319, 328, 337 274의 13, 58, 61, 114, 169, 182~183
		4	274의 187, 266, 236~241, 284~285, 269, 279~282, 274의 234~235, 238, 258~261, 342~344, 275~277, 262~265, 24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중 동	8	1	274의 288~291, 314~315, 243~244, 224~226, 283의 2, 282의 2, 290의 1, 289~291, 225, 283
		2	274의 346, 345, 281의 1, 279의 1, 277, 236의 1, 276의 2, 4~6, 275의 1, 234의 1~3, 276, 281의 345 297, 298, 299의 1, 3, 304의 1, 301의 1, 230의 1~6, 304, 231의 1~3, 231, 233, 232의 1, 274의 305, 299의 2, 300~302
		3	274의 113, 121, 292, 296, 309의 1, 314, 294, 309, 313, 274의 76~77, 125~128, 130, 171, 335~336, 338, 421
		4	274의 14~15, 62~75, 78, 326, 333, 274 227의 2, 5, 226의 1, 224의 1, 2, 223의 1~7, 223, 225, 226, 274, 274의 32, 306
	9	1	337~339, 313, 317, 317의 1~2, 336의 1~2, 342, 343, 345, 335, 308334, 331의 1~2, 329의 2, 327, 328의 1, 326, 326의 1, 329~332, 325, 325의 1
		2	316, 320~322, 274의 123~124, 131, 132, 220~223, 356~360, 360의 1~8, 356의 2, 362의 1, 3, 4, 361의 1, 138, 139의 18~19
		3	356의 1, 265의 11, 353~355, 352의 1, 3~5, 351의 1, 365
		4	349의 1~3, 350, 265의 10, 351, 265의 5, 8~9, 44, 219의 2, 222의 1, 3, 245의 2, 348, 351의 1
	10	1	273의 62,69, 179, 19~23, 80, 113, 192, 205, 274, 274의 228, 361, 363, 257, 254, 255, 357~359, 390, 392
		2	274의 97, 100, 227~228, 274의 190~191, 203, 317
		3	274의 118, 274의 247~252, 274의 367, 229, 231~233, 273
		4	273의 93, 91, 89, 84~85, 114, 125, 128~130, 121~123
	11	1	273의 131~133, 28~31, 77, 145~147, 75, 73, 33, 207 273의 79, 76, 74, 72, 70, 123, 138~139, 136, 92, 90, 88, 86, 83, 35, 32, 273의 106~107
		2	273의 39, 47, 54~55, 64, 117, 141, 144, 210, 170, 272의 23~24
		3	273의 98, 200, 101, 45, 82, 269의 1, 3, 14~18, 20, 22
		4	273의 169, 177, 172~174, 162~163, 154~155, 273의 43, 115, 97, 180, 44, 272의 18, 270의 83, 85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중 동	12	1	265의 19, 30, 32, 248의 1~4, 247의 1, 246, 247, 245의 4, 250의 6, 265, 265의 6~7, 254, 269의 1, 255의 3, 253의 6, 250의 5, 242의 1, 252의 1, 245, 251의 1, 245의 1
		2	258~261, 250의 2, 257, 256, 269, 269의 6, 266의 2, 5, 250, 253, 259
		3	270의 6, 9, 265의 15~16, 30, 27~28, 35, 37~39, 41, 270의 49, 52, 58~60, 55
		4	270의 14~21, 66~67, 10, 69, 35~38, 274, 270의 9, 40~43, 25, 64~65, 265의 47, 33, 17, 269의 8, 10, 13, 17, 268, 266의 1, 4, 265의 1, 264, 262
금암동	13	1	1의 17, 41, 3의 1, 9, 2의 4, 7, 27, 3의 14
		2	6의 2, 4~5, 72의 32, 284의 51, 284, 58, 274의 5, 284의 8~9
		3	274의 149~150, 142, 168, 274의 164~166, 275의 155, 중동 274의 257, 274의 9, 80, 116
		4	273의 36, 274의 74~75, 274의 132~134, 128, 중동 274의 85, 141, 310, 273의 2, 13, 108~109
	14	1	73, 73의 9~11, 55, 17, 181, 152, 160, 274의 15, 29~30, 137 284의 40~46, 36, 34, 29, 274의 24~26, 92, 136, 284
		2	274의 55~58, 34, 52, 14, 32, 274, 272의 334 274의 43, 192, 104, 115, 71, 117~125
		3	73의 13~15, 17, 73의 138, 14, 20 139의 29~31, 33
		4	73의 139, 139의 24, 15, 27 73의 71, 96, 101,
		5	73의 64, 123, 127, 173의 104
동계	14	6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중앙로3가	1	1	54의 3~4, 9, 55의 5, 8~9, 146의 7, 9, 12~16, 20, 21~23, 152의 1, 3, 153의 1, 3, 154의 4, 155의 1, 4~9, 11, 12, 14~16, 24~25, 35의 9~10, 52의 3~7, 12~16, 156의 1~10, 11~12, 14~21, 26~27, 30, 33~35
		2	35의 7, 9, 11, 53의 1, 3, 5~7, 8~14, 16, 35의 3, 36의 2, 37의 5, 38의 3~4, 7
		3	35의 1, 36의 3, 37의 2, 28, 193의 1, 3~8, 194의 3~6, 8, 195의 1, 3, 196, 31의 1~4, 32의 1~2, 33의 4, 34의 3, 173의 1~5, 174의 1~6, 175의 1~3, 176의 3~4, 6
		4	54의 1~2, 6~8, 56의 2, 7~9, 105, 57의 1, 3~5, 7~8, 10, 11, 59의 1~3, 60, 27의 1~5, 28의 1~2, 4, 29의 1, 3~5, 7~8, 30의 1~6, 169의 1, 4, 6, 8, 170, 171의 1~4, 172의 1~2
대명동	2	1	161의 1~3, 162의 1~4, 6~9, 163의 3~5, 164의 1~3, 165의 1, 3, 5, 166의 1~2, 167의 1~5, 168의 1~4, 177의 1~2, 178의 1~2, 5, 179의 1~3, 180의 1~6, 181의 1~3, 182의 2~3, 183의 1~5, 184의 2~4
		2	185의 1~2, 4, 7, 186의 1, 3~6, 187의 1, 3~5, 7~8, 188의 2, 4~7, 9, 189의 1~3, 189의 5~6, 190의 2~5, 191의 1~3, 5, 192의 1~3, 138의 9~14, 16, 18~20, 29~36, 52~53, 83, 132, 165, 180, 253, 257, 138의 5, 8, 15, 17, 22, 38, 40~42, 44, 49~51, 64~65, 68, 71~73, 77, 138의 86~87, 89, 186, 247, 259
		3	138의 94~95, 98~100, 102~104, 135, 138의 107, 118, 128~131, 195~197, 200~209
		4	138의 133, 149, 150, 138의 62~63, 82, 151~153, 156~164, 166~167, 178~179, 225, 254
		5	385의 30~31, 33~38, 40~49, 53, 55~57, 62~63, 68
	3	1	385의 1, 5, 8~17, 19~24, 50, 60, 387의 1~9, 11~14, 17~18
		2	386의 1~8, 10~15, 22~32, 36~44
		3	388의 1~7, 10~11, 13~19
		4	384의 24~41, 44~46, 48, 55~58, 60, 62~65
		5	대명동 384의 1~3, 5~12, 42, 47, 49~50, 대명동 384의 14~16, 18~22, 43, 52, 5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장재동	4	1	45의 1 (현대세술아파트 104동 1층 ~ 8층)	
		2	45의 16, 31~34, 38~45, 45의 3, 25, 27, 46~48, 380의 3~4	
		3	48의 2~8, 49의 1~5, 7~10, 145의 5, 9, 12, 18, 159의 1~2, 5~6, 40의 1~4, 41의 2~5, 42, 43, 208의 1, 209의 2, 210의 2, 211의 2, 200의 1~2, 5~7, 11, 203의 5~6, 204의 2~4, 205의 2~4, 206의 2, 4~5, 207의 3,	
		4	45의 12, 14, 19, 21~24, 28~30, 46의 1~2, 16, 56, 60, 6246의 4~5, 10, 18, 26~29, 35, 46, 50, 57	
		5	46의 6~8, 11, 14, 31~34, 39~40, 42~45 46의 9, 12, 19~23, 30, 37, 51~55, 58, 61, 64	
	5	1	212 현대세술아파트 101동 1층~5층	
		2	212 현대세술아파트 101동 6층~8층	
		3	212 현대세술아파트 101동 9층~11층	
		4	212 현대세술아파트 101동 12층~15층	
	6	1	212 현대세술아파트 102동 101~1504호	
		2	212 현대세술아파트 102동 105~1508호	
		3	212 현대세술아파트 103동 101~1504호	
		4	212 현대세술아파트 103동 105~1508호	
	7	1	380의 1 한일아파트 가동, 380의 1 한일아파트 나동	
		2	380의 1 한일아파트 다동, 380의 1 한일아파트 라동, 380의 22~24	
		3	45의 4 그린장미아파트 101동 1~2호, 45의 4 그린장미아파트 101동 3~5호	
		4	45의 4 그린장미아파트 101동 6~7호, 45의 4 그린장미아파트 102동 1~2호, 45의 4 그린장미아파트 102동 3~4호	
	미원동	8	1	371~384, 385~392, 420~421
			2	251~264, 265~274
			3	275의 1~11, 278~288, 194~205, 244의 1~4, 245~250
4			206~212, 243, 243의 1~9, 276, 276의 1~8, 277, 242의 1~9, 287~289, 289의 1~2, 290~290의 8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원동	9	1	213~220의 2, 241~241의 4, 239~239의 9, 240~240의 6 291~291의 12, 292~292의 8
		2	293~293의 13, 294, 295, 296~303
		3	221~227의 4, 237~237의 9, 238~238의 7 235~235의 9, 236~236의 8
		4	305~309의 2, 320~324, 304~304의 11, 310~319
미원동	10	1	67~83, 84~102
		2	338~343, 364~369, 400, 344~361
		3	228~233의 2, 234~234의 8, 325~325의 15
		4	336~336의 12, 337~337의 9, 326~335, 370, 407의 2~6 411, 416~417
	11	1	160~165, 184~193, 122~141, 152~159
		2	142~151, 166~183, 1~15, 116~121
		3	103~115, 16~39
		4	40~51, 52~66
동홍남동	12	1	106의1~14, 107의2, 107의6~21, 107의22~52, 107의94, 107의96~97, 107의121, 107의122, 107의138~146, 107의159, 107의172~173, 107의175~180, 108의3~4, 108의6~10, 112의1 139의7~8, 139의81~110, 139의112~137, 139의163, 139의182, 139의274, 139의282, 139의294, 143의4~5
		2	107의5, 107의54~61, 107의63~93, 107의98~100, 107의102, 107의104~106, 107의108, 107의119, 107의124~129, 107의131~133, 107의136, 107의147~158, 107의160~161, 107의164~167, 107의169~170, 107의174, 107의181~189, 107의190, 374의1~7, 374의9, 374의11~15, 375의1, 375의8, 375의10~22, 380의1, 380의6, 381의1~2, 381의5, 382의1~15, 383의1~52, 814의7, 814, 814의2, 814의4, 814의8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흥남동	12	3	139의8, 139의42~49, 139의51, 139의54~59, 139의61~62, 139의70, 139의73~80, 139의40, 139의170~179, 139의183~189, 139의276~281
		4	138의1~4, 139의142, 139의1, 139의3, 139의14, 139의138~139, 139의146~147, 139의153, 139의190~191, 139의193~199, 139의249, 139의252~255, 139의257~266, 139의271, 139의284~285, 140의1, 140의3, 141의8~13, 141의15~18, 407의1, 810의4~9, 810의11, 813의2
		5	407의2~12, 407의14~21, 407의45~46, 407의50, 407의52~53, 407의55, 407의59~73, 407의82~83, 810의2
	13	1	139의242, 402의3, 407의33~39, 407의41~42, 407의44, 407의47~49, 407의78~81
		2	3, 127의1, 128, 129, 139의16, 139의19, 139의208, 139의211~214, 139의296, 407의22~28, 407의30~32, 407의58, 407의74~77
		3	130의1~2, 132, 133, 139의1~3, 139의200~201, 139의203~207, 139의267~268, 139의287~293, 139의295, 810의12~24
		4	406의1~17
		5	405의1~39
		6	404의1~29
		7	403의1~3, 403의5~38
동흥남동	14	1	378의1~3, 378의7~9, 379의1~3, 379의7~9, 380의2, 380의4~5, 381의3~4, 384, 384의2, 385의1~2, 386의2, 387, 388의2, 389의1~2, 397의1~6, 397의8~19, 397의21, 397의25~27
		2	398의1~5, 398의8~21, 398의23~24
		3	394의6~7, 395의7, 399의1~21
		4	77의4~5, 78의15~16, 78의18~19, 394의8~9, 395의4, 400의1~27, 400의30~33, 400의36~40
		5	401의1~2, 401의4~18, 401의20~23
		6	93의15, 95의36(동영맨손)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동흥남동	15	1	100 (동흥남주공@ 101동)
		2	100 (동흥남주공@ 102동)
		3	100 (동흥남주공@ 103동)
		4	100 (동흥남주공@ 104동)
		5	100 (동흥남주공@ 105동)
		6	100 (동흥남주공@ 106동)
서흥남동	16	1	842의1, 842의3~9, 842의11~17 843의1~11, 843의13~16, 843의18~25
		2	845의1~16, 845의18, 845의20~38, 845의40~44
		3	833의1, 833의16, 848의1~14, 848의16~17
		4	832의1~5, 832의7~8, 832의10~17, 832의19~20, 849의1~4, 849의6 833의4~5, 833의7, 833의9~12, 833의15, 848의20~31, 848의33
		5	393의14~15, 831의1~26
	17	1	846의1, 846의3~10, 846의12, 846의14~21
		2	847의1~16, 847의18~31
		3	342의1, 342의18, 342의21, 350의2~3, 850의1~8, 850의10~34, 850의36
		4	829의1~2, 829의5~18, 829의22~35
		5	830의1~15, 830의17~18
		6	353의4, 353의12, 417의1, 418의4, 418의14, 418의17~18, 828의 1~22, 828의24~32
	18	1	825의1~5, 825의7~9, 825의11~30
		2	826의1~3, 826의5~9, 826의11~18, 826의20~21, 826의24~27, 826의29~34
		3	426의2~9, 827의1~29
		4	822의1~2, 822의4~7, 822의9, 822의13~25
		5	821의5(남전연립), 821의11
		6	418의16, 418의19, 418의21~22, 440의6, 812의3, 820의1~3, 820의5, 820의7~21, 821의1~2, 821의4, 821의6~10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서흥남동	19	1	824의1~26,
		2	798의1~2, 798의7~11, 798의14, 798의18 798의21~26, 798의28~34, 798의36~41
		3	799의1~3, 799의5, 799의7~16, 799의18~21 799의23~24, 799의36, 799의38~39, 823의1
		4	800의1, 800의3, 800의5~7, 800의9~11, 800의13~19, 800의21~35
		5	801의1~6, 801의8, 801의11~31, 801의33~40
		6	763, 803의1~29, 803의31~34 803의36, 803의38~39, 803의41~52, 803의55~57
		7	804의1~3, 804의5, 804의7~21, 804의23~27
서흥남동	20	1	802의1, 802의3~7, 802의9~28
		2	819의1~17, 819의19~26
		3	818의1, 818의3~5, 818의12~18
		4	805의1, 805의3~10, 805의12~18, 805의20, 805의22, 805의24~26
		5	816의1~15, 816의18~24, 816의27~34
		6	765, 817의1~3, 817의5~6, 817의8~9 817의11, 817의13~14, 817의16, 817의19~20, 817의22~23
	21	1	763의10~11, 812 (고려1동)
		2	812의1 (고려2동)
		3	763의2, 763의4, 763의12~19, 764의2, 764의6~8 764의13, 764의15~17, 812의4(고려3동), 812의6
		4	812의5 (고려4동), 812의7
		5	818의2(고려5동), 820의4
동 계	21	10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1	1	224, 237~239, 241, 245, 247~249, 264, 270, 273, 276, 281, 294
		2	211, 240, 242~243, 246, 293~294, 765, 769, 773~774, 895~898, 900
		3	895의 16(현대한솔아파트 201~1505호)
		4	895의 16(현대한솔아파트 206~1511호)
	2	1	234~236, 267, 274, 764
		2	170, 186, 223, 225~230, 232, 284
		3	275, 757, 760~763, 762의 1(코썰빌라)
		4	755~756
		5	753~754
	3	1	51, 86, 91~92, 94, 96, 98, 100~103, 105~108, 132~134, 136, 138, 140, 183~184, 190~191, 323, 351, 880, 922~925
		2	748, 748의 1(동산연립주택)
		3	910~921
		4	747, 747의 16(삼성연립주택)
	4	1	406, 739
		2	741~742
		3	169, 740
4		119~156, 397, 411~41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5	1	736, 736의 13(황토빌라 A동 101~302호), 736의 12(황토빌라 B동 101~302호)
		2	362, 429, 432~433, 436, 442~443, 737~738
		3	535, 733~735
		4	733의 3(국민연립)
		5	450의 13(세풍아파트 가동 101~510호)
		6	450의 13(세풍아파트 나동 101~510호)
	6	1	443, 449, 501, 503, 505, 942~944, 948~952
		2	945~947
		3	495~496, 500, 507~513, 515, 518, 525, 529, 542, 544~546, 557
		4	482, 494(삼정연립주택), 516, 519~523, 551~553
	7	1	59, 74, 87, 510, 565의 1, 565의 9, 566의 1~3, 567의 3
		2	41, 47, 55, 64, 68~70, 76~80, 85
		3	8, 11, 20~22, 25~30, 32, 49, 66, 73, 629
		4	482의 16(명성주택), 491의 1~2, 491의 4, 492, 538~540, 554, 561, 562의 1, 905
	8	1	203~208, 215, 217~218, 250, 342
		2	117, 197, 202, 209~211, 245, 290, 297, 324
		3	193~195, 198, 234, 325~326, 883~884
		4	758, 758의 2(동산연립주택)
		5	759의 1(대명아파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9	1	746의 11(유원연립주택), 746의 12(동산연립주택)
		2	745, 745의 5(동아연립주택), 746, 872, 874, 876, 878
		3	744, 749, 749의 4(동명주택 가동), 749의 6(동명주택 나동), 750, 750의 1(미성연립주택), 751~752
		4	743의 1(우성연립주택), 743의 8(동부연립주택)
	10	1	464, 469~470, 671~672, 679
		2	681
		3	683~684
		4	483, 668, 676~677, 690, 824~826, 830
	11	1	789
		2	788
		3	787
		4	790, 790의 3(한일연립주택)
	12	1	776, 776의 7(태한연립주택)
		2	779~780
		3	781, 781의 1(금일연립주택)
		4	775, 781의 2(연일연립주택)
	13	1	782
		2	783
		3	784
		4	785~78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14	1	777~778, 778의 1(선한연립주택)
		2	791, 791의 3(풍전연립주택)
		3	686, 686의4(석찬연립주택)
		4	686의 2(운전자연립주택), 687
경장동	15	1	462, 465~466
		2	209, 211, 378, 463~464, 469
		3	467
		4	468
	16	1	425~426, 428, 438, 442, 488, 507~510
		2	443, 489
		3	207~208, 482, 485
		4	490
	17	1	511의 6(오르빌아파트 101동 201~1506호)
		2	511의 6(오르빌아파트 102동 101~1506호)
		3	22, 48, 50, 128, 144~145, 148~150, 170~171, 263, 517~518
		4	91, 519~520, 521, 521의 8(변영연립주택), 523, 552
	18	1	514, 516, 522, 554
		2	515, 515의 14(한아름연립주택), 550
		3	199, 202~203, 544, 546, 548
		4	501~502
	19	1	499
		2	497~498
		3	500
		4	504, 506, 513
5		503, 505의 7(무릉연립주택)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경장동	20	1	493
		2	494
		3	495
		4	496
	21	1	483
		2	484
		3	491
		4	492, 492의 1(금성연립주택)
조촌동	22	1	491(삼성아파트 1동 101~1206호, 상가)
		2	491(삼성아파트 1동 107~1510호)
		3	491(삼성아파트 2동 101~1502호, 103~1204호)
		4	491(삼성아파트 2동 105~1208호)
		5	491(삼성아파트 3동 101~1206호)
	23	1	903의 1(시영아파트 가동 101~110호, 201~210호, 301~310호, 401~410호, 501~510호)
		2	903의 1(시영아파트 가동 601~610호, 701~710호, 801~810호, 901~910호, 1001~1010호)
		3	903의 1(시영아파트 가동 1101~1110호, 1201~1210호, 1301~1310호, 1401~1410호, 1501~1510호)
		4	903의 1(시영아파트 나동 101~108호, 201~208호, 301~308호, 401~408호, 501~508호, 상가)
		5	903의 1(시영아파트 나동 601~608호, 701~708호, 801~808호, 901~908호, 1001~1008호)
		6	903의 1(시영아파트 나동 1101~1108호, 1201~1208호, 1301~1308호, 1401~1408호, 1501~1508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24	1	828, 832~834, 836
		2	841~847, 850~852, 855
		3	848~849, 853, 856, 862, 864~865, 888~890, 893
		4	859~860, 866~868
	25	1	903의 2(현대아파트 101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2	903의 2(현대아파트 102동 101~1401호, 102~1402호, 103~1403호, 104~1404호)
		3	903의 2(현대아파트 102동 105~1505호, 1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4	903의 2(현대아파트 103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104~1504호)
	26	1	903의 2(현대아파트 104동 101~1401호, 102~1402호, 103~1403호, 104~1404호, 105~1505호)
		2	903의 2(현대아파트 104동 106~1506호, 107~1507호, 108~1508호, 109~1509호, 110~1510호)
		3	903의 2(현대아파트 105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상가)
		4	903의 2(현대아파트 105동 104~1504호, 105~1505호, 106~1506호)
		5	903의 2(현대아파트 106동 101~1501호, 102~1502호, 103~1503호)
		6	903의 2(현대아파트 106동 104~1504호, 105~1505호, 106~1506호)
	27	1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01~1301호, 102~1502호, 103~1503호, 상가)
		2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04~1504호, 105~1505호)
3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06~1506호, 107~1507호)	
4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08~1508호, 109~1509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조촌동	27	5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10~1510호, 111~1511호)
		6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1동 112~1512호, 113~1513호, 114~1514호)
	28	1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01~1501호, 102~1502호)
		2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03~1503호, 104~1504호)
		3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05~1505호, 106~1506호)
		4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07~1507호, 108~1508호)
		5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09~1509호, 110~1510호)
		6	907의 2(동신개나리아파트 102동 111~1511호, 112~1512호)
	29	1	771(부향하나로아파트 201~226호, 301~326호, 상가)
		2	771(부향하나로아파트 401~426호, 501~526호)
		3	771(부향하나로아파트 601~626호, 701~726호)
		4	771(부향하나로아파트 801~826호, 901~926호)
	30	1	771(부향하나로아파트 1001~1026호, 1101~1126호)
		2	771(부향하나로아파트 1201~1226호, 1301~1326호)
		3	771(부향하나로아파트 1401~1426호, 1501~1526호)
		4	771(부향하나로아파트 1605~1623호, 1705~1723호, 1805~1823호)
	31	1	907의 1(세경아파트 101~1502호)
		2	907의 1(세경아파트 103~1504호)
		3	907의 1(세경아파트 105~1506호)
		4	907의 1(세경아파트 107~1508호)
		5	907의 1(세경아파트 109~1510호)
		6	907의 1(세경아파트 111~1412호, 113~1314호)
	동계	31	140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경암동	1	1	572의 94, 96, 100~110, 183, 202, 627의 1~10, 12, 21, 22, 30, 43~45, 83, 91, 99~102, 112
		2	218, 364~371, 627의 14~18
		3	570, 627의 27, 29, 35~42, 81, 84, 86~88, 90, 92, 601의 1
		4	572의 20~32, 125~128, 132~133, 138, 140, 143~149, 342~345, 601의 10, 627의 25, 34, 93
	2	1	608, 609의 31~60
		2	609의 1~30, 609의 61~80
		3	609의 81~139
		4	610~615
	3	1	634
		2	647
		3	635
		4	636의 25~37, 636의 62~63, 646
	4	1	649, 650
		2	648
		3	645
		4	654
	5	1	636의 38~45, 636의 46~61, 64, 655
		2	656
		3	666의 1~5, 666의 6 서해주택, 666의 7~23
		4	665
6	1	640, 641의 1~12	
	2	641의 13~30, 642	
	3	657의 4~12, 657의 19~24, 657의 27, 657의 29~30, 658	
	4	657의 1~3, 657의 13~18, 657의 25~26, 657의 28, 661	
7	1	577	
	2	636의 1~24	
	3	637, 638	
	4	540의 13 명성아파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경암동	8	1	540의 8 부향하나로@ 101동 1층~4층
		2	540의 8 부향하나로@ 101동 5층~7층
		3	540의 8 부향하나로@ 101동 8층~10층
		4	540의 8 부향하나로@ 101동 11층~13층
		5	540의 8 부향하나로@ 101동 14층~17층
	9	1	540의 8 부향하나로@ 102동 1층~4층
		2	540의 8 부향하나로@ 102동 5층~7층
		3	540의 8 부향하나로@ 102동 8층~10층
		4	540의 8 부향하나로@ 102동 11층~13층
	10	1	544의 9 신화주택 가동, 나동
		2	544의 9 신화주택 다동, 라동
		3	541의 14, 543의 8, 544의 12, 545의 10, 546의 4, 547의 2,3,8,9,10, 548의 5,7,10,11, 549의 8,9,12, 13550의 2,7, 567의 9,10,16,17
		4	544의 8 신흥@ 1호 ~ 4호, 541의 9,16, 543의 7, 544의 5, 567의 6~8
		5	544의 8 신흥@ 5호 ~ 9호
	11	1	539의 9 새한@ 101동, 상가
		2	539의 9 새한@ 102동의 1층~4층
		3	539의 9 새한@ 102동의 5층~8층
		4	539의 9 새한@ 102동의 9층~15층
		5	539의 9 새한@ 103동
	12	1	540의 8 부향하나로@ 103동 1층~4층
		2	540의 8 부향하나로@ 103동 5층~7층
		3	540의 8 부향하나로@ 103동 8층~10층
		4	540의 8 부향하나로@ 103동 11층~13층
		5	486, 520~543, 579, 58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경암동	13	1	551, 552의 1~2, 552의 4~10, 553~565, 639
		2	643의 1 우일주택, 643의 2~18
		3	552의 3 동원주택
		4	644, 561의 7 제일주택, 561의 31, 686
	14	1	660의 1~2, 660의 3 미도4차골든빌리지@, 660의 4~11, 662
		2	664의 1~2, 664의 3 신라주택, 664의 4~27
		3	659, 663, 682의 4 서부연립
		4	681, 682의 1~3, 682의 5~22
	15	1	674
		2	670, 677의 1~14
		3	675, 677의 15~29
		4	676의 1 대명@, 676의 2~8
	16	1	651
		2	673
		3	652의 1~4, 652의 6, 672
		4	671
	17	1	652의5 연일@ 1~5층 끝이 1~6호, 653
		2	652의5 연일@ 1~5층 끝이 7~18호
		3	667의 1 동신맨션, 667의 2~3, 667의 4 금강연립, 667의 5~20
		4	668, 669
18	1	678	
	2	684, 685	
	3	679	
	4	683의 1~20, 680의 1~11	
동계	18	7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구암동	1	1	55, 305, 19, 60, 75~77, 61, 73, 55의 33, 60의 2, 72, 78
		2	316, 156, 59의 6, 46, 58, 63, 311, 353, 63의 51, 91, 315, 301, 357, 333
		3	316, 316의 2, 95, 314, 302, 315, 331, 320의 3, 310, 299, 278
		4	305, 279의 5, 299~302, 304의 1, 309의 1, 278, 304의 2, 364, 279의 1, 312~313, 280, 271의 2, 276의 7, 279의 5, 277의 1, 309, 302의 2, 317의 6, 333, 274의 2
	2	1	65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1502호
		2	65 현대아파트 101동 103호~1504호
		3	65 현대아파트 102동 101호~1502호
		4	65 현대아파트 102동 103호~1504호
		5	65 현대아파트 102동 105호~1506호
		6	65 현대아파트 103동 101호~1502호
		7	65 현대아파트 103동 103호~1505호, 상가
	3	1	87, 104, 121, 83, 84, 106, 103, 112, 121의 2, 93, 209, 78, 55, 88, 102, 99, 91의 79, 73의 3
		2	161, 70, 120~121, 150, 163, 120의 1.4.10, 154~157, 144, 171
		3	150, 151, 140, 163, 144, 147, 135, 177의 2, 112, 222의 3, 177, 164, 145, 135의 4, 157, 143
		4	155, 31의 23, 122, 42의 4, 35, 32의 2, 222, 31의 2, 158, 542
	4	1	483의 1.4, 487의 1, 488의 3.4.6, 503의 1, 488, 261, 482, 355의 2
		2	488의 6~7, 355의 4, 483의 4, 480의 4, 601의 3, 488, 333, 601의 34, 601의 20~25.27~29
		3	488, 601, 331, 601의 12~14.16, 601의 18~19, 356의 2, 479의 1, 490, 361의 1.7, 340의 1, 374~375, 369, 368, 365, 370~372, 337, 333, 344
		4	358, 358의 2, 470, 342, 422, 362, 365의 3, 344, 366, 362의 1.4.7, 368, 346, 341, 364의 2, 345의 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구암동	5	1	352, 325의 2~3, 324, 354의 2, 374, 327, 324의 21
		2	323의 4, 324의 2.5.22, 339, 349의 1, 328, 328의 1.8, 329, 354, 351, 329의 6, 341, 358, 325
		3	335, 336, 330의 1.2.3.5.6, 330, 333의 4, 358, 358의 2, 470
		4	320, 322의 11, 322, 320의 1.8.17.20, 321의 11, 331의 1.5, 33의1.3.4, 331, 330의1.3
		5	511의 7, 323의 6, 11~17.24, 323, 512, 512의 11.26, 324, 507의 12, 508의 6, 509의 6, 397, 510의 6
	6	1	333의24, 377, 379, 380의1, 390, 391, 391의1, 392의 1.2.3, 393, 394의1.2, 395, 396의2.5.10, 397의 1.3.4.5.6.8.11, 399의2.3, 400의1.2, 401의1, 409의 2.17.18.19.20.22, 410의3.4.16, 411의1.2.9, 412, 413의 1.2, 414, 452의2.3.7.11.12.13.17.18.19
		2	215의1, 248의4.12.13.15.17, 250의1.2.3.4, 251의 1.2.3.8.9.10.19, 252의1, 253, 254, 255의1.3, 257의1, 259의1, 601의91
		3	260의2, 261의1.2.4, 262의1.4.5, 263의1.2, 264의4.5, 400 의1, 403의5.6.8.11.12.13, 407의 2.7.13.15
	7	1	333의 1 세풍아파트 105동 각 1~4호
		2	333의 1 세풍아파트 106동 각 1~2호
		3	333의 1 세풍아파트 107동 각 1~6호
		4	333의 1 세풍아파트 108동 각 1~2호
		5	333의 1 세풍아파트 108동 각 3~4호
		6	333의 1 세풍아파트 108동 각 5~8호, 유치원등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내흥동	8	1	55, 86, 45, 66, 78, 81의 2, 80, 526, 28의 2, 50의 1, 77의 2, 77, 76, 73, 77의 15, 54, 64, 75, 43, 53, 46
		2	532, 65, 604, 671, 640, 665, 651, 538, 580, 555, 670, 668, 289, 624, 626, 37~39, 661, 652, 659, 674, 69의 2, 240
		3	55의 1, 78, 585, 576, 590, 264, 567, 595의 2, 573, 569, 568, 564, 592의 2
		4	525, 752의 5, 757, 486, 539, 753의 2, 529, 542의 2~3, 43, 753, 547의 1, 538, 539의 5, 568의 3, 579, 526, 532, 40, 543의 2
		5	863, 875의 5, 863의 13.26, 872의 13, 708, 868, 868의 12, 708의 12
		6	816, 860의 8, 818, 86, 834, 815, 817, 821, 806, 477의 5, 817의 2, 487, 484, 485, 471의 2, 47의 4, 497, 475의 2, 477의 5, 471
	9	1	18, 146, 153의 2, 484, 143, 131, 20의 1, 453, 502, 102, 474, 497, 97, 97의 1, 146, 22, 147, 353, 152, 501, 497의 7
		2	275, 243, 205, 233, 279, 205의 1, 276, 206, 248, 277의 11, 171, 179, 225, 227, 242
		3	369, 170, 248, 246, 276, 179, 429의 1, 250, 223, 425, 205, 275, 227, 171, 36, 229, 166, 251, 197, 243, 238, 253
		4	387의 1.2, 95의 1, 317, 419, 196, 416, 415, 293, 412, 426, 410, 579, 332의 5, 375, 329, 190, 407의 1, 395의 1
		5	335, 358의 1, 333, 357, 334, 847, 846, 332의 3.5, 45, 355, 417, 358, 310, 332의 1, 354, 342, 26, 837, 834
구암동	10	1	65 현대아파트 104동 101호~1502호
		2	65 현대아파트 104동 103호~1505호
		3	65 현대아파트 105동 101호~1502호
		4	65 현대아파트 105동 103호~1504호
		5	65 현대아파트 106동 101호~1502호
		6	65 현대아파트 106동 103호~1504호
		7	65 현대아파트 106동 105호~1506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구암동	11	1	65 현대아파트 107동 101호~1502호
		2	65 현대아파트 107동 103호~1505호
		3	65 현대아파트 108동 101호~1502호
		4	65 현대아파트 108동 103호~1504호
		5	65 현대아파트 109동 101호~1502호
		6	65 현대아파트 109동 103호~1504호
		7	65 현대아파트 109동 105호~1506호
	12	1	65 현대아파트 110동 101호~1502호
		2	65 현대아파트 110동 103호~1504호
		3	65 현대아파트 110동 105호~1506호
		4	65 현대아파트 111동 101호~1502호
		5	65 현대아파트 111동 103호~1304호
		6	65 현대아파트 112동 101호~1502호
	13	1	65 현대아파트 112동 103호~1504호
		2	65 현대아파트 112동 105호~1506호
		3	65 현대아파트 112동 107호~1310호, 유치원
		4	65 현대아파트 113동 101호~1502호
		5	65 현대아파트 113동 103호~1504호
		6	65 현대아파트 113동 105호~1506호
		7	65 현대아파트 113동 107호~1508호
	14	1	333의1 세풍아파트 101동 각 1~4호, 상가
		2	333의 1 세풍아파트 101동 각 5~8호
		3	333의 1 세풍아파트 102동 각 1~4호
		4	333의 1 세풍아파트 102동 각 5~8호
		5	333의 1 세풍아파트 103동 각 1~2호
		6	333의 1 세풍아파트 103동 각 3~6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구암동	15	1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1동 1~3호, 상가	
		2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1동 4~6호	
		3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5동 1~3호	
		4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5동 4~6호	
	16	1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2동 1~3호	
		2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2동 4~6호	
		3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3동 1~2호	
		4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3동 3~4호	
		5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4동 1~3호	
		6	614 군산구암휴면시아아파트 104동 4~6호	
	동 계	16	87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개정동	1	1	1의 1~2의 21, 2의 22, 2의 35, 127의 1~128의 2	
		2	128~129의 59, 28의 21, 129의 76, 129의 88	
		3	12의 5~14의 13, 60의 2	
	2	1	145의 8, 10, 30, 147의 1~224의 15	
		2	191, 193의 1, 194의 1, 196, 198, 200, 203~224, 227의 8	
		3	30의 4, 30의 18, 381의 1~400의 4, 409, 409의 1	
		4	250의 2, 260의 1, 261~295	
	3	1	산58의 1	
		2	58의 1, 산 55의 2, 산 58의 23, 298, 299의 1, 300의 2~304의 2, 312의 2, 313의 3	
		3	622~640	
		4	32의 1, 307, 308의 1~441의 2	
		5	424의 2, 432의 1, 433의 1, 434의 1, 435의 1, 436의 1, 437의 9, 439, 441의 2~500의 8, 586, 587, 588의 2, 590의 7, 590의 8	
	4	1	571의 1~2, 573의 1, 585의 1, 585의 7~21(585의 11, 16 제외), 591의 1, 592의 1, 593의 1~2, 595의 6, 596의 1, 596의 2, 597의 1~2, 622의 7	
		2	527의 1, 531의 1, 531, 532의 1, 532의 6~9, 532의 16, 534의 2, 540의 1, 540의 4, 542, 542의 1, 543의 4, 548, 555의 2, 651, 655의 1~2, 659의 1, 2	
		3	544의 2, 544의 6, 548의 1, 550의 2, 551의 4, 553의 2, 555의 1, 555의 2, 600, 600의 1, 603, 604의 1, 605, 613의 1~2, 615의 2, 645, 648, 산 8	
	사정동	5	1	산 30, 160의 2, 160의 3, 511~555의 3
			2	111~512
			3	7의 2~100, 101의 7, 115, 119
		6	1	356~435의 2, 436의 3
2			377의 1, 393~409	
3			341~414의 6, 417의 6, 433의 2	
4			302~340, 351~361의 10	
5			442~469	
7		1	311~394	
		2	246의 8~324	
		3	248~296의 4, 298, 299의 1	
		4	340의 1, 341~350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사정동	8	1	421 금호아파트 101동 101~1304호
		2	421 금호아파트 101동 105~1008호
		3	421 금호아파트 102동 101~1304호
		4	421 금호아파트 102동 105~1008호
	9	1	421 금호아파트 103동 101~1304호
		2	421 금호아파트 103동 105~1006호
		3	421 금호아파트 105동 101~1304호
		4	421 금호아파트 105동 105~1006호
개정동	10	1	134의 2, 11, 15~16, 19
		2	132의 21, 135의 1, 137, 137의 3~6, 138의 8, 10
		3	134의 1, 4, 6, 136의 1, 5, 7, 8, 12, 13
		4	134의 15, 135, 135의 1, 4, 5, 7, 22, 145의 3, 145의 22
	11	1	511의 2, 512의 1~11(512의 4, 7, 10 제외), 513의 1~4, 514의 2~5, 514의 8~10, 514의 12, 514의 18, 514의 21~26, 514의 29, 514의 31, 514의 36~37, 515의 1, 516, 525의 3, 525의 7
		2	505의 38, 505의 42, 505의 46, 505의 49, 505의 52~54, 505의 69, 505의 84, 507의 19, 507의 22, 507의 24, 507의 92, 507의 101, 511의 3, 511의 6, 512의 13, 514의 36, 514의 38
		3	62의 10, 63의 7, 505의 2~3, 505의 20, 505의 30~31, 505의 34, 505의 3, 6~38, 505의 65, 505의 68, 505의 81~83, 505의 90, 507, 507의 5, 505의 7, 507의 9, 507의 17, 507의 58, 507의 70, 507의 80, 507의 81, 505의 9~10, 505의 15, 505의 17, 505의 31, 505의 58, 505의 80~81, 505의 112, 509, 509의 1, 509의 6
사정동	12	1	100 금호아파트 201동 101~1502호
		2	100 금호아파트 201동 103~1504호
		3	100 금호아파트 201동 105~1506호
		4	100 금호아파트 202동 101~1502호
		5	100 금호아파트 202동 103~1504호
	13	1	100 금호아파트 203동 101~1502호
		2	100 금호아파트 203동 103~1404호
		3	100 금호아파트 204동 101~1502호
		4	100 금호아파트 204동 103~1504호
		5	100 금호아파트 205동 101~1502호
		6	100 금호아파트 205동 103~1504호
		7	100 금호아파트 205동 105~1506호
	동계	13	5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	1	33의 18, 34의1~18, 479, 747, 514의1~12, 473의 2.8.9., 658의15~39, 729, 481, 755의3.5, 444의1~6, 444의8~37, 444의39~41
		2	798~800, 802~810
		3	814~825
		4	827~828, 831~832, 834~844, 846~850
		5	852~876, 879, 882~884
	2	1	74의 1 ~ 22
		2	72의 10, 65의 2.4.6.7.12.28.29.94.
		3	401의 1 ~ 9, 398의 12, 405의4
		4	77의 4, 77의103
		5	77의 4 ~ 38
	3	1	64의 8 ~ 15, 64의 31 ~ 33, 65의 50 ~ 53, 65의 71 ~ 73
		2	63의 66 ~ 72, 75, 77, 77의 4 ~ 59, 61 ~ 69, 77의 4 ~ 48, 50 ~ 54
		3	63의 9 ~ 25, 63의 59, 87 ~ 131, 77의 64 ~ 66
		4	63의4, 63의 8, 57, 64의 18, 20, 30, 75의 9 ~ 13, 63의 143 ~ 145.152
		5	64의17~20, 65의1, 65의4.5, 65의8~11, 65의13 ~ 27, 65의30 ~ 58, 66의 6 ~ 24
	4	1	61의 46 ~ 60, 63의4, 64의 10, 25
		2	63의 75 ~ 85, 95, 119
		3	7의 3 ~ 27, 10의 3, 64의11 ~ 16, 64의21 ~ 29, 64의35 ~ 49
		4	10의 4 ~ 7, 10의 9 ~ 11
		5	7의 3 ~ 5, 17, 7의 24 ~ 58, 7의 59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5	1	745의 12, 745의 17~27, 747의 17.19, 479의 51~53, 479의 64, 479의 56.57.60.61, 479의 63~70, 479의 117.120.129, 479의 131, 744의 1.13.32, 745의 29, 747, 747의 20
		2	479의 40.41.45.48, 479의 73~76, 479의 104~107, 479의 110~111, 479의 113, 485번지 일대, 744의 9, 479의 10.12.27, 479의 32~35, 479의 78~84, 479의 38, 479의 86~89, 479의 91~93, 479의 95~102
		3	784, 786~787, 789~795, 798
	6	1	431의 6,10, 433의 5~19, 439의 8~51, 441의 1~6, 427의 2~11, 427의13~15, 427의17
		2	434의 7~15, 438의 6~8, 439의 17~35, 758의 14~18
		3	437의 6~15, 441의 14~16, 758의 24~27, 442의 5~26
		4	430의 4~29, 434의 19, 435의 5~27, 442의 5, 442의 23~25, 758의 37~51, 783의 4, 443, 444의 7.38, 755의 1.4.11.17.18, 756의 1~16, 757의1~8
	7	1	63의 27, 78의 8
		2	406의 1
		3	40의 1
		4	63의 11, 63의70~74, 63의 134, 63의140, 63의150, 75의11, 64의 30, 405의5
	8	1	427의 12
		2	427의 1
		3	427의 16
		4	430의 4~22, 534의 19, 434의 20, 435의 5~27
	9	1	69의 2 현대아파트 101동 전체
		2	69의 2 현대아파트 102동 전체
		3	69의 2 현대아파트 103동 전체
	10	1	69의 2 현대아파트 104동 전체
		2	69의 2 현대아파트 105동 전체
		3	69의 2 현대아파트 106동 전체, 상가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11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1동 1~3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1동 4~6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1동 7~8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1~4호	
	12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5~7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8~11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12~13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2동 14~16호	
	13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4호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5~8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9~12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3동 13~16호	
	14	1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3호, 상가	
		2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4~6호	
		3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7~9호	
		4	33의 1 수송동제일아파트 104동 10~12호	
	15	1	656 동영임대아파트 101동 전체, 상가	
		2	656 동영임대아파트 102동 전체	
	미장동	16	1	380의 9~22, 381의 67~120
			2	381의 1~13, 54~58, 69, 381의 27, 35, 382의 1~30, 383, 384의 1~5
3			399의 1~10, 400, 401, 402의 1~4, 404~406, 410, 413~418, 52의 32, 270, 389, 394의 1~4, 395의 3~47	
4			17의 11, 18의 15, 433, 445, 450, 457, 549, 563, 579, 582, 585, 617, 51의 56, 52의 24~30, 51의 2~999, 49, 61의 20, 62의 43, 493, 494, 532, 289의 19 ~ 329의 1, 산62의 1~87의 2, 29의 1	
17		1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1동 101 ~ 1504호	
		2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1동 105 ~ 1508호	
		3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2동 101 ~ 1304호	
		4	52의 1 예그린아파트 102동 105 ~ 1007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장동	18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1동, 상가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2동
		3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3동
	19	1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4동
		2	53의 1 파인빌아파트 105동
	20	1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1동 전체, 상가
		2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2동 전체
		3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3동 1~4호
		4	51의 1 파인빌2차아파트 203동 5~8호
	21	1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1동 전체, 상가
		2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2동 전체
		3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3동 전체
		4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4동 전체
		5	55의 5 미장코아루아파트 105동 전체
	수송동	22	1
2			904 동신아파트 101동 105~1508호
3			904 동신아파트 102동 101~1504호
4			904 동신아파트 102동 105~1508호
5			904 동신아파트 103동 101~1506호
23		1	904 동신아파트 104동 101~1504호
		2	904 동신아파트 104동 105~1508호
		3	904 동신아파트 105동 101~1504호
		4	904 동신아파트 105동 105~1508호
		5	904 동신아파트 106동 101~1503호
		6	904 동신아파트 106동 101~1506호, 동신상가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지곡동	24	1	487~491
		2	492~496
		3	497~501
		4	502~506
	25	1	507~510
		2	511~514
		3	515~518
		4	519~522
	26	1	523~529
		2	530~536
		3	537~543
		4	544~550
	27	1	551~554
		2	555~559
		3	560~563
		4	564~568
	28	1	251, 252, 310, 363 ~ 374, 392 ~ 395, 401 ~ 409, 431 ~ 434
		2	43 ~ 50, 70, 80, 93, 94, 164, 194, 353, 12, 27
		3	81 ~ 83, 89, 93, 143, 250, 901, 149-6
		4	289의19 ~ 329의1, 산62의1 ~ 87의2, 29의1
	29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1동, 상가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3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4동
	30	1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5동
		2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6동
		3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7동
		4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8동
5		158의 1 은파코아루아파트 109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지곡동	31	1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1동 101호~1404호
		2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1동 105호~1508호
		3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2동 101호~1504호
		4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2동 105호~1508호
	32	1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3동 101호~1504호
		2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3동 105호~1508호
		3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4동 101호~1504호
		4	42의 5 도현해나지오아파트 104동 105호~1508호, 상가
수송동	33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1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2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3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4동, 상가
		5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5동
	34	1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6동
		2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7동
		3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8동
		4	829의 2 수송아이파크 109동
	35	1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1동, 상가
		2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2동
		3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3동
		4	885의 1 한라비발디 1단지 아파트 104동
	36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1동, 상가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2동
		3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3동
		4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4동
	37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5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6동
	38	1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7동
2		885의 3 한라비발디 2단지 아파트 208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39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1동 , 상가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2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3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4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5동
	40통	1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6동
		2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7동
		3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8동
		4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09동
		5	812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310동
	41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1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2동, 상가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3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4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5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6동
	42	1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7동
		2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8동
		3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09동
		4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0동
		5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1동
6		812의1 군산수송동제일오투그란데 2단지 512동	
미장동	43	1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1동, 상가
		2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2동
		3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3동
		4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4동
		5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5동
	44	1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6동
		2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7동
		3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8동
		4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09동
		5	473 수송공원삼성쉐르빌 110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수송동	45	1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1동, 상가
		2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2동 101~2003호
		3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2동 104~2005호
		4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3동
	46	1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4동
		2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5동
		3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6동
		4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7동
	47	1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8동
		2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9동 101~2003호
		3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09동 104~2006호
		4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10동
	48	1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11동
		2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12동 201~2002호
		3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12동 103~2004호
		4	830의 1 세영리첼아파트 113동
동계	48	198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1동)	1	1	739, 740, 1076
		2	741 ~ 743
		3	744, 745
		4	746, 747
		5	748, 749
		6	738
	2	1	758, 759
		2	750, 751, 760
		3	752 ~ 754
		4	734, 736, 737
	3	1	761, 762
		2	763 ~ 765
		3	767
		4	766, 779
		5	779의 3 (대원주택)
	4	1	755 ~ 757
		2	770, 771
		3	769, 777
		4	768
		5	772 ~ 774
	5	1	785의 1 (동북아파트)
		2	785
		3	776
		4	775의 1 대명1차아파트 가동
		5	775의 1 대명1차아파트 나동
	6	1	778의 9 명성주택
		2	783의 4 현대1차아파트 가동
		3	783의 4 현대1차아파트 나동
		4	783의 2 동신아파트
		5	784의 1 향운주택 가, 다동
		6	874의 1 향운주택 나동
7		778, 783, 784	

동명	통	반	관할구역
나운동 (나운1동)	7	1	780
		2	781, 782, 788
		3	789 ~ 791
		4	787의 4 금호1차아파트 가동
		5	787의 4 금호1차아파트 나동
	8	1	786의 1 명성타운 가동 1~8호
		2	786의 1 명성타운 가동 9~12호, 나동 9~12호
		3	786의 1 명성타운 나동 1~8호, 상가
		4	787의 1 그린아파트
	9	1	792의 1 현대2차아파트 가동
		2	792의 1 현대2차아파트 나동
		3	793의 1 한신아파트 107동
		4	793의 1 한신아파트 108동
		5	794 ~ 797, 798, 804, 805, 806
	10	1	799의 1 한신주택 101동, 102동
		2	799의 1 한신주택 103동, 105동, 106동
		3	803의 2 동원주택 1동, 2동, 상가
		4	803의 2 동원주택 3동, 4동
		5	802의 5 희산파크 가동
		6	802의 5 희산파크 나동
		7	807, 808, 산 107 ~ 119
	11	1	800의 2 그린골든아파트 1~3층, 801
		2	800의 2 그린골든아파트 4~5층
		3	800의 2 그린골든아파트 6~7층
		4	800의 2 그린골든아파트 8~9층
		5	800의 2 그린골든아파트 10~11층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1동)	12	1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1~2호, 상가 B동
		2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3~4호
		3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5~6호
		4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1동 7~8호
		5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2동 1~2호
		6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2동 3~4호
		7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2동 5~6호
		8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2동 7~8호
	13	1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3동 1~2호, 상가 A동
		2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3동 3~4호
		3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3동 5~6호
		4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3동 7~8호
		5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3동 9~10호
		6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5동 1~2호
		7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5동 3~4호
		8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5동 5~6호
		9	1155의 9 현대백조아파트 105동 7~8호
	14	1	590~619, 650~689
		2	551의 1~8, 568, 576의 1, 586의 1, 589
		3	527의 1~38, 564~585, 620~649
		4	한성주택
	15	1	555의 1 우진아파트 1동, 2동
		2	555의 1 우진아파트 3동, 4동
		3	555의 1 우진아파트 5동, 6동
		4	555의 1 우진아파트 7동, 8동
		5	555의 1 우진아파트 9동, 10동
		6	555의 1 우진아파트 11동, 12동
		7	555의 1 우진아파트 13동, 상가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1동)	16	1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1동, 상가
		2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2동
		3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3동
		4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6동
	17	1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4동
		2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5동 1~7호
		3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5동 8~10호
		4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5동 11~14호
		5	1556 보람더하임아파트 107동
	18	1	809, 810
		2	811, 812
		3	813
		4	820, 821
		5	822 ~ 824, 825, 826, 829, 830
	19	1	814, 815, 816
		2	819
		3	818
		4	817, 827, 828
	20	1	831 주공2아파트 1동, 상가
		2	831 주공2아파트 2동, 3동
3		831 주공2아파트 4동, 5동	
4		831 주공2아파트 6동, 7동	
5		831 주공2아파트 8동, 9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1동)	21	1	831 주공2아파트 10동, 11동
		2	831 주공2아파트 12동, 13동, 831의 2
		3	831 주공2아파트 14동, 15동
		4	831 주공2아파트 16동, 17동
		5	831 주공2아파트 18동, 19동
	22	1	833의 1 세광타운 1~4층
		2	833의 1 세광타운 5~8층
		3	833의 1 세광타운 9~12층
		4	832, 833
		5	834의 1 대명4차아파트 1~4호
		6	834의 1 대명4차아파트 5~8호
		7	834의 1 대명4차아파트 9~12호
	23	1	835 주공3아파트 101동, 103동
		2	835 주공3아파트 105동, 107동
		3	835 주공3아파트 108동, 109동
		4	835 주공3아파트 106동, 110동, 상가
		5	835 주공3아파트 111동, 112동
		6	835 주공3아파트 113동, 114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1동)	24	1	835 주공3아파트 102동, 835의 9	
		2	835 주공3아파트 104동, 115동	
		3	835 주공3아파트 116동, 117동	
		4	835 주공3아파트 118동, 119동	
		5	835 주공3아파트 120동, 121동	
		6	835 주공3아파트 122동, 123동	
		7	835 주공3아파트 124동, 125동	
		8	835 주공3아파트 126동, 127동	
	25	1	836	
		2	837	
		3	838 ~ 843, 835의 1, 3, 5, 6, 7, 8	
	26	1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1동 1~2호	
		2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1동 3~4호	
		3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1동 5~6호	
		4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1동 7~8호	
		5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2동 1~2호	
		6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2동 3~4호	
		7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2동 5~6호	
		8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2동 7~8호	
		9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2동 9~10호	
	27	1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3동 101~506호	
		2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4동 101~1502호	
		3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4동 301~1504호	
		4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4동 501~1506호	
		5	733의 1 동신진주아파트 104동 701~1208호	
	동계	27	15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1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1동 1 ~ 4호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1동 5 ~ 8호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2동 1 ~ 8층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2동 9 ~ 15층
	2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3동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7동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8동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9동
	3	1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4동 1 ~ 4호
		2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4동 5 ~ 10호
		3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5동
		4	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 206동
	4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1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1동 5 ~ 10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1 ~ 4호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2동 5 ~ 10호
		5	489 금호타운아파트 상가, 487의 7, 487의 9, 487의 11
	5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5 ~ 10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4동 1 ~ 4호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4동 5 ~ 10호	
6	1	489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1 ~ 4호	
	2	489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5 ~ 8호	
	3	489 금호타운아파트 106동	
	4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동 1 ~ 4호	
	5	489 금호타운아파트 107동 5 ~ 8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7	1	401 삼성아파트 101동, 102동
		2	401 삼성아파트 103동, 104동
		3	401 삼성아파트 105동, 106동
		4	401 삼성아파트 상가, 346의 20, 365, 365의 2, 367, 368의 1 ~ 3, 368의 5, 368의 8, 369, 369의 1, 370, 370의 1, 370의 3, 371, 372의 1, 373의 1, 374, 374의 1, 374의 3, 375의 2 ~ 3, 375의 6 ~ 7, 375의 9, 376, 376의 1 ~ 2, 376의 4, 377, 378, 378의 1 ~ 3, 379, 379의 1, 380, 381, 382의 3, 383의 2, 386의 3, 387, 387의 3, 388, 389, 405, 406, 406의 4, 406의 6, ~ 8, 407, 407의 2, 409, 410, 411, 411의 2, 412의 2, 413, 413의 1, 414, 414의 2~4, 415, 416의 1 ~ 2, 416의 13, 420, 421, 421의 10, 481의 9 ~ 10, 482, 482의 2, 483, 484, 486, 486의 7, 487의 13 884의 2
	8	1	401 삼성아파트 107동, 108동
		2	401 삼성아파트 109동, 110동
		3	401 삼성아파트 111동, 112동
		4	95의 2, 95의 4, 95의 11, 95의 16 ~ 17, 96의 8, 99의 4, 100의 2 ~ 3, 100의 8, 100의 12 ~ 13, 100의 15 ~ 17, 100의 22, 344의 8 ~ 10, 344의 16, 344의 19, 481의 7, 486의 1, 486의 10, 487의 5, 487의 10, 487의 12, 487의 15 ~ 16, 489의 3, 489의 12~ 14, 1493의 14, 1493의 17 ~ 18, 1493의 27
	9	1	345 롯데아파트 101동
		2	345 롯데아파트 102동
		3	345 롯데아파트 103동
		4	345 롯데아파트 상가, 316의 2, 316의 12, 316의 23~24, 334, 336 ~ 339, 340의 8~18
	10	1	345 롯데아파트 105동
		2	345 롯데아파트 106동
		3	345 롯데아파트 107동
		4	345 롯데아파트 108동
11	1	345 롯데아파트 109동	
	2	345 롯데아파트 110동	
	3	345 롯데아파트 111동	
	4	320의 3, 334, 334의 2 ~ 3, 345, 336의 3, 337의 3 ~ 4, 338, 338의 5, 339의 5, 339의 11, 339의 13, 340의 8 ~ 11, 340의 13 ~ 15, 340의 17 ~ 18, 345, 1498의 3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12	1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2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7동
		3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8동
		4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9동
		5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상가, 일반번지 92의 5, 93의 4, 95의 1, 95의 8, 95의 12, 95의 15, 96의 1 ~ 2, 96의 10 ~ 12, 96의 13 ~ 12,2, 96의 24~ 25, 97, 97의 4 ~ 5, 98의 2, 98의 4 ~ 6, 99의 2, 100의 7, 100의 9, 100의 14, 100의 25, 101의 1 ~ 2, 101의 4, 101의 6, 101의 8 ~ 9, 101의 10, 101의 12, 101의 18 ~ 20, 101의 23 ~ 24, 102의 2 ~ 3, 104의 2 ~ 3, 106의 1, 106의 3, 106의 10, 107의 2, 107의 19
	13	1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2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3동
		3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5동
		4	100의 11 롯데3차아파트 206동
		5	107의 8, 107의 12, 109의 10, 313의 1, 316의 3 ~ 4, 316의 17 ~ 22, 342의 7~ 9, 342의 23 ~ 26
	14	1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1 ~ 4호
		2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1동 5 ~ 10호
		3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2동 1 ~ 4호
		4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2동 5 ~ 10호
		5	109의 22, 109의 24, 114의 20, 114의 34, 114의 36 ~ 40, 114의 43, 114의 45, 114의 47, 133의 6, 133의 8 ~ 9, 135의 1, 136의 1, 136의 6, 137의 1, 137의 4, 139의 1, 145의 1, 145의 6, 145의 24, 342의 27, 342의 29, 산191의 6, 산192, 산193의 1, 산193의 3
	15	1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3동
		2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4동
		3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405동
		4	109의 6 나운4차 현대아파트 상가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16	1	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202동
		2	92 금호타운아파트 203동, 204동
		3	92 금호타운아파트 205동, 206동
		4	92 금호타운아파트 상가, 83, 84, 85, 86-2 ~ 5, 90, 90-1, 91, 91-2 ~ 5, 92, 501-1, 503-1, 502, 121-1, 122, 123-3, 4, 501의 1 501의 9
	17	1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1동 1 ~ 10층, 상가
		2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1동 11 ~ 20층
		3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2동 1 ~ 2호
		4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2동 3 ~ 4호
	18	1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3동 1 ~ 4호
		2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3동 5 ~ 6호
		3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4동 1 ~ 2호
		4	501 나운3차 현대아파트 304동 3 ~ 4호
		5	501의 2, 501의 4 ~ 5, 501의 10 ~ 11, 501의 13, 501의 15, 516, 516의 4 ~ 7, 516의 9, 517, 520, 520의 2~ 5, 520의 7, 520의 9 ~ 12, 521, 521의 4, 522의 1~ 4, 522의 12 ~13, 522의 15, 522의 19 ~ 20, 522의 22 ~ 25, 522의 27~ 28, 522의 30 ~ 31, 526의 4 ~ 5, 527의 39 ~ 43, 527의 47, 530, 530의 1 ~ 3, 531의 2 ~ 6, 531의 9 ~ 10, 532의 3 ~ 7, 533의 9, 534의 1~ 3, 534의 6, 1491의 4 ~ 5, 1491의 7 ~ 8, 1491의 10, 1542 ~ 1555, 1518, 1518의 1, 1518의 2, 1519의 1, 1520, 1520의 1, 1520의 2, 1520의 3, 1521, 1521의 1, 1521의 2, 1521의 3, 1521의 4, 1522
	19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1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1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1동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2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20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2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2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7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7동 9 ~ 15층
		5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상가, 45의 4, 45의 8 ~ 10,
	21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3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3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4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4동 9 ~ 15층
	22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5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5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6동 1 ~ 8층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6동 1 ~ 15층
	23	1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8동 1 ~ 8층
		2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8동 9 ~ 15층
		3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09동
		4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0동 1 ~ 8층
		5	45의 7 나운주공 5단지아파트 510동 9 ~ 15층
	24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1 ~ 5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6 ~ 10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1동 11 ~ 15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상가 38의 1, 38의 3 ~ 4, 38의 8, 39의 2 ~ 3, 39의 9, 48의 1, 49의 2, 49의 5 ~ 8, 50의 3 ~ 7, 50의 20, 51의 1 ~ 3, 51의 5 ~ 7, 51의 9, 51의 12 ~ 13, 51의 16 ~ 19, 51의 22~ 23, 51의 26 ~ 27, 51의 29 ~ 30, 51의 32 ~ 34, 52의 1, 52의 5, 52의 8, 53의 1 ~ 2, 53의 4, 53의 6, 53의 8, 53의 10, 53의 15 ~ 16, 53의 18, 53의 20, 54, 54의 3 ~ 4, 783의 5 ~ 6, 852, 1491의 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25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1 ~ 4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5 ~ 8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9 ~ 12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2동 13 ~ 15층
	26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1 ~ 4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5 ~ 8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9 ~ 12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3동 13 ~ 15층
	27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4동 1 ~ 8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4동 9 ~ 15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5동 1 ~ 8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5동 9 ~ 15층
	28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1 ~ 4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5 ~ 8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9 ~ 12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6동 13 ~ 15층
	29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1 ~ 4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5 ~ 8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9 ~ 12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7동 13 ~ 15층
30	1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1 ~ 4층	
	2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5 ~ 8층	
	3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9 ~ 12층	
	4	45 주공영구임대아파트 408동 13 ~ 15층	
	5	59~66, 69~78, 80, 82의 3, 87~90, 90의2, 501의 1~20, 502~506, 516, 520~522, 527의 43, 527의 47, 530~531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2동)	31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1동 1호~6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8동 1호~6호
		3	1527, 1527의 1~14, 1528, 1528의 1~5, 1529, 1529의 1, 1530, 1530의 1~13, 1531, 1531의 1~9, 1532, 1532의 1~11, 1540, 126, 126의 1~16, 128, 128의 1~23, 127, 127의 1, 114, 114의 1, 114의 2, 114의 32, 130, 130의 1, 131, 131의 1~8, 산189, 산189의 1
	32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2동 1호~6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3동 1호~6호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4동 1호~3호
	33	1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5동 1호~3호
		2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6동 1호~6호
		3	1525 수송금호어울림 107동 1호~6호
	34	1	1526 수송코아루 101동 1호~4호
		2	1526 수송코아루 102동 1호~4호
		3	1526 수송코아루 103동 1호~4호
	35	1	1526 수송코아루 104동 1호~4호
		2	1526 수송코아루 105동 1호~4호
3		1533, 1533의 1~11, 1534, 1534의 1~11 1535, 1535의 1~11, 1536, 1536의 1~5 1537, 1537의 1~11, 1538, 1538의 1~11	
동계	35	14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3동)	1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1동1호~4호, 상가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2동 1호 ~4호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5호~6호
	2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3동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5동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5호~6호
	3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층~4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5층~8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9층~12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3층~15층
	4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1층~8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9층~15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9층~15층
	5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1층~7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8층~14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9층~15층
	6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1층~5층, 상가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6층~10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1층~6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7층~13층
	7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7호~12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3동)	8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1호~4호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7호~12호
	9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1호~4호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5호~8호
	10	1	155의 7 우성아파트 101동
		2	155의 7 우성아파트 102동
		3	155의 7 우성아파트 103동
		4	155의 7 우성아파트 105동, 상가
	11	1	155의 6 롯데아파트 301동, 상가
		2	155의 6 롯데아파트 302동
		3	155의 6 롯데아파트 303동
		4	155의 6 롯데아파트 305동
	12	1	155의 5 대우아파트 101동
		2	155의 5 대우아파트 102동
		3	155의 5 대우아파트 103동
		4	155의 5 대우아파트 104동, 상가
13	1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1호~4호, 상가	
	4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5호~8호	
14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1동, 상가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2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3동	
	4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4동, 153(153의 11 제외), 301(수자원공사)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원3동)	15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5동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6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7동
	16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층~5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6층~10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1층~14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1층~7층, 상가
	17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8층~13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층~5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6층~10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1층~15층
	18	1	1188의 10 남전주택 가동, 나동, 다동, 1188~1189
		2	1188의 10 남전주택 라동, 마동
		3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가동, 나동, 상가
		4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다동, 라동, 마동
	19	1	1188-5 동산은파아파트 가,나동, 상가
		2	1187-2 금호2차아파트 가동, 상가, 1187-9, 1187-16
		3	1187-2 금호2차아파트 나,다동
		4	845, 846
	20	1	1187의 7 삼성아파트, 1192 ~1196, 1202~1207, 1257,
		2	161 ~ 185
3		132, 133, 186, 331의 1, 산215, 산216	
4		10,187~330, 138의 2, 333	
21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6호~9호, 상가, 156의 1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2동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1호~5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원3동)	22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6호~9호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4동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1호~5호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6호~9호
	23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1호~5호, 상가2동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1호~5호, 상가1동, 156의 4~5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6호~10호
	24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1층~7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1층~15층
	25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8층~15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1층~15층
	26	1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1호~6호, 상가
		2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7호~12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3호~6호
	27	1	866의 1 유원아파트 3동 1호~6호
		2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1호~4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5호~6호, 5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5동 3호~6호
	28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5호~10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5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6동 1호~4호
29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2동 1호~6호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3동 1호~4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5호~8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원3동)	30	1	1250~1297, 1321~1399, 1255의 11 그린은파파크맨션 201호~1002호
		2	854의 1 군산월드아파트, 847~854, 1126의 16~17, 1128의 3, 1198~1302, 1304~1307, 1309~1310, 1312, 1315~1316, 산107의 10, 산107의 15, 산170의 1, 산170의 3~4, 산172~산172의 2, 산173의 1~3, 산174의 1~2
		3	855~865
		4	867~871, 1120~1186(1126의 16~17, 1128의 3제외), 1190, 1234
		5	1242의 9 신광모자원A,B,C동, 1235~1249(1248제외), 산107 (산107의 10, 산107의 15제외)
미룡동	31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1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3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1호~4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5호~6호
	32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5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6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7동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8동
	33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2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1호~2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3호~6호
	34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1동, 상가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2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3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4동
	35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5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6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7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8동
36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9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0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1호~4호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5호~6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룡동	37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1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층~10층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1층~20층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3동
	38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4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5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1호~4호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5호~6호
	39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7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8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9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1동
	40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0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2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3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4동
	41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5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6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7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8동
	42	1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1동
		2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2동
		3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3동
		4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4동
		5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05동
	43	1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1동, 102동
		2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3동, 104동
		3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5동
		4	59-118 은파롯데인벤스가아파트 106동
	44	1	1~52(49 제외), 58~186(59, 71 제외)
		2	187~330
		3	878~895
	45	1	49, 53~57, 59, 산204의 3, 산213, 347~412
2		413~426, 산155의 1, 산163의 3	
3		427~473, 704~709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룡동	46	1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4층
		2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5층~8층
		3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9층~12층
		4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3층~15층
	47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층, 상가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2층~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5층~7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9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0층~12층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13층~1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15층~16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17층~18층
		5	842~865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2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5층~8층
		3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9층~12층
		4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3층~15층
	50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6층~18층
		2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층~6층
		3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2층
4		854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3층~18층	
51	1	474~670, 산62, 산68	
	2	671~703, 710~834(842~865제외, 878~895제외)	
신관동	52	1	376~474의4
		2	474의6~568
		3	570~659의1
	53	1	42의6~172
		2	42의118, 166, 176~281의3
개사동	54	1	20의1~118의2, 356~357, 432~433, 438의1, 산44, 신관동867
		2	118의3~269의1
		3	283의1~47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룡동	55	1	71 금광베네스타 101동 1호~6호, 상가
		2	71 금광베네스타 105동 1호~6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4호~7호
	56	1	71 금광베네스타 102동 1호~3호
		2	71 금광베네스타 103동 1호~7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4동 1호~6호
	57	1	71 금광베네스타 106동 1호~6호
		2	71 금광베네스타 107동 1호~4호
		3	71 금광베네스타 108동 1호~6호
동계	57	219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1통	1	1019의 1
		2	1019의 1
		3	1019의 42
		4	1019의 44, 46
		5	1019의 6, 45
	2통	1	1019의 6, 7, 8, 9, 23, 29, 43, 1015의 1, 1016~1018, 1019의 2, 24, 25, 27
		2	1021의 7~11, 1020의 2~9, 산7의 1, 1021의 17, 26~33, 1024의 34, 1048의 18
		3	1021의 3, 15, 19~25, 1024의 25~30, 32~33, 36, 39, 44~45, 47~51, 59, 1048의 11, 1021의 13, 14, 1022의 6~12 1024의 17~24, 38, 54, 55, 61, 64, 65, 71~76, 1019의 10, 13, 17, 18, 1024, 1024의 1, 4, 6, 8, 9, 16, 41, 42, 58, 61
	3통	1	1047의 3, 7, 30, 31, 1052의 8, 10, 11, 1053
		2	1052의 2~11, 1053, 1050의 7, 8
		3	1065, 1066의 1, 2, 1067의 1, 2, 1068, 1069의 1, 1071의 3, 산121의 1
		4	1063, 1063의 1, 4, 5~11, 13, 14, 1064, 1388의 54~59, 산122의 1
	4통	1	1393의 24, 1393의 119~133, 1393의 158, 1474의 1, 3, 4
		2	1393의 24~26, 137, 138
		3	1393의 3, 8, 9, 52~150
		4	1393의 3, 78, 84, 86, 148, 150, 1475의 9, 1476의 1, 2, 1477의 3
	5통	1	1377의 3, 4, 8, 10, 1478의 1, 2, 1482의 1~3, 1483, 1484의 1, 2
		2	1379의 2, 3, 1382의 1, 2, 1383의 4, 5, 7, 12~14
		3	127의 1, 1349~1351, 1355, 1356, 1377, 1379, 1380, 1383, 1393, 1394, 1459, 1479, 1480, 1486
		4	1344, 1346, 1347의 1, 1348의 2~5, 산127의 1, 19, 1435, 1433, 1361의 1, 5, 1366의 1, 1367의 1, 1367의 4, 1469, 1363, 1410, 산 150, 산125
		5	1347의 12 나우하우츠아파트 101~609호
		6	1347의 12 나우하우츠아파트 701~1504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6통	1	806~808, 792~796, 776~791, 801~805
		2	837 남전연립1차 가동
		3	837 남전연립1차 나동
	7통	1	863 남전연립2차 가, 나동 858~866, 853~855
		2	867~897
		3	900~912
		4	913~922
	8통	1	857 서해그린아파트 101동 101~1506
		2	857 서해그린아파트 101동 107~1014
		3	857 서해그린아파트 102동 101~1506
		4	857 서해그린아파트 102동 107~1512호, 상가
	9통	1	1388의 1, 8~16, 1391의 1, 2, 4, 1392의 17, 147의 13, 14, 72
		2	1388의 17~32, 60, 61, 1391의 2, 3, 6~11
		3	1388의 33~53, 68~71, 79~82
		4	1386의 5 진성연립주택, 1388의 76 장민연립주택, 1388의 4~6, 62~67, 72~74, 76~78, 83, 84, 1392의 8, 9, 14, 24, 산123의 23, 1393의 6, 14, 22, 108, 111, 162, 163
		5	1386의 6, 1392의 11, 12, 14~16, 20, 1393의 1, 14, 108, 112~117, 154, 155, 1473의 14~19, 산123의 25
	10통	1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1동 101~711호
		2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1동 801~1311호
		3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2동 101~711호
		4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2동 801~1210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11통	1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3동 101~1505호
		2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3동 106~1509호
		3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5동 101~1505호
		4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5동 106~1509호
	12통	1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6동 101~1502호
		2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6동 103~1505호
		3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6동 106~1507호
		4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6동 108~1509호
		5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7동 101~1502호
		6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7동 103~1505호
		7	1323의 13 동아아파트 107동 106~1507호, 상가
	13통	1	1010 성원상떼빌@ 101동 101~1508
		2	1010 성원상떼빌@ 102동 101~1508
		3	1010 성원상떼빌@ 103동 101~1506
	14통	1	1010 성원상떼빌@ 104동 101~1506
		2	1010 성원상떼빌@ 105동 101~1509
		3	1010 성원상떼빌@ 106동 101~1509
	15통	1	1348의 18 금강골드빌라 101동, 101~1008호
		2	1348의 18 금강골드빌라 102동, 101~906호
		3	1348의 18 금강골드빌라 103동, 101~808호
		4	1348의 18 금강골드빌라 104동, 101~808호
		5	1348의 18 금강골드빌라 105동, 101~804호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16통	1	1531 삼진골드빌라, 1531~1 서해빌라2차, 1532, 1533
		2	1534, 1534~3 소망아트빌라, 1535, 1535~5 신흥파크빌라
		3	1527~1530, 1528~7 소룡빌라 가동, 1528~17 소룡빌라 나동
		4	1525, 1526, 1536, 1537
오식도동	17통	1	오식도일원
비응도동	18통	1	비응도일원
소룡동	19통	1	1552의 4 명성주택 가동
		2	1551의 4 명성주택 나, 다동
		3	1551의 1, 2, 155의 3, 평화아파트, 1550, 1539
		4	1538, 1553~1558
	20통	1	1386의 10 진흥아파트 3동 101~1004호, 1102~1304호
		2	1386의 10 진흥아파트 3동 105~1308호
		3	1386의 10 진흥아파트 5동 101~1210호
		4	1386의 10 진흥아파트 6동, 7동
	21통	1	1385 이화아파트 101동 101~612호
		2	1385 이화아파트 102동 101~600호
		3	1349의 26 이화아파트 103동 101~612호
	22통	1	1560의 2 신흥무지개 101동
		2	1560의 2 신흥무지개 102동
		3	1561의 1 그린아파트 가동
		4	1561의 1 그린아파트 나동
		5	1559~1570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23통	1	1386의 10 진흥아파트 1동 101~1204호
		2	1386의 10 진흥아파트 1동 104~1308호
		3	1386의 10 진흥아파트 2동 101~1306호
		4	1386의 10 진흥아파트 2동 107~1310호
	24통	1	836 동아연립 가, 나동
		2	836 동아연립 다, 라동
		3	834 현대연립 가동
		4	834 현대연립 나동, 819~835
	25통	1	755 신도시시티빌 101동 101~417호
		2	755 신도시시티빌 101동 501~817호
		3	755 신도시시티빌 101동 901~1317호
		4	755 신도시시티빌 101동 1401~1817호
	26통	1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101~324호
		2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401~724호
		3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801~1024호
	27통	1	1542~1546, 1546~3 서해아트빌라
		2	1541, 1547, 1547~4 예그린아파트
		3	1540, 1548, 1548~9 삼성아파트 1549
		4	1571~1574
	28통	1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1101~1324호
		2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1401~1624호
		3	755 신도시시티빌 102동 1701~1924호
	29통	1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1동 101~1206
		2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2동 101~1206
		3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3동 101~1206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30통	1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4동 101~1208
		2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5동 101~1206
		3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5동 107~1212
	31통	1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6동 101~1205
		2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6동 106~1210
		3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7동 101~1205
		4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7동 106~1210
	32통	1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8동 101~1208
		2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9동 101~1204
		3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09동 105~1209
		4	663 소룡동제이파크아파트 210동 101~1206
	동계	32	12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1	1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1~3층
		2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4~6층
		3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7~9층
		4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10~12층
		5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13~15층
		6	산북동 3602-4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1~3층
		7	산북동 3602-4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4~6층
		8	산북동 3602-4 부향하나로2차아파트 7~8층
	2	1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1~3층
		2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4~5층
		3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6~7층
		4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8~9층
		5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10~11층
		6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12~13층
		7	산북동 3637-5 부향하나로4차아파트 14~15층
	3	1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1~3층
		2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4~5층
		3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6~7층
		4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8~9층
		5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10~11층
		6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12~13층
		7	산북동 3589 부향하나로5차아파트 14~15층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4	1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1동 101~1404호
		2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1동 105~1409호
		3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2동 101~1304호
		4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2동 105~1310호
		5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3동 101~1204호
		6	산북3538 코오롱아파트 103동 105~1209호
	5	1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1동
		2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2동
		3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3동
		4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4동
		5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5동
		6	산북3551-1 산북시영1차아파트 106동
	6	1	산북3571~3577, 3591~3598
		2	산북3600~3607, 3611~3618 (부향1,2차A 제외)
		3	산북3620~3642 (부향4차A 제외)
		4	산북180~189, 290~291,320~322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개사동	7	1	개사190, 605, 672의 3 ~ 672의 39, 1126의 3
		2	개사672의 43 ~ 672-93, 855-10,11, 1123~1129
		3	개사509 ~ 598
		4	개사601 ~ 672, 972
	8	1	개사903의 1 ~ 985의 4
		2	개사986 ~ 1056의 3
산북동	9	1	산북3542-2 청소년근로자아파트 가동
		2	산북3542-2 청소년근로자아파트 나동
		3	산북3540-1~3542 (주공A 제외)
	10	1	산북70의 23 ~ 174의 3, 1219의 4
		2	산북1212의 2 ~ 1304의 1
		3	산북3529~3534, 3548~3550
		4	산북3554~3568
		5	산북3556-1(우리아파트)
	11	1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1동 1~4층
		2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1동 5~8층
		3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1동 9~13층
		4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2동
		5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3동
		6	산북3551 시영2차아파트 204동
	12	1	산북3536의 1 서해제일A 101~410호
		2	산북3536의 1 서해제일A 501~710호
		3	산북3535~3537 (성일맨션 포함)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13	1	산북355~403, 427~436, 476~480, 487~493, 927, 928, 505-1, 500~502, 505-7~9, 505-42,57,62, 583-1, 584-1~3, 585, 586-1, 567, 588, 590, 591-1,593-1, 594, 592-1, 596-1, 597-1, 598-2, 599-1,4,5, 595, 593,
		2	산북365의 21 ~ 400의 1, 451 ~ 494
		3	산북505의 1, 922 ~ 984
		4	산북1752의 3 ~ 1761의 9
	14	1	산북536-5~582, 592-3, 597, 600-658, 692-714
		2	산북659-691
		3	산북516~530, 715~780, 784-1, 819-1, 782, 783
	15	1	산북505-19, 505-24번지내 상가
		2	산북505-19, 505-24번지내 아파트, 주택, 연립
	16	1	산북487, 494, 504 ~ 505
		2	산북775-7, 776-2, 785, 802~818, 821~840
		3	산북790~800, 880-13, 787-6~9,3, 786-5, 788-1, 2953, 2954, 3164~3167,
		4	산북868~871-1, 871-7, 872-5~12, 877-6, 879
		5	산북841~ 867
	17	1	산북871, 871-5, 872~872-3, 873~876, 922-120, 121, 22, 69, 75, 90, 922-79~81
		2	산북880-17, 880-18, 878-5, 881~909, 910-3, 911-3, 915-4, 917-3, 917-6
		3	산북916-7, 917-1, 918~921, 922-2~7, 922-15,17,23, 922-25~28, 922-31~46, 922-52~55, 922-59,82,93,98,115,922-125~127, 137, 916-7, 917-1, 918~921, 931-2,8, 941-10,13,22,943-13, 945-15,2, 946-1, 947-1,3
		4	산북923~926, 922-8~13, 922-18~21, 922-30,48,49,50, 922-60~63, 922-66~68,77,78 922-125, 922-114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18	1	산북1034 ~ 1527의 3, 1545의 2
		2	산북1529 ~ 1643
	19	1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101~411호
		2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501~710호
		3	산북3546의 5 성일아파트 801~1001호
		4	산북 산 37의 2 축협아파트, 3543~3547
	20	1	산북1925 ~ 1937의 5, 1938의 20, 2906
		2	산북1938 ~ 1947의 6
	21	1	산북1060 ~ 1069의 20, 1925의 13
		2	산북1073 ~ 1876의 6
	22	1	산북1622 ~ 1638의 1
		2	산북1631의 1, 1639의 2 ~ 1656
		3	산북1057, 1661-1, 1161-6, 1161-3, 산89
	23	1	산북1067의 1 ~ 1835, 3469, 산104의 1
		2	산북1838의 1~1872의 6, 3469~3469의 2
		3	산북102, 1079, 1115~1119, 1983
	24	1	산북2564 ~ 2576, 2628의 1
		2	산북2613의 1~2632, 2787~2797, 2846~2847
25	1	산북2544의1~2541, 2568, 2625, 2641, 2642	
	2	산북2690 ~ 2784의 2, 2787, 2794, 3031	
	3	산북2784의 3 ~ 2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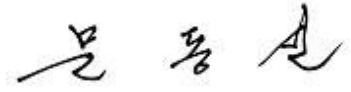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26	1	산북2645의 1 ~ 2764, 2764의 2, 2871의 2
		2	산북2764의 1 ~ 2881
		3	산북2412 ~ 2422, 2064
		4	산북2532 ~ 2541의 3
	27	1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5호
		2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6호
		3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7호
		4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8호
		5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1호
		6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2호
		7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3호
		8	산북3542 산북주공아파트 204호
	28	1	개사707 ~ 717
		2	산북2968의 3 ~ 2995, 3150, 3153
		3	산북3120 ~ 3130, 3311
	29	1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1동
		2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2동
		3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3동
		4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4동
		5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5동
		6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7동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산북동	29	7	산북3542 주공아파트 111동
		8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6동
		9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8동
		10	산북3542 주공아파트 109동
		11	산북3542 주공아파트 110동
	30	1	산북 893-6,15 ,2467의 2 ~ 2488의 1
	31	1	산북 797-3, 2493 ~ 2719의 3
		2	산북 2925 ~ 2992의 1
	32	1	신관 746 ~ 779의 3
		2	신관 769의 2산북 781-4, 786-7, 787-4, 788-4,3,10, 789, 791-6, 789-3,5, 790-7, 3374의 1 ~ 3381의 1
		3	신관 788의 2 ~ 793의 2 개사 679의 1 ~ 799의 3 산북 3394 ~ 3395의 1
개사동	33	1	신관 723의 10 ~ 920 개사 1176 ~ 1176의 3
		2	개사 519 ~ 563의 24
산북동	34	1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1~2층
		2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3~4층
		3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5~6층
		4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7~8층
		5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9~10층
		6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11~12층
		7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13~14층
		8	산북3579-1 대명임대아파트 15~17층, 산북 3579 ~ 3581번지블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35	1	산북3540 금강파크아파트 가동
		2	산북3540 금강파크아파트 나동
		3	산북3540 금강파크아파트 다동
		4	산북3540 금강파크아파트 라동
내초동	36	1	2 ~ 20
		2	21 ~ 30의 8
		3	30, 31의2 ~ 200, 산42의 1
동계	36	149	
동 총계	423	1,838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1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역사회 범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만13세 미만으로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이 된다.

-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2.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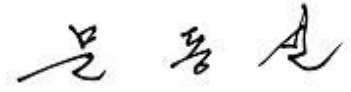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2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종 주민 대상 교육, 워크숍,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 과장 등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및 서기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및 의장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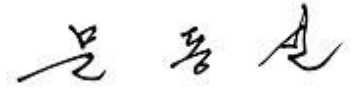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3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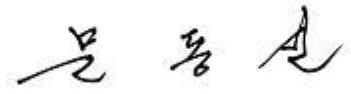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u> 군 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p>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4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정책”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정책을 말한다.

제2장 여성정책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 고용촉진 및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주요여성정책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라.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책의 여론·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정참여의 확대)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취업·창업 등 경

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가족유형·지역·연령 등에 따른 연령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 추진)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호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단체 대표
2. 여성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자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과장, 서기는 여성정책계장으로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제22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발

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자원봉사활동
4.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5.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업
7. 그 밖의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영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24조(기금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단체 선정 및 기금 지원금액 결정

5. 지원신청자의 1년간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기부담 능력 여부
 6. 그 밖의 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
-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6조(기금 관리) ①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여성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계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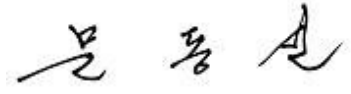
제3조(군산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로 본다.

제5조(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폐지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5호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를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설가, 문학평론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의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2항 및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 는 장편소설로 한다.

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의 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상자의 결정)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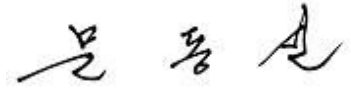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p> <p>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문학부분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20인 이내의 추천위원, 월간 문학지 발행인, 각 대학장 및 문인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신 설></p> <p><신 설></p> <p>제11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 설></p> <p><신 설></p>	<p>제명 :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p> <p>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u>소설가, 문학 평론가</u>, 문학부분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 <u>②수상후보자 추천 대상 작품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작품집 또는 장편소설로 한다.</u> <u>③추천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u></p> <p>제11조(수상자의 결정) ① ----- 7명----- ----- <u>②심사위원은 중앙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문학평론가 및 일간지 문화부 기자 중에서 위촉한다.</u> <u>③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u></p>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6호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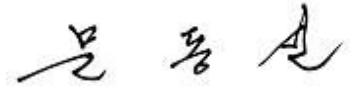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7호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산시(이하“시”라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유통·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

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자 또는 보조
2. 친환경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4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촉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의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보육시설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6.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기관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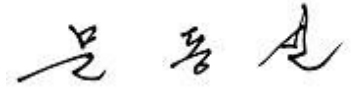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8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의뢰)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위탁·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4조(수탁기관)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탁·의뢰의 조건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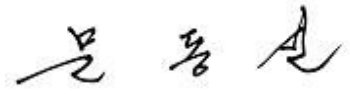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949호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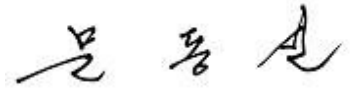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61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이·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이·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제1항을 준용하여 임명한다.

제3조(보고) 읍·면·동장이 제2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

③ 이·통장 임기 중에 70세에 도달하여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④ 이·통장 중 임기 중에 해임·자진사퇴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

제5조(이·통장의 정년) 이·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이·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당해 리 또는 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5. 리 또는 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이 변경 된 때
6. 기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① 이·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

수의 기회, 체육·단합 행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회의) 이·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17조(명예 반장제) ① 읍·면·동장은 지도층 인사의 읍·면·동정 참여를 위하여 명예 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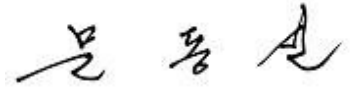
② 명예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462호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신분증 규격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p> <p>②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p>	<p>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p>

[별표]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5×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흑색전사

2. 재질은 아이에스오(ISO)규격의 피브이시(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6×0.8mm)

3.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크기·서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서 체
군산시의회 마크	φ 1cm×1cm	
성 명(한 글)	15포인트	돋움체
성 명(영 문)	9.5 "	돋움체
군산시의회(한 글)	13.5 "	HY울릉도B
군산시의회(영 문)	9 "	돋움체
의 원 신 분 증	14 "	HY울릉도B
발 급 번 호	10 "	돋움체
성 명	10 "	돋움체
주민등록번호	10 "	돋움체
위사람은 ~ 증명함.	9 "	바탕체
발 급 년 월 일	9 "	돋움체
군산시의회의장	12 "	HY울릉도B
발급기관장 직인	1cm×1cm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주소	8 포인트	돋움체
의회회장 배경바탕	φ 3.7cm×3.7cm	

4. 의원 신분증의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녹 색 : 파랑(c80),노랑(y100),빨강(0),검정(0)

나. 노 랑 : 파랑(0),노랑(y100~0),빨강(0),검정(0)

다. 연두색 : 파랑(c30),노랑(y100),빨강(0),검정(0)

라. 의회회장 바탕 : 파랑(c4),빨강(m16),노랑(y100),검정(k8), 강도 31%

마. 의회마크 : 파랑(c4),빨강(m16),노랑(y100),검정(k8), 강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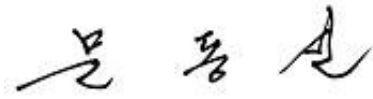
※ ()숫자는 컬러모드임.

5. 인쇄사양은 읍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로 달 수 있게 한다.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9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269호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정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와 군산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 수행자”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 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 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이란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5. “소송 총괄부서”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 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관·과·소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관·과·소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 총괄부서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소송수행

제5조(소장 접수 및 소송방침 결정) ① 시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 소송 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소장을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에 소장 부분을 소송 주관부서로 송부하여 적극 응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③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소방침을 세워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사건개요 및 처분 경위
4. 응소, 반소 및 응소포기 등의 사유
5. 그 밖의 참고자료

제6조(소송 수행자·소송 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 대리인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이 매 건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이상을 지정한다.

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지정하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송 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소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의 선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 제기)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

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제소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련부서의 장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 수행자의 권한)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조(소송 수행자의 의무) ① 소송 수행자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총괄부서의 지도와 관할 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총괄부서의 지도를 받고,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 수행자가 행정소송에 있어 내부방침 및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락,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 탈퇴
2.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의 후단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또는 기각된 사건에 대한 결정문
4.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5.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장의 지휘를 받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고, 방침은 소송개요 또는 배경, 청구취지, 청구사유 및 상대방의 청구사유,

소송부서 또는 소송수행자의 상대방 청구사유에 관한 반박 및 의견, 문제점 및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소송 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장의 지휘를 먼저 받아야 한다.

⑤ 소송 수행자는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시에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전까지 소송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 수행자의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소송 중의 신청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어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인용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본안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여야 할 또 다른 분쟁의 존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존부, 채권 보전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소제기, 소송고지, 가압류신청, 가처분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

③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일을 고려하여 적시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⑥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12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 수행자 또는 소송 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고에 있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경료 후에 필요에 따라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③ 상고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지정에 대하여는 원심의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

④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종결시의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4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①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및 민사소송·행정소송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15조(업무구분) ① 소송 총괄부서의 소송비용 회수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송 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2. 소송비용회수 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의 심사
3. 소송비용회수 총괄대장(별지 제2호서식)의 비치 및 정리

② 소송 주관부서의 소송비용 회수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소사건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총괄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건 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것
2.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할 것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것
4.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할 것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16조(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③ 소명자료에는 영수증·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수결과 통보) 소송 주관부서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사건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회수일자, 회수금액등을 소송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소송사무처리지침」 및 「군산시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제4조 관련>

구분	심급별	소송수행자	근거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사소송	1심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가소·가단)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1심중 합의부 사건 및 2심3심	·변호사를 선임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인지
500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재 허 부
주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다. 소의 취하
-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바. 복대리인의 선임
-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수입인지
1000원

신청인 군산시
 대표 시장 ○ ○ ○

송달장소 군산시 조촌동 888

피신청인 ○ ○ ○

송달장소 ○○시 ○○면 ○○리 ○○번지

위 당사자간 귀 원 0000가단 00000호 000000 사건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에 원고 패소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송비용계산서 ○부. (상대방 수만큼 부분 첨부)
2. 확정증명원, 판결문 사본(심급별) 각 1부.
3. 지출증빙서류 사본 1부
4.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원
5.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 ○○○원(인지첨부). 끝.

○○○○년 ○월 ○일

신청인(원고·피고) 군산시 대표자 시장 ○ ○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비용항목		비용액	참고사항	
제1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소송출석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원		
	감정료	원		
	증인여비	원		
		원		
		원		
		원		
	원			
제2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원		
		원		
	원			
제3심	인지대	원		
	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착수금 :	원	
		사례금 :	원	
	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원		
위 신청서	송달료	원		
		원		
합계금		원		

※ 소송비용계산서는 상대방수를 더 첨부(법원 + 상대방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군산시소송사무처리지침

1. 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가. 소장접수

- (1) 시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 기획예산과(이하 "소송담당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 (2) 소장을 타실·과·소에서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문서접수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문서 접수부는 이를 문서접수부에 등재한 후 소송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피소보고

- (1) 소송담당부서는 소장인수시 지체없이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소송담당부서는 소장의 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소장 부분을 관련부서로 송부하여 적극 응소토록 조치해야 한다.

2. 소송수행(담당)자 지정

가. 행정소송

- (1)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2)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부서의 소송담당공무원을 지명하며 공동수행토록 한다.
- (4)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1차 변론기일 이전에 당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민사소송

- (1) 소송담당부서는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관련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을 소송담당공무원으로 지명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때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2)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소송담당부서 및 검찰청에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가) 빈소(反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認諾), 민사소송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소송 탈퇴

나) 항소, 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60조제1항의 단서 및 제39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소를 하지 않을 취지의 합의

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라)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擴張)

마)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3)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임된 사건은 지체없이 법원에 제기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준비서면,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들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6)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6일 이내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판결, 결정, 명령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기재한 후 3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8) 승소 확정된 급부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고 확인, 형성 판결, 기타 결정, 명령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불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1) 소송담당공무원과 소송수행자는 불변기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불변기간 도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12) 소송수행자가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서를 처리할 때는 소송담당부서에 그 처리내용을 통보하여 대장에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소송담당부서가 불변기간이 도과된 사실의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수행 해태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수행 해태보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한다.

(13) 소송서류의 송달일자는 수령자가 우체국 집배인의 소송서류송달보고서에 송달일시, 장소 및 수령인의 성명등을 기재날인하여 준 날(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동대리인의 수령일)로 한다.

(14) 집배인으로부터 최초의 소송서류를 수령한 자는 봉투표면이나 그 소송서류의 여백부분에 접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5) 상고제기 등의 소송행위는 불변기간의 최종일로부터 최소한 3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처리 하여야 한다.

(16) 소송서류는 도달주의에 의하여 법원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서류를 우송할 경우에는 마감이내에 법원에 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일을 두고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안 소송수행

가. 본안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여 사시관계를 파악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나.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를 참고하고, 당해 사건 취급자로부터 처분경위를 청취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전에 항변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상대방의 주장사실중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마. 지휘사건의 경우에는 1차변론기일 2일전까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바. 공동수행사건의 경우에는 1차변론기일 3이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사. 답변서 드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전에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부수는 상대방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 만큼이다.

4. 상고시의 소송수행

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으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고제기시에는 고문변호사 및 소송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판결문에 상고이유서를 첨부 하여 늦어도 상고기일 마감일 7일전에 당해 검찰청검사장에게 상고여부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서 수행한다.

다. 상고시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소심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하여는 원심소송수행 절차를 준용한다.

5. 소송의 종결

가.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요령

(1) 이행판결 등에 있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거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확정된 판결주문에 의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회수 하여야 한다.

(3) 승소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집다리에 위임하여 강제집행토록 하여야 한다.

(4) 부당이득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자 및 그 대리인에게 반환조치토록 하되 임의 반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세입조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거 이를 회수,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나.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

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 처분시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또는 구상권행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여 집달리가 세입금을 강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소송담당부서에 조회하여 가집행정지 신청여부와 집달리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 소지 여부 및 기타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 이행여부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하여야 할 서류는 판결문 사본, 확정 증명서, 가집행부여문 사본 또는 집달리 영수증등이다.

나) 세입금을 강제집행 당한 부서는 강제집행 즉시 세입금 압류사시을 "(가)"에 열거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5) 변제시 소송관련부서에서는 소송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청구서, 판결문 정본, 판결확정증명,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등의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1996.09.13 예규제 003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

1. 목 적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중 승소사건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에 지출된 소송비용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이 지침에 대한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민사소송법

나. 민사소송비용법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대법원 규칙)

3. 방 침

가.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해 승소간주로 종결된 사건에 지출된 소송비용을 철저히 회수하여 주민의 실익없는 소송제기를 적극 예방한다.

나. 소송을 수행한 실·과·소에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실무 경험을 통한 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

4. 업무처리요령

가. 소송비용의 회수대상

(1)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민사·행정 소송사건

(2)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중 소송비용의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

나. 소송비용 회수업무는 다음과 같이 총괄·심사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비용회수수행부서로 구분하여 관장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2) 비용회수 수행부서는 당해 소송을 수행한 실·과·소장이 된다.

다.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부서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도

(2) 소송비용 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성여부 심사

(3) 소송비용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별지 제1호서식)

라. 소송비용 회수 수행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소사건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법원의 승소간주 확정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한다. 이때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총괄부서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고지기간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집행에 의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4) 승소가 확실시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을 때는 관할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정지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 발생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6) 소송사건을 수행한 부서에서는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의 회수는 당해 소송을 수행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관련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될 때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마.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1) 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표 1"의 예시에 의한다.

(2)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금액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등은 소가증명에 의한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한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참조)

(3) 소송비용은 실제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명자료에는 영수증, 산출근거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소송비용의 산출요령은 "별표 2"의 예시에 의한다.

사. 소송수행부서에서는 패소자로부터의 소송비용 회수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1996.09.13 예규제 00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432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 및 법제사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토록함.(안 제6조)

나. 주관과장은 시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시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토록 함 (안 제10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3장)

마. 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운영(안 제38조)

3. 의견제출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qbqb1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자치법규를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

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제1절 입법안 작성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관·과·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이를 거쳐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

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조례제5조제5항에 의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취내용
4. 예산조치사항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규제심사 등)

제2절 입법안 심사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과장은 군산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인구통계에 따른 구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주관과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자치행정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과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3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원본을 주관과장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사항 공표) 주관과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에는 명부 전체를, 읍·면·동에는 해당읍·면·동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경우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 있다고 의결한 경우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 없다고 의결한 경우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⑤ 주관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과장은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과장은 청구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청구를 각하한다.

② 주관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조례안의 검토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해당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법제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시장,부시장 및 각 국·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회 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본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 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0조(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국·소·센터장의 결재를 얻은후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계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 부서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안 전문(제정·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포 및 시행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4호 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시

제28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북도지사(참조 주관과장),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법령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 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 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회시) 법제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제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7장 중요문서 심사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중요문서(제33조제1호)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자치법규의 관리

제35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라 한다)의 편찬·발간 및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 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으로 편찬·간행하되, 대본은 매 5년을 기준으로 대본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

③ 인터넷 사이트 및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공포문 원본은 법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시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36조(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시의 직제순에 의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제37조(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신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집 등 관리

제39조(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할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헌행법령집
2. 군산시 현행자치법규집

제40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점검)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중지 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2조(변상책임)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법령질의 요령(예규19호,2009. 6.1)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조례제정·개정·폐지 청구 사무처리 규정(훈령제253호.2009.10.30)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훈령제252호 2009.9.15)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 의견내용 : ○ 제출사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일부반영) 또는 미반영 - 반영 내용 기재

※ 조치내용에는 의견제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반영 또는 미반영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서술함.

[별지 제2호서식]

시의원 발의(수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

조례명			
종 류	제정(), 개정(), 폐지()		
발 의 의 원	시 장(), 의회의원()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i>(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 작성)</i>		
의 회 의 결 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공 포 기 한 (공포예정일)	(년 월 일)	검토보고기한	년 월 일
근 거 법 령			
구 소 관 부 서			
시 주 관 부 서			
의 원 발 의 안			
주 요 내 용	검 토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최 종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안 : <input type="checkbox"/>수용, <input type="checkbox"/>재의요구 - 부결안 : <input type="checkbox"/>수용, <input type="checkbox"/>차기회 재제출(<input type="checkbox"/>원안, <input type="checkbox"/>제3안) ▶ 부서 종합의견(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 심사대장(제8조 관련)

연번	접수 일자	입법 구분	제목	정비 구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상급기관 보 고	공포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제12조 관련)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그 밖의 관련자료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제12조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 산 시 장 인</p>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2조 관련)

청구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입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제1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대 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첨부 : 증빙자료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검토의견서(제16조 관련)

- 안 건 명 :
- 대표발의자 :
- 주관부서 :

청구대상 조례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조문별 검토의견 ○ 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정 현황 보고(제24조 관련)

군 산 시

조례(규칙)명					
종 류	제 정 ()	개 정 ()	폐 지 ()		
제 안 자	시 장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의 의 결 일	20 년 월 일				
의 회 의 결 일	20 년 월 일	이 송 일	20 년 월 일		
공포기한(예정일)	20 년 월 일	재의요구기한	20 년 월 일		
근 거 법 령					
구 소관부서					
시 주관부서					
제정·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주 요 내 용 요 약					
검 토 의 견					

[별지 제13호서식](제25조 관련)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제25조 관련)

군산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제26조 관련)

군산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6호서식](제26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앞)

관련 서식	법령해석요청서
<p>1. 질의요지</p> <p>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p> <p>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p> <p>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p> <p>5. 민원인 의뢰 여부</p> <p>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법」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공문을 첨부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p> <p>*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반드시 첨부</p> <p>*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요청하는 경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첨부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연장 시 2개월)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서류(질의서가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문서 등) 첨부</p> </div> <p>7. 참고자료 ※ 관련 판결례, 결정례, 해석례, 법령자문결과 등을 첨부하십시오.</p>	

법령해석요청서 (뒤)

법령	체 크 사 항	체 크	관련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 부가 법령해석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월 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결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 해석이 있지 않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질의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별지 제17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고시·공고문 등)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목	요 지	주관부서	공고방법등	담당자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제35조제4항 관련)

대본 배부일 20 . .

배 부 기관명	대본배부	추 배 년 월 일	기록부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453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분과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 7개분과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만금, 인재양성, 일자리창출, 관광진흥, 문화복지, 지역산업, 녹색성장분과를 둔다.
- 위원수 : 분과별 7명 이내 (연임가능)

다. 회 의 (안 제4조)

- 협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jsj71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전화 : 450 - 65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안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제8조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 분과
2. 인재양성 분과
3. 일자리창출 분과
4. 관광진흥 분과
5. 문화복지 분과
6. 지역산업 분과
7. 녹색성장 분과

제3조(분과위원회 임무) ① 제2조 각호에 의한 분과위원회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직무내용을 변경시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이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별표 1의 업무 관련 과장이 수행한다.

제4조(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연구 등) ① 분과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전략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 시장이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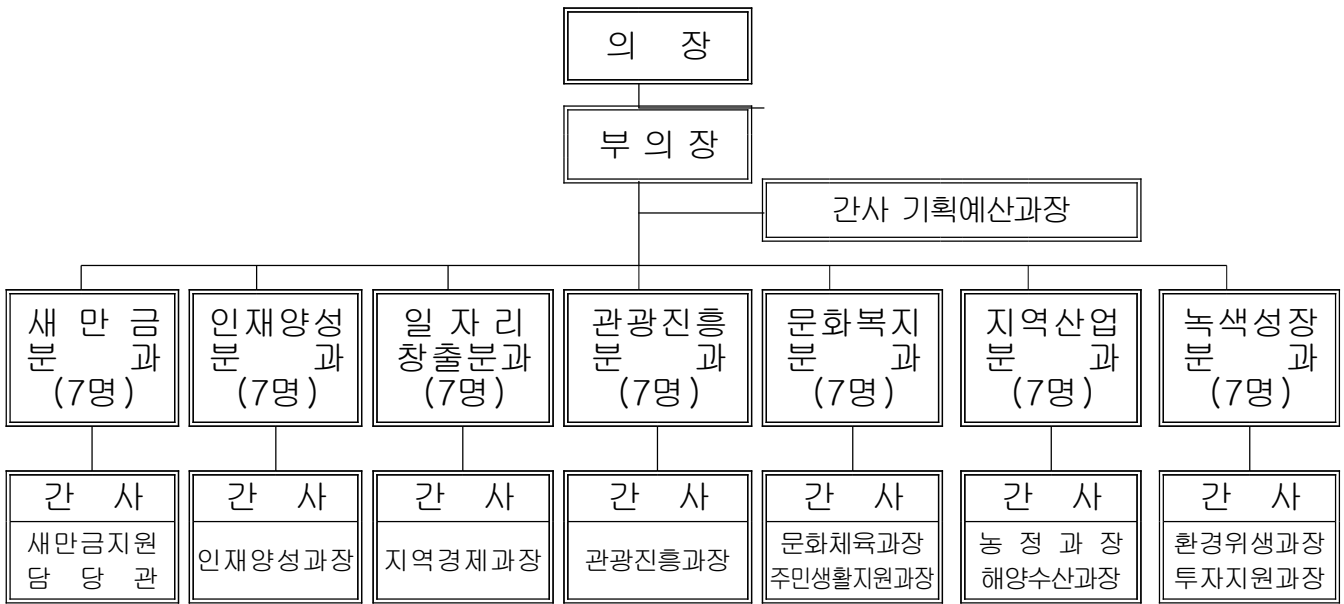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협의회의 구성체계 및 직무(별지1)**

○ 구성체계(7개 분과 - 50명 이내)



○ **분과별 직무**

새만금분과	- 새만금 자원 활용 군산 발전방안 연구 - 새만금 산업 인프라 전략 수립 - 새만금 사업 등 법률자문
인재양성분과	- 인재양성, 교육환경 개선,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교육지원 사업 연구 개발 - 중장기 교육 진흥사업 연구 개발
일자리창출분과	- 지역발전 사업 개발 -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 지역전략 산업 및 특화사업 연구 개발
관광진흥분과	-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축제 개발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방안 연구
문화복지분과	-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 방안 연구 -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지원
지역산업분과	- 농수특산물 경쟁력 향상 사업 발굴 - 농수특산물 브랜드 강화 방안 연구 -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방안 연구
녹색성장분과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 산업 투자지원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454호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2. 주요내용

가.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을“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치법규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명)

나. 「지방자치법」 관련근거 조문정비(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 「지방자치

법」 제19조제6항 →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다.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안 제2조)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2)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군산시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qbqb1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군산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 · 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군산시 조례 · 규칙 및 예산 등(이하“조례 · 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

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공포일·고시일) 제6조의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조례·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9조(시행일) 조례·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463호

「군산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군산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
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 063-450-4288, 팩스 063-452-816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

(전화 063-450-42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한) 이 개정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 ③(경과규정) 이 개정규칙 시행 당시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동안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의2(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기업 <p>< 신설 ></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8조의2(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 3.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p>② ----- ----- ----- ----- ----- ----- ----- ----- -----</p>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공영사업과 450-44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산북동 316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분	공구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 적(m ²)		
							당 초	변 경	
타운로 도로개설	제1공구	중로1-9	20	1,282	20	1,282	25,640	24,642	공부정리에 따른 면적변경
	제1공구	소로1-279	10	216	10	216	2,160	1,852	
	제2공구	중로1-10	20	872	20	500	10,000	10,252	
소 계				2,370		1,998	37,800	36,746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공영사업과)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군산시 타운로 도로개설 : 2009. 12. ~ 2015.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토지의 소유자 및 권리자 명세조서 (타운로 도로개설)

- 종로 1-9

번 호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 본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산북	3480	구	30,945	1,463	30,945	1,463	국유지	국		
2	산북	3164-2	답	219	135	219	219	미룡동 857 미룡2차대명아파트 202동 1815호	이부자		
3	산북	3164-3	도	51	35	51	51	금동 1-12	유한회사군장종합주류		
4	산북	3165	답	4,899	170	4,899	259	군산시 평화동 158-7	엄재봉		
5	산북	3166	답	2,157	74	2,157	108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2동 2003호	임대중		
6	산북	3166-1	답	2,157	102	2,157	146	순천시 남정동 558-5	박종속 외1인		
7	산북	3167-2	답	2,119	95	2,119	129	군산시 산북동 727	김영배		
8	산북	3167-1	답	1,983	94	1,983	127	군산시 산북동 727	김영배		
9	산북	3168	답	2,949	14	2,949	21	대전 서구 월평동 312-1 진달래아파트 107동 506호	김종근		
10	산북	790-1	답	122	12	122	19	대전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아파트110동1407호	김종근		
11	산북	790	답	1,650	818	1,650	831	군산시 산북동 2713	이남진		
12	산북	790-15	대	162	162	162	162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282 삼익목화아파트 108동 302호	주양돈		
13	산북	790-3	대	495	258	495	287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407 갈마아파트 203동 1202호	박인자		
14	산북	791	답	182	44	182	29	군산시수송동 33-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501호	김민정 외1인		
15	산북	791-8	답	331	80	331	90	대전광역시 서구 도미동 317-44 삼원아파트 1동 130호	조은정		
16	산북	791-9	답	331	66	331	75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55-68 한보빌라 비동 101호	안향순		
17	산북	791-10	답	331	59	331	65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1 삼성아파트 25동 1307호	조명희		
18	산북	791-13	답	149	70	149	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45 유성목련아파트 103동 406호	이현옥		
19	산북	791-12	답	165	55	165	64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01 누리아파트 103동 806호	윤여복		
20	산북	788-1	답	2,760	11	2,760	19	익산시 영등동 238-41	이선규		
21	산북	788-9	답	109	94	109	109	경성부황금정1정목 7	불이흥 업주식 회사		

번호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2	산북	788-12	도	182	45	182	84	군산시 산북동 825	고일례		
23	산북	788-8	전	63	53	63	63	경성부황금정1정목 7	불이흥업주 식회사		
24	산북	788-11	도	126	4	126	29	군산시 산북동 1182	이광희		
25	산북	787-5	도	413	312	413	332	군산시 산북동 851	김우환		
26	산북	787-10	대	14	6	14	6	시유지	군산시		
27	산북	786-12	대	178	30	178	36	군산시 산북동 858	허종남		
28	산북	781-1	구	1,956	178	1,956	195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개 량조합		
29	산북	786-4	구	66	10	66	10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개 량조합		
30	산북	786-1	대	225	22	225	23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052	김영예		
31	산북	785-16	답	628	17	628	25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052	김영예		
32	산북	785-2	도	215	174	215	15	군산시 산북동 840	정영자		
33	산북	783-2	도	63	55	63	63	군산시 산북동 815-2	고현용		
34	산북	802-10	도	89	3	89	5	옥구구 미면 산북리 840	고백룡		
35	산북	784-2	도	225	123	225	71	군산시 산북동 815-2	고현용		
36	산북	778-7	도	182	3	182	11	군산시 산북동 516	조기영		
37	산북	778-1	답	3,180	903	3,180	919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 파트 3동 701호	조기영		
38	산북	777-1	답	1,243	365	1,243	309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 파트 3동 701호	조기영		
39	산북	788-10	전	268	-	268	68	경성부황금정1정목 7	불이흥업주 식회사		
40	산북	776-1	답	1,917	307	1,917	127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 파트 3동 701호	조기영		
41	산북	777-2	도	79	-	79	-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 파트 3동 701호	조기영		
42	산북	776-3	도	185	-	185	-	군산시 산북동 516-3	조기영		
43	산북	729-1	대	495	73	495	3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05-17 다세대 -101	문영희 외3인		
44	산북	775-3	묘	1,452	825	1,452	829	국유지	국(제무부)		
45	산북	775-5	묘	700	410	700	410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3 신반포16차아파트119동706 호	조기영		
46	산북	819-3	대	628	454	628	484	서울 중랑구 묵동 122-123	이도형		

번호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7	산북	819-1	대	374	-	374	0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90-3 거산황공맨션 102동 1306호	소신자		
48	산북	819-5	대	145	143	145	145	영화동 17-7	배창룡		
49	산북	819-4	대	225	30	225	0	영화동 17-7	배창룡		
50	산북	516-2	도	225	64	225	0	국유지	국(농수산부)		
51	산북	516-1	전	800	477	800	483	군산시 산북동 729	조기순		
52	산북	516-3	대	466	3	466	10	군산시 산북동 729	조기순		
53	산북	516-4	대	822	929	822	333	군산시 산북동 729	조기순		
54	산북	516-5	대	209	120	209	120	군산시 산북동 729	조기순		
55	산북	517-1	전	1,081	543	1,081	733	군산시 산북동 521	신상록		
56	산북	3467	도	9,293	226	9,293	226	국유지	국(농수산부)		
57	산북	521	대	483	318	483	347	군산시 산북동 521	신갑수		
58	산북	519-2	도	179	-	179	-	서울 종로구 공평동 55	주식회사옥구아메리카타운		
59	산북	520-1	대	935	552	935	548	군산시 산북동 520	문판남		
60	산북	520-2	도	10	3	10	4	군산시 산북동 977	원천중		
61	산북	527-2	도	3	3	3	3	군산시 산북동 977	원천중		
62	산북	531-2	도	66	66	66	66	서울 종로구 공평동 55	주식회사옥구아메리카타운		
63	산북	505-98	대	215	56	215	70	군산시 산북동 505-19	주식회사옥구아메리카타운		
64	산북	505-24	대	16,297	777	16,297	812	군산시 산북동 505-19	(주)옥구아메리카타운 외5인		
65	산북	505-19	대	17,054	403	17,054	419	군산시 산북동 505-19	(주)옥구아메리카타운		
66	산북	535-2	도	17	13	17	13	서울 종로구 공평동 55	(주)옥구아메리카타운		
67	산북	505-49	도	20	-	20	-	군산시 산북동 505-19	(주)옥구아메리카타운		
68	산북	536-6	도	10	8	10	1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8	신동원		
69	산북	536-3	대	172	156	172	17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8	신동원		
70	산북	536-7	도	40	4	40	4	군산시 산북동 523	신공남		
71	산북	540-1	전	374	280	374	274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8	신동원		
72	산북	536-5	전	886	351	886	34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14-8	신동원		

번호	동	지번	지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3	산북	536-4	도	106	-	106	3	군산시 산북동 523	신공남		
74	산북	536-1	도	63	23	63	58	군산시 산북동 523	신공남		
75	산북	583-2	도	126	36	126	81	군산시산북동505	박인학		
76	산북	583-1	전	1,078	477	1,078	484	서울 강동구 성내동 599 우림루미아트 101동 201호	유연정		
77	산북	584-3	대	251	189	251	187	군산시 산북동 584-3	오장환		
78	산북	591-1	전	1,792	448	1,792	457	군산시 산북동 587	허양미 외2인		
79	산북	590-1	전	202	8	202	9	논산시 내동 772 힐하우스 402호	한상이		
80	산북	593-1	답	903	457	903	444	군산시 산북동 379	신준호 외1인		
81	산북	596-1	답	3,088	451	3,088	456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6동 1102호	김귀빈		
82	산북	597-1	답	2,324	281	2,324	284	익산시 향라면 신대리 447	신기남		
83	산북	598-2	답	3,924	508	3,924	514	군산시 산북동 577	신기남		
84	산북	599-3	답	317	4	317	0	군산시 금동가 45-15	신기훈		
85	산북	3473	구	2,757	265	2,757	265	국유지	국(농수 산부)		
86	산북	428-2	답	1,835	21	1,835	29	금광동 157-49	문철선		
87	산북	428-3	답	1,913	301	1,913	338	군산시 산북동 2792	장금례		
88	산북	428-1	구	132	65	132	65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량조합		
89	산북	428-4	답	500	-	500	-	시유지	군산시		
90	산북	427-3	답	1,550	-	1,550	-	시유지	군산시		
91	산북	395-9	구	36	-	36	-	시유지	군산시		
92	산북	395-12	답	2,766	3	2,766	0	시유지	군산시		
93	산북	395-11	답	225	-	225	-	시유지	군산시		
94	산북	395-10	구	6	3	6	3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량조합		
95	산북	395-14	답	41	27	41	41	군산시 미룡동 577-12	김종쇠		
96	산북	395-5	답	623	10	623	0	군산시 미룡동 577-12	김종쇠		
97	산북	394-2	구	235	220	235	235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량조합		

번 위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 면 적 (㎡)	편 입 면 적 (㎡)	지 면 적 (㎡)	편 입 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8	산북	394-1	답	2,657	339	2,657	0	미룡동 577-12	김종쇠		
99	산북	394-4	답	398	77	398	398	미룡동 577-12	김종쇠		
100	산북	394-5	답	624	620	624	624	미룡동 577-12	김종쇠		
101	산북	394-3	답	2,708	-	2,708	-	미룡동 577-12	김종쇠		
102	산북	599-5	답	1,369	725	1,369	727	군산시 나운동 781-15	박성환		
103	산북	599-2	구	2,542	372	2,542	200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발조합		
104	산북	598-1	구	198	36	198	36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발조합		
105	산북	593-2	답	657	39	657	40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6-40 내동빌라 에이동 지층	박용자 외2인		
106	산북	584-1	임	1,362	225	1,362	228	국유지	국(재무부) 외 1인		
107	산북	582-1	도	116	62	116	60	군산시 산북동 577	신기남		
108	산북	582-2	대	410	235	410	252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447	신기남		
109	산북	581	대	145	-	145	-	군산시 산북동 573-2	박도현 외 1인		
110	산북	580	전	367	3	367	3	군산시 산북동 573-2	박도현 외 1인		
111	산북	539	대	377	297	377	310	군산시 산북동 533	이봉례		
112	산북	540-2	전	446	2	446	1	군산시 산북동 539	신동점		
113	산북	537-1	대	847	351	847	346	군산시 산북동 535	장봉룡		
114	산북	537-2	도	43	39	43	43	군산시 산북동	문석우		
115	산북	538-3	도	20	5	20	6	경성부황금정1정목 7	불이흥업 주식회사		
116	산북	533-2	도	106	5	106	5	서울 종로구 공평동 55	(주)옥구아메리카타 운		
117	산북	530-2	도	43	18	43	12	신평리 1293	이종록		
118	산북	530-1	묘	721	21	721	11	신평리 1293	이종록		
119	산북	528-2	도	7	6	7	7	군산시 산북동 528	신영구		
120	산북	528-3	대	125	124	125	125	옥도리 개야도리9	신유성		

번호	동	지번	지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1	산북	529	대	426	-	426	-	군산시 산북동 530	김정근		
122	산북	528-1	대	318	28	318	0	옥도리 개야도리9	신유성		
123	산북	522	대	413	175	413	155	군산시 산북동 522	강혜자		
124	산북	721-2	도	26	8	26	9	군산시 산북동 715	김홍근		
125	산북	721-1	대	350	133	350	130	군산시 산북동 715	김홍근		
126	산북	774	전	770	215	770	200	군산시 산북동 715	김홍근		
127	산북	774-1	전	397	43	397	34	군산시 산북동 715	김홍근		
128	산북	784-4	답	48	-	48	-	회현면 증석리 318	나대현		
129	산북	784-3	답	791	477	791	0	시유지	군산시		
130	산북	784-1	답	457	7	457	0	회현면 증석리 318	나대현		
131	산북	783-1	답	1,461	236	1,461	221	회현면 증석리 318	나대현		
132	산북	786-6	대	136	34	136	40	익산시 평화동 56번지	전북농지 개량조합		
133	산북	786-8	도	132	132	132	132	군산시 산북동 809	고백룡		
134	산북	786-7	전	774	77	774	69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4 제일효자타운 103동206호	서성원		
135	산북	787-4	답	2,826	564	2,826	53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4 제일효자타운 103동206호	서성원		
136	산북	788-2	전	833	291	833	26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4 제일효자타운 103동206호	서성원		
137	산북	788-3	답	2,612	431	2,612	401	나운동 527 나운2차현대아파트 207동 1101호	김종인		
138	산북	788-13	도	66	66	66	66	군산시 송풍동 960-2	송정길		
139	산북	791-6	답	264	38	264	29	군산시 수송동 33-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501호	김민정 외1인		
140	산북	791-5	도	456	228	456	210	군산시 수송동 33-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501호	김민정 외1인		
141	산북	791-14	답	398	349	398	332	군산시 수송동 33-1 제일임대아파트 103동 501호	김민정 외1인		
142	산북	791-3	전	99	-	99	-	국유지	국(재무 부)		
143	산북	790-9	도	159	-	159	-	군산시 산북동 778	김성기		
144	산북	790-6	도	182	86	182	86	국유지	국(재무 부)		
145	산북	790-8	도	179	173	179	173	국유지	국(재무 부)		
146	산북	790-14	수	957	51	957	0	국유지	국(건설 교통부)		

번호	동	지번	지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7	산북	3479	구	1,197	16	1,197	0	국유지	국(농수산부)		
148	산북	3178-2	수	13	9	13	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49	산북	3178-7	수	201	40	201	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0	산북	3178-1	도	192	167	192	167	시유지	군산시		
151	산북	3179-4	수	397	85	397	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2	산북	3179-1	도	185	190	185	185	군산시 산북동 527	박점수		
153	산북	3180-3	수	420	92	420	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4	산북	3180-1	도	198	196	198	0	시유지	군산시		
155	산북	3181-4	수	484	99	484	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6	산북	3181-1	도	188	180	188	180	시유지	군산시		
계				181,525	26,122	181,525	24,642				

▣ 토지의 소유자 및 권리자 명세조서 (타운로 도로개설)

- 중로 1-10

번호	동	지번	지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점적 (㎡)	편입적 (㎡)	지점적 (㎡)	편입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산북	3480	구	30,945	489	30,945	489	국	농수산부		
2	산북	2953	답	3,851	569	3,851	569	군산시 월명동 클래식움 APT 203동 501호	유경려 외 1인		
3	산북	798-1	답	93	37	93	0	국	국		
4	산북	798	답	4,985	1,036	4,985	1,036	군산시 산북동 2479	김태현		
5	산북	799-2	전	621	286	621	286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15-3	최윤식		
6	산북	799-1	답	4,893	592	4,893	592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 동 515-3	최윤식		
7	산북	800	답	2,000	818	2,000	818	군산시 구암동 현대APT 101동 501호	김은아		
8	산북	883-9	답	384	200	384	200	충북보은군보은읍삼산 리 19-15 종합상가비동 101호	김순복		
9	산북	880-13	답	3,633	1,080	3,633	1,080	군산시 산북동 874-5	김영실		
10	산북	880-10	구	43	22	43	22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량조합		
11	산북	880-7	구	73	24	73	24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량조합		
12	산북	874-2	도	2,300	22	2,300	23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량조합		
13	산북	878-8	도	36	34	36	36	군산시 산북동 843	신남균		
14	산북	872-11	대	429	29	429	29	군산시 해망동 1004	최금식		
15	산북	879-1	답	555	235	555	235	천안시 안서동 고운여 의주APT 101동 905호	이광영		
16	산북	870-3	전	992	495	992	495	천안시 안서동 고운여 의주APT 101동 905 호	이광영		
17	산북	869-3	도	79	73	79	73	군산시 나운동 금호타 운APT 103동 1308호	김진용		
18	산북	869-5	대	331	87	331	87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5-18	심민자		
19	산북	868-1	대	179	80	179	8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덕연립 다동 103호	김정애		
20	산북	868-3	도	40	40	40	40	군산시 산북동 869	김병길		
21	산북	868-2	대	73	66	73	73	군산시 나운동 금호타운 APT 103동 1308호	김진용		
22	산북	867-1	전	453	46	453	46	군산시 나운동 489 금호 타운APT 107동 1506호	김정일		
23	산북	867-3	도	83	-	83	-	군산시	국		
24	산북	867-2	전	60	55	60	55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9-12	김부남		
25	산북	804-5	답	79	30	79	30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9-12	김부남		
26	산북	3467	도	9,293	226	9,293	226	국	농수산부		

번호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7	산북	839-2	도	36	27	36	0	군산시 산북동 839	김종욱		
28	산북	804-6	도	10	3	10	3	군산시	국		
29	산북	804-2	답	4,035	1,601	4,035	1,730	군산시 조촌동 현대APT 102동 1202호	최성기		
30	산북	803-14	답	430	203	430	203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1동 1309호	김동진		
31	산북	803-3	답	20	17	20	20	군산시 산북동 864	김금동		
32	산북	803-13	답	383	236	383	236	충남당진군당진읍읍내리 광산드림아트빌비동701호	이현수		
33	산북	803-12	답	99	53	99	53	대전시 서구 정림동 우 성APT 125동 1001호	민덕기		
34	산북	803-11	답	232	104	232	104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 머리APT 222동 201호	고경미		
35	산북	803-10	답	232	53	232	53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장대 푸른지오APT 105동 302호	권오선		
36	산북	803-1	답	430	4	430	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동광하이츠빌라 6동 102호	정제위		
37	산북	869-2	전	175	118	175	118	군산시 나운동 금호타운 APT 103동 1308호	김진용		
38	산북	803-4	도	66	-	66	-	군산시	국		
39	산북	879-9	도	43	-	43	-	군산시 산북동 869	김종덕		
40	산북	879-7	전	89	53	89	53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APT 102동 1102호	정춘홍		
41	산북	879-8	대	356	26	356	26	군산시 산북동 827	김영주		
42	산북	880-6	전	60	39	60	0	국	재무부		
43	산북	880-14	구	10	5	10	10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발조합		
44	산북	880-9	구	20	11	20	20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발조합		
45	산북	880-5	구	245	107	245	107	익산시 평화동 56	전북농지 개발조합		
46	산북	796	답	3,491	-	3,491	-	군산시 문화동 문화APT 마동 502호	강해동		
47	산북	797-3	전	721	-	721	-	군산시 산북동 797-3	지석만		
48	산북	797-1	전	2,889	9	2,889	5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35	김성균 외 1인		
49	산북	2954-1	답	6,271	863	6,271	863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68	김종구		
계				86,846	10,203	86,846	10,252				

▣ 물건의 소유자 및 권리자 명세조서 (타운로 도로개설)

- 소로 1-279

번호	동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산북	804-2	답	4,035	129	4,035	0	조촌동 903-2 현대APT 102동 1202호	최성기		
2	산북	805	답	5,669	702	5,669	702	중앙로 1가 8-8	김윤조		
3	산북	810	답	1,583	43	1,583	43	대전시 서구 변동 1-16	우완식		
4	산북	810-1	답	331	109	331	109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부 영2차APT 206동 502호	박수옥		
5	산북	809	대	221	5	221	5	군산시 산북동 816-6	김방수		
6	산북	809-1	전	341	192	341	192	군산시 산북동 816-1	고옥룡		
7	산북	816-1	대	817	191	817	191	군산시 산북동 816-1	고옥룡		
8	산북	817-1	전	287	65	287	65	군산시 산북동 536-2	이화자		
9	산북	818-4	전	662	155	662	15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422-4	김준형		
10	산북	819-2	도	469	7	469	7	군산시	국		
11	산북	819-3	대	628	8	628	8	서울 종랑구 목동 122-123	이도형		
12	산북	775-5	묘	700	157	700	177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3 신 반포16차APT 119동 706호	조기영		
13	산북	775-2	도	602	90	602	0	재무부	국		
14	산북	818-3	전	659	147	659	147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3-9	조재희		
15	산북	817-2	도	122	29	122	29	건설부	국		
16	산북	808	답	1,051	22	1,051	22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318	나대현		
17	산북	803-14	답	430	-	430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1동 1309호	김동진		
계				18,607	2,051	18,607	1,852				

▣ 물건의 소유자 및 권리자 명세조서 (타운로 도로개설)

- 종로 1-9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 고
1	산북동	3164-2	현관	목조	1식	유한회사 군장종합 주류 임태순 (금동1-12)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담장	적벽돌(M)	47		
			대문	철재	1식		
			수도시설		1식		
			보안설비		1식		
			화단	일괄	1식		
			소나무		6주		
			철쭉		30주		
			인동초		2주		
			감나무		3주		
			산수유		5주		
화양목	1주						
계							
2	산북동	788-2	비닐하우스		109.0	서성원 (전주시완산구효 자동1가654제일 효자타운103동 206호)	
계							
3	산북동	787-4	비닐하우스	일괄	610㎡	서성원 (전주시완산구효 자동1가654제일 효자타운103동 206호)	
			석류	일괄	80주		
계							
4	산북동	786-12	창고및주방	조적조, 스티브	10	허종님 (군산시산북동858)	
			대문	철재	1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수돗간		1		
			담장		20		
			화단	일괄	3		
			소나무		4		
			은행		1		
			철쭉		25		
			감나무		3		
			석류		1		
			매실		1		
			자귀나무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6	산북동	729-1	주택	조적조스레트	48.2	문영희 외3인 (서울특별시성동 구옥수동505-17 다세대-101)	
			측백	일괄	11		
			살구		1		
			팽나무		1		
			개나리		11		
			버드나무		2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7	산북동	774-1	주택	조적조함석 (㎡)	83.9	김홍곤 (군산시산북동715)	
			다용도실	조적조판넬 (㎡)	19.8		
			창고	조립식(㎡)	12.95		
			창고	조적조판넬 (㎡)	30.5		
			차양	철파이프조 함석등	16		
			담장	블록조(m)	10		
			화단	일괄	1		
			동백		1		
			목단		1		
			수국		2		
			철쭉		10		
			소나무		1		
			박태기		1		
황매화	5						
계							
8	산북동	774	철망울	일괄	25	김홍곤 (군산시산북동715)	
			무궁화		200		
			살구		1		
			매실		1		
			무화과		2		
계							
9	산북동	721-1	주택	조적조 판넬	109.6	김홍곤 (군산시산북동715)	
			창고	조립식 판넬	32.16		
			창고	조립식 판넬	27.95		
			주택	조립식 함석	47.5		
			보일러실	조립식	10.8		
			주택(찜질방)	조적조판넬 (일괄)	24		
			축사	조적조 스투트	21		
			차양	철파이프조판넬	14		
			견사	철재(일괄)	2		
			차양	철파이프조판넬	19.55		
			호두나무	(일괄)	1		
			자두		1		
			무화과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0	산북동	775-5	주택	조적조 함석	100.8	조기영 (서울강남구 잠원동13-3신반포16차아파트119동706호)		
			차양	철파이프조 스투트	38.64			
			보일러실	조적조스레트 (일괄)	2.66			
			창고	조적조 함석	15.4			
			소나무	일괄	8			
			오엽송		5			
			단풍		9			
			매실		2			
			감나무		2			
			복숭아		2			
			사과		1			
			철쭉		30			
			향나무		4			
			조경수		5			
			주목		1			
			능소화		2			
			구기자		1			
			살구		1			
측백	2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 고
11	산북동	819-3	창고		목조	12.25	이도형	
			바닥포장	콘크리트	1			
			컨테이너		1			
			고염나무	일괄	1			
			대추		1			
12	산북동	819-5	주택	조적조스레트	143.28	배창룡 (영화동17-7)		
			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4.5			
			차양	철파이프조 PE스레트	15.48			
			화단	일괄	1			
			감나무		2			
			라일락		1			
			매실		1			
			동백		1			
			매화		1			
			노간주		1			
			철쭉		10			
			회양목		1			
			천리향		1			
			장미		2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3	산북동	516-1	주택	조적조 스투트	137.46	조기정 군산시 산북동 2479	
			보일러실및현관	조적조 스투트	23.7		
			화장실	조적조 스투트	6.58		
			담장	브럭조	25		
			향나무	일괄	15		
			장미		5		
			단풍		1		
			회양목		1		
			철쭉		2		
			감나무		1		
			라일락		1		
			벗나무		1		
			옥향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4	산북동	516-3	점포	조적조함석	67.9	조기정 (군산시산북동563)	
			화장실	조립식	5.5		
			창고	목조 썬라이트	10.35		
계							
15	산북동	516-4	주택	조적조 스투트	149.8	조기순 (군산시산북동729)	
			차양	철파이프조강판	29.4		
			창고	조적조 스투트	20.25		
			보일러실	식	1		
			향나무	일괄	6		
			단풍		1		
			회양목		1		
			광광		2		
			수국		1		
			측백		1		
			소나무		1		
			주목		1		
			배롱나무		1		
			모과		1		
			꽃사과		1		
			매실		1		
			동백		1		
			철쭉		3		
			뽕나무		1		
장미		3					
포도		1					
계							
16	산북동	516-5	주택및점포	조적조 스투트	96.2	조기정 (군산시산북동563)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7	산북동	516-5	점포	조적조 강판	93.84	조기정 (군산시산북동563)	
			화장실	조적조 강판	9.9		
			담장	브럭조	20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대문	(식)	1		
계							
18	산북동	517-1	주택	조적조 스투트	121.09	신상록 (군산시산북동521)	
			창고및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5.4		
			창고및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15.75		
			창고	철파이프조강판	69.75		
			창고	조적조 스투트	7.68		
			창고	조적조 스투트	7.03		
			차양	목조 스투트	14.43		
			담장	브럭조	7		
			비닐하우스		30		
			건사	철재(식)	1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생울타리	일괄	43		
			복숭아		3		
			조경수		1		
			작약		5		
			단풍		1		
감나무	2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9	산북동	521	주택	조적조 스투트	86.36	신갑수 (군산시산북동521)	
			통로	조적조 스투트	13.77		
			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7.15		
			창고	조적조 스투트	8.51		
			주택	조적조 스투트	62.4		
			보일러실및창고	조적조 스투트	5.55		
			창고	조적조 스투트	52.8		
			창고	목조 스투트	26.4		
			차양	목조 스투트	8.8		
			차양	목조 스투트	5.74		
			차양	목조 스투트	9.75		
			창고	조적조 스투트	9.24		
			축사	조적조 스투트	8.33		
			대문	철재(식)일괄	2		
			아궁이	식	1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우물	식	1		
			담장	m	8		
생울타리	일괄	33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0	산북동	522	주택	조적조 스투트	69.81	강혜자 (군산시산북동522)	
			주택	조적조 스투트	73.25		
			화장실및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9.1		
			창고	조적조 스투트	2.03		
			창고	조적조 스투트	9.44		
			창고	목조 스투트	7.8		
			창고	목조 스투트	7.44		
			창고및보일러실	목조 스투트(식)	1		
			차양	목조 스투트	28.06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대문	함석(식)	1		
			수돗간및장독대	(식)	1		
			담장	브럭조	25		
			담장	함석	21		
			화단	일괄(식)	1		
			향나무		2		
			사철		1		
			단풍		1		
			골단초		1		
			감나무		3		
			복숭아		1		
			자두		2		
			포도		4		
			앵두		1		
			대추		1		
			동백		1		
			무화과		1		
			철쭉		6		
수국		2					
측백		1					
사과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1	산북동	520-1	주택	조적조 스투트	79.1	문관남 (군산시산북동520)	
			현관	샷시조	7.7		
			주택	조적조스라브 및스레트	111.04		
			화장실	조적조 스투트	10.08		
			창고	조적조 스투트	14.1		
			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1.96		
			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1.54		
			창고	조적조 스투트	6		
			창고및 화장실	조적조 스투트	26.6		
			창고	조적조 스투트	8.88		
			통로	목조 스투트	16.5		
			우물	(식)	1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계단	(식)	1		
			대문	(식)일괄	2		
			담장	브릭조(m)	25		
			생울타리(m)	일괄	55		
			회양목		5		
			단풍		2		
			감나무		3		
			독활		1		
			향나무		2		
			주목		1		
			철쭉		6		
			남천		1		
			천리향		1		
			작약		2		
			동백		1		
			쥐똥		1		
			소나무		2		
장미	1						
대추	1						
석류	1						
은행	1						
무화과	1						
매실	1						
앵두	1						
계			골단초	5			
계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2	산북동	528-1	감나무	일괄	3.0	신유성외 5인 (옥도리 개야도리9)	
계							
23	산북동	505-98	바닥기초	콘크리트(m ²)	196.04	주식회사옥구 아메리카타운 외5인 (군산시 산북동 505-19)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4	산북동	505-19	주택	조적조 스투트	103.4	주식회사옥구 아메리카타운 외 5인 (군산시 산북동 505-19)	
			주택	조적조 스투트	136.3		
			창고	조적조 스투트	39.37		
			주택	조적조 스투트	69.44		
			주택	조적조 스투트	71.82		
			주택	조적조 스투트	67		
			보일러실	조적조 스투트	3.36		
			담장	브럭조(m)	130		
			목련	일괄	1		
			포도		1		
			계				
25	산북동	505-19	주택	조적조 스투트	43.4	김승규 (군산시505-19)	
			화장실 및 창고	조적조 스투트	4		
			장독대		1		
			가추	목조 썬라이트	1		
			담장	브럭조	5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6	산북동	537-1	주택 (1층)	조적조스라브 및강판	147.06	장봉룡 (군산시산북동 535)	
			주택 (2층)	조적조 판넬	110.94		
			통로	철파이프조 판넬	19.02		
			주택	조적조 스라브	125.73		
			주택	조적조 스라브	39.66		
			창고	목조 스투트	63.65		
			창고	조적조 스투트	8.58		
			창고및 화장실	조적조 스투트	4.94		
			창고	조적조 스투트	35.64		
			물탱크실	조적조 스투트	4.8		
			창고	목조 스투트	28		
			창고	조적조 스투트	8.82		
			현관	조립식 강판	5.98		
			우물	식	1		
			장독대	식	1		
			계단	식(일괄)	2		
			대문	식	1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담장	브럭조	10		
			차양	철재강판	4.42		
			동백	일괄	1		
			대추		7		
			감나무		3		
			장미		8		
			철쭉		16		
			사철		1		
			수국		1		
			팽나무		1		
			측백		1		
			목련		1		
			회양목		1		
			매화		2		
주목	1						
박태기	2						
포도	1						
엄나무	3						
무궁화	10						
고염	5						
계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7	산북동	536-3	주택	목조 스투트	42	신동원 [관악구조원동 (신림8 동)520-28]	
			창고	목조 스투트	12		
			측사	조적조스레트 일괄	7.5		
			감나무	일괄	1		
			드림		20		
			무궁화울		10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8	산북동	539	주택	조적조 판넬	86.07	이봉례 (군산시산북동 533)	
			주택및 창고	조적조 함석	78.36		
			화장실및 창고	조적조 함석	4.76		
			건사	일괄	16		
			차양	철재 강판	29.7		
			우물	식	1		
			대문	식	1		
			담장	식	55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장독대	식	1		
			목련	일괄	1		
			철쭉		11		
			장미		5		
			동백		1		
			작약		1		
			박데기		1		
			무궁화울		15		
			감나무		1		
배나무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29	산북동	580	주택	조적조 스라브	39.15	박도현 외 1인 (군산시산북동 573-2)	
			차양	철파이프조 스레트	19.14		
			창고	조적조 함석	7.7		
			주택	조적조 스레트	47.38		
			보일러실	조적조 스레트	2.56		
			창고	조적조 스레트	10.58		
			창고	조적조 스레트	6.24		
			주택	조적조 스레트	42		
			담장		3		
			대문	식	1		
			바닥포장	식	1		
			계단 (창고포함)	식	1		
계							
30	산북동	582-2	창고	목조 스레트	19.8	신기남 (군산시산북동 577)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31	산북동	584-3	주택	조적조 판넬	113.7	오장환외1인 (군산시산북동 584-3)	
			창고	조적조스레트 및스라브	33.9		
			창고	철파이프조 판넬	28.5		
			창고	조적조 스투트	9.76		
			차양	철파이프조 스레트	10.98		
			차양	철파이프조 함석	10.8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원두막	식	1		
			무궁화울	일괄	60		
			향나무		1		
			소나무		4		
			작약		2		
			박태기		2		
			철쭉		14		
			비자		1		
			산앵두		1		
			동백		4		
			주목		2		
벗나무	1						
감나무	1						
계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32	산북동	591-1	감나무	일괄	10.00	허양미외2인 (군산시산북동 587)	
			자두		2		
33	산북동	593-1	창고	조립식 판넬	24	신준호 외1 인 (군산시산북동 379)	
			창고	조립식 판넬	1		
			감나무	일괄	15		
			석류		2		
			무궁화		5		
			대추		2		
			무화과 사철나무		1		
			울타리		12M		
			뽕나무		2주		
			골단초		1주		
			박태기나무		1주		
			무궁화		2주		
계							
34	산북동	593-1	창고	조립식 판넬	24	신준호 외1 인 (군산시산북동 379)	
			감나무	일괄	5		
			대추		2		
			무궁화		3		
			무궁화		6		
계							

- 종로 1-10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산북동	2953	무궁화울(m)	일괄	30	유경려 외 1인 (군산시월명동클래시움APT203동501호)	
			감나무		5		
계							
2	산북동	798	매실	일괄(m)	10	이성구 (군산시산북동2479)	
계							
3	산북동	872-11	담장	브럭조	18	최금식 (군산시해망동1004)	
			향나무	일괄	1		
			사철		2		
			복숭아		1		
			복숭아		1주		
			매실나무		2주		
			사철	3주			
담장	24M						
계							
4	산북동	879-8	담장	브럭조	40	김영주 (옥구군미성읍산북리827)	
			감나무	일괄	2		
			배나무		3		
			포도		2		
계							
5	산북동	868-1	창고	조적조 스투트	35.75	김정애 (서울시마포구신공덕동신덕연립다동103호)	
			우물		1		
			담장	브럭조	7		
			수돗간		1		
			사철	일괄	1		
			능소화		1		
계							
6	산북동	867-1	생울타리	일괄	12	김정일 (군산시나운동489금호타운APT107동1506호)	
			모과		1		
			단풍		3		
			뽕나무		1		
계							

- 소로 1 - 279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산북동	809-1	무궁화	일괄	4	고옥룡 (군산시산북동 816-1)	
			자두		1		
			감나무		4		
			사과		2		
			매실		3		
			대추		1		
계							
2	산북동	816-1	주택 보수비포함	조적조스라브 (일괄)	35	고옥룡 (군산시산북동 816-1)	
			창고및 보일러실	조적조 스라브	17.7		
계							
3	산북동	818-3	창고	조적조 스라브	20.8	조재희 (서울마포구 도화동363-9)	
			대문	식	1		
			담장	브럭조	30		
			계단	콘크리트(일괄)	2		
			수도시설	식	1		
			바닥포장	콘크리트(식)	1		
계							
4	산북동	819-3	컨테이너		1	이도형 (서울중랑구목 동122-123)	
			담장	브럭조	15		
계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614-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개정면 능동2마을 도로개설 공사	소로 3-545	6	390	6	199	1,186	
소 계					199	1,186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3. 7.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번	지번	리	지목	지적 (㎡)	도시계획 도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614-10	발산	전	16	10	군산시				
2	614-11	발산	대	24	3	군산시				
3	621	발산	도	139	108	국(농수산부)				
4	616-1	발산	대	85	23	군산시				
5	568	통사	도	1,388	104	국(농수산부)				
6	541-9	통사	답	505	96	양태용외1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7	541-10	통사	답	67	10	양태용외1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8	541-11	통사	도	6	6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9	540-3	통사	도	51	51	군산시				
10	536-4	통사	도	26	5	군산시				
11	540-1	통사	전	1,150	15	양각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5			
12	540-2	통사	도	15	15	양준서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5			
13	541-5	통사	도	26	20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14	541-4	통사	도	198	11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15	541-3	통사	도	280	248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16	541-6	통사	도	40	36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17	541-2	통사	답	3,177	3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18	541-7	통사	도	43	23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19	541-13	통사	도	114	111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20	541-12	통사	도	152	152	양태용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47			
21	541-14	통사	도	29	29	군산시				
22	541-8	통사	도	60	49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23	542-2	통사	도	10	9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24	542-1	통사	답	352	18	신동성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82			
25	542-3	통사	도	33	31	군산시				
	합계		25필	7,986	1,186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3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	
옥서 원성마을 도로개설 공사	소로 3-728	6	297	6	112.5	770	
	소로 3-729	6	171	6	97.2	531	
소 계					209.7	1,301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3. 7.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옥봉리	146-1	도	93	81	국(재정경제원)				
2	옥봉리	52-13	전	188	7	국(재정경제원)				
3	옥봉리	60-1	도	83	83	국(건설부)				
4	옥봉리	52-9	대	1,841	116	최영례외1	군산시 산북동 2790-1	전북은 행	근저당	
5	옥봉리	52-6	대	60	60	이종상	군산시 옥봉리 19			
6	옥봉리	59-5	전	46	1	이찬	군산시 옥봉리 72			
7	옥봉리	59-7	전	123	4	이찬	군산시 옥봉리 72			
8	옥봉리	59-1	도	10	10	국(건설부)				
9	옥봉리	58-2	전	160	9	이찬	군산시 옥봉리 72			
10	옥봉리	58-1	도	23	23	국(건설부)				
11	옥봉리	57-1	대	424	34	차규복	군산시 옥봉리 1100	옥구농협	근저당	
12	옥봉리	57-2	도	552	75	국(건설부)				
13	옥봉리	53-5	전	218	21	공만규	군산시 옥봉리 56-20			
14	옥봉리	53-4	도	36	5	국(농수산부)				
15	옥봉리	53-2	대	255	2	국(재정경제원)				
합계			15필	4,112	531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1	옥봉리	1654-2	도	218	1	국(건설부)				
2	옥봉리	32-4	대	10	10	백남석	부안군 상서면 통저리 543-1			
3	옥봉리	33-3	대	41	41	국(경찰청)				
4	옥봉리	50-1	대	70	70	윤광치	군산시 월명동 3-5			
5	옥봉리	50	대	426	6	윤광치	군산시 월명동 3-5			
6	옥봉리	49	대	126	5	최정자	군산시 옥봉리 49	삼성,신 한,엘지	가압류	
7	옥봉리	49-1	대	23	23	최정자	군산시 옥봉리 49	삼성,신 한,엘지	가압류	
8	옥봉리	38-3	대	48	48	전향례	군산시 중앙로1가 8-3			
9	옥봉리	47-3	대	7	7	박해원외1	군산시 옥봉리 47			
10	옥봉리	38-4	대	6	6	박해원외1	군산시 옥봉리 47			
11	옥봉리	39-8	도	20	20	김태형	노원구 중계 신안@101/1304			
12	옥봉리	39-3	도	221	65	국(건설교통부)	군산시 중1가 85			
13	옥봉리	39-2	도	7	4	국(건설교통부)				
14	옥봉리	47-4	대	1	1	박해원외1	군산시 옥봉리 47			
15	옥봉리	147-3	대	36	36	민동기	군산시 옥봉리 147			
16	옥봉리	51-1	전	99	99	김대석	목포시 옥암 한라비달디@104/504			
17	옥봉리	147-2	대	453	1	민동기	군산시 옥봉리 147			
18	옥봉리	115-252	대	52	1	이형식	군산시 옥봉리 50			
19	옥봉리	1654-5	도	3,780	274	국(건설부)				
20	옥봉리	51	전	1,253	40	김대석	목포시 옥암 한라비달디@104/504			
21	옥봉리	146-1	도	93	12	국(건설부)				
합 계			21	6,990	770	국(재정경제원)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지 장 물 소 재 지				편입물		편입량	면적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건 명				주 소	성명	
1	군산	옥서	옥봉	53-5	창고	조립식	1동	3.4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56-20	공만규	
					웬스		1식				
2	군산	옥서	옥봉	57-1	담장	콘크리트블록	1식	38.95㎡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100	차규복	
					대문	철재	1식				
					수목	유실수	2그루				
3	군산	옥서	옥봉	52-9	창고	블록+스레트	4동	166.56㎡	군산시 산북동 2790-1	최영례외1인	
					담장	콘크리트블록	2식	12.30㎡			
4	군산	옥서	옥봉	146-5	창고	블록+슬라브	1동	5.13㎡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46-5		
					담장	콘크리트블록	4식	33.72㎡			
					대문	철재	1식				
5	군산	옥서	옥봉	115-252	주택	블록+스레트	1동	70.0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0	이형식	
					창고	블록+슬라브	1동	3.78㎡			
					화장실	블록+슬라브	1동	2.88㎡			
					담장	콘크리트블록	2식	7.08㎡			
					대문	철재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6	군산	옥서	옥봉	50	주택	블록+스레트	1동	24.56㎡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0	이형식	
					화장실	블록+슬라브	1동	11.07㎡			
					담장	콘크리트블록	5식	54.09㎡			
					대문	철재	1식				
					수목	유실수	10그루				
7	군산	옥서	옥봉	38-2	창고	블록+스레트	1동	2.72㎡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38-2		
					담장	콘크리트블록	3식	10.52㎡			
8	군산	옥서	옥봉	47-1	창고	블록+스레트	1동	5.6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47-1		
9	군산	옥구	옥봉	49	주택(상가)	블록+스레트	1동	64.22㎡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49	최정자	
					창고	합석	1동	24.19㎡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4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1355-3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m)	연장 (m)	폭원(m)		연장(m)			면적(㎡)
				기개설	금회	기개설	금회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공사	소로 2-323	8	610	6	8	60	60	143	폭원 8m로 미개설된 구간(L=60m) 확.포장
				8	-	550	-		
소 계						610	60	143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2. 7. 3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도시계획 도로(㎡)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관리내용	
1	소룡동	1355-39	대	5	5	대한불교조계종 은적사	소룡동 1332			
2	소룡동	1355-38	대	38	38	대한노인회군산 지부소룡동분회	군산시 소룡동 1355-14			
3	소룡동	1355-37	대	33	33	임 경 배	군산시 소룡동 1355-13			
4	소룡동	1355-36	대	27	27	오 정 식	전남 영광군 낙월면 각이리 48			
5	소룡동	1355-35	대	23	23	한 정 후	군산시 소룡동 1355-11			
6	소룡동	1355-34	대	17	17	박 연 출	익산시 모현동 1가 641			

군산시 고시 제2010 - 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8.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현대 메트로타워 신축공사(분양)
2. 사업주체 : 군산시 조촌동 895-16 현대한솔아파트 101호
(유)현대주택건설 대표이사 조성석
3. 사업위치 :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4. 사업내용
 - 가. 대지면적 : 17,453.7m²
 - 나. 건축면적 : 12,275.3715m²
 - 다. 연 면 적 : 95,471.8144m²(용적을 산정용 73,259.8825m²)
 - 라.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1층(2동), 33층(2동), 614세대
 - 106.7817m²형 전용면적 76.2648m² 120세대
 - 106.9369m²형 전용면적 76.2648m² 128세대
 - 118.2811m²형 전용면적 84.9348m² 120세대
 - 118.4542m²형 전용면적 84.9348m² 128세대
 - 118.5119m²형 전용면적 84.9352m² 58세대

- 118.6901m²형 전용면적 84.9352m² 60세대

마.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업비 : 69,276,700천원

사. 사업기간 : 2009년 4월 ~ 2011년 9월

5.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 : 182.88m²

- 어린이놀이터 : 635.0m²

- 노인정 : 94.4168m²

- 문고 94.4168m² 등 기타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063-450-4471)하시기 바랍니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	대명동 현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일원	18,779.1	감 195	18,584.1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변경	21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18,779.1 → 18,584.1 (감 195) 	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북측에 접하여 있는 신규 아파트예정지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구역 일부 제척

2.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72	15.5	국지 도로	184 (184)	대로 2-3	대로 3-5	일반 도로		건고91 ('68.7.22)	폭원확장 노선연장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I	18,779.1	감 195	18,584.1	①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17,648.7	감 195	17,453.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구역일부제척
				②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외 4필	1,031.6	-	1,031.6	도시계획도로용지 (중로2-72호선)
				③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98.8	-	98.8	일반도로용지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지구단위계획결정	법규정(군산시조례등) <참 고>
①	군산시 대명동 385-60번지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이하(조례)
		용적률	▣ 460.0%이하	▣ 1,000%이하(조례)
		높 이	▣ 최고높이 : 33층 이하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차 량 동 선	진 출 입 선	▣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무분별한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차량 출입허용구간 1개소 및 비상출입구 1개소 지정
	교통안전 시 설	▣ 단지내 도로곡선 구간 및 교차구간 반사경 설치로 시거확보(8개소) ▣ 과속위험구간 과속방지턱 설치(3개소) ▣ 사업지 남측, 남서측 가로보행자 보호용 가드웬스 설치(L=159m) ▣ 비상출입구 접근부에 탈착식 볼라드 설치(2개소)
보 행 동 선		▣ 사업지 남측가로(대명1길)전면 확폭구간 사업지측 보도확보(B=1.5m) ▣ 단지내 보행동선 단절구간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4개소)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도 : 실음생략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07호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1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동 32-4번지외 1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의 면적

시설명	결정면적	면 적	비 고
연구시설	5,078㎡	5,078㎡	
		5,078㎡	

나. 사업의 규모

구분	변경후
건축규모	본관동 3개동
건축면적 (건폐율)	1,141.78㎡ (22.48%)
연면적 (용적률)	4,048.26㎡ (79.72%)

3.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경암학원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09.10.~'10.9.30. 변경 '09.10.~'10.11.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내용			비고
		본번	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내 용	
1	개정동	32	4	차	476	476	476	476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2	개정동	32	59	도	-	-	104	104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3	개정동	32	41	대	337	315	317	317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4	개정동	32	42	대	245	245	245	245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5	개정동	32	43	대	221	221	221	221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6	개정동	32	44	도	321	321	321	321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7	개정동	32	45	대	397	397	397	397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8	개정동	32	46	대	245	245	245	245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9	개정동	32	47	대	228	228	228	228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0	개정동	32	48	도	344	344	344	344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1	개정동	32	49	대	420	420	420	420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2	개정동	32	50	대	245	245	245	245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3	개정동	32	51	대	231	231	231	231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4	개정동	32	52	도	357	357	357	357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5	개정동	32	53	잡	688	688	688	688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16	개정동	32	54	대	248	243	239	239	개정동 413	학교법인 경암학원	-	-	-	
합 계		16개 필지			5,003	4,976	5,078	5,078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0 - 108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일

군 산 시 장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5	임피구획 정리지구	임피면 월하리, 술산리 일원	148,691.9	-	148,691. 9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1	20	간선도로	462	남측지구계 술산리 723도	동측지구계 월하리914도	
"	"	2	1	15	간선도로	638	중 1-1 술산리 723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	소로	2	1	8	국지도로	120	중 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2도	
"	"	2	2	8	국지도로	594	소 2-1 월하리 912도	소(보) 2-3 월하리 916도	
"	"	2	3	8	국지도로	124	중 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2도	
"	"	2	4	8	국지도로	105	중 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	"	2	5	8	국지도로	191	중 2-1 월하리 914도	소 2-6 월하리 915도	
"	"	2	6	8	국지도로	149	중 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5도	
"	"	2	7	8	국지도로	149	중 2-1 월하리 914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6도	
"	"	2	8	8	국지도로	490	소 2-5 술산리 721도	중 2-1 술산리 723도	
"	"	2	9	8	국지도로	115	중 2-1 술산리 723도	남측지구계 술산리 721도	
"	"	2	10	8	국지도로	310	소 2-8 술산리 721도	소 2-8 술산리 722도	
"	"	2	11	8	국지도로	91	중 2-1 술산리 723도	소 2-8 술산리 721도	
"	"	2	12	8	국지도로	104	소 2-2 월하리 916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6도	
"	"	3	1	6	국지도로	118	소 2-1 월하리 912도	소 2-2 월하리 912도	
"	"	3	2	6	국지도로	113	소 2-5 월하리 912도	북측지구계 월하리 913도	
"	"	3	3	6	국지도로	229	중 2-1 술산리 723도	소 2-9 술산리 721도	
"	"	2	1	8	보행자 도로	17	중 2-1 월하리 914도	남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	"	2	2	8	보행자 도로	17	중 2-1 월하리 914도	남측지구계 월하리 914도	
"	"	2	3	8	보행자 도로	9	중 1-1 월하리 914도	소 2-2 월하리 916도	
"	"	2	4	8	보행자 도로	20	중 1-1 술산리 723도	소 2-8 술산리 722도	

(2) 공원조서 (변경없음)

1. 구 분	2. 표 3. 번 호	4. 시설명	5. 시 설 의 6. 세 분	7. 위치	8. 면적(m ²)			9. 최초 10. 결 정 일	11. 비고
					12. 기정	13. 변경	14. 변경후		
계		2개소		4,474.7		4,474.7			
기정	1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월하리 901 공	2,044.6	-	2,044.6	임피구획 정리지구	
기정	2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월하리 910-2 공	2,430.1	-	2,430.1	임피구획 정리지구	

(3) 주차장 (변경없음)

15. 구 분	16. 표 17. 번 호	18. 시설명	19. 위치	20. 면적(m ²)			21. 최초 22. 결정일	23. 비고
				24. 기정	25. 변경	26. 변경후		
계		1개소		904.6		904.6		
기정	1	주차장	월하리 910-2	904.6	-	904.6		

다. 토지이용계획 및 행위제한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8,691.9	-	148,691.9	100.0	
주 택 용 지	91,962.0	-	91,962.0	61.85	
단 독	72,201.7	-	72,201.7	48.56	
공 동	19,760.3	-	19,760.3	13.29	
상 업 용 지	9,211.3	-	9,211.3	6.19	
공 공 용 지	47,518.6	-	47,518.6	31.96	
도 로	42,139.3	-	42,139.3	28.34	
공 원	4,474.7	-	4,474.7	3.01	
주 차 장	904.6	-	904.6	0.61	

(2) 행위제한 (변경없음)

용 도		행위제한	비고
주거 용지	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에서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및 노래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업소는 제외한다)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가, 나목에 해당하는 것(12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에 한함)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방송국통신시설에 한한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①	1	2,667.0	월하리	893-1	415.2	단독주택용지
				893-2	726.3	"
				893-3	261.8	"
				893-4	554.9	"
				893-5	372.8	"
				893-6	336.0	"
①	2	2,260.8	월하리	894-1	717.4	단독주택용지
				894-2	903.6	"
				894-3	639.8	"
①	3	3,355.8	월하리	895-1	850.1	단독주택용지
				895-2	384.5	"
				895-3	372.4	"
				895-4	788.0	"
				895-5	518.3	"
				895-6	442.5	"
①	4	1,437.8	월하리	896-1	189.5	단독주택용지
				896-2	370.1	"
				896-3	522.7	"
				896-4	355.5	"
①	5	3,155.5	월하리	897-1	358.0	단독주택용지
				897-2	1,899.1	"
				897-3	360.0	"
				897-4	538.4	"
①	6	3,395.7	월하리	898-1	354.1	단독주택용지
				898-2	339.6	"
				898-3	550.6	"
				898-4	902.9	"
				898-5	339.4	"
				898-6	176.0	"
				898-7	150.6	"
				898-8	150.6	"
				898-9	216.9	"
				898-10	215.0	"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①	7	4,545.7	월하리	899-1	1,599.2	단독주택용지
				899-2	534.5	"
				899-3	552.7	"
				899-4	486.4	"
				899-5	562.1	"
				899-6	810.8	"
①	8	1,907.1	월하리	900-1	508.4	단독주택용지
				900-2	324.7	"
				900-3	167.2	"
				900-4	430.7	"
				900-5	214.9	"
				900-6	261.2	"
①	9	2,044.6	월하리	901	2,044.6	어린이공원
①	10	2,963.4	월하리	902	2,963.4	단독주택용지
①	11	1,241.9	월하리	903-1	257.2	단독주택용지
				903-2	226.2	"
				903-3	167.3	"
				903-4	343.1	"
				903-5	248.1	"
①	12	3,524.3	월하리	904-1	1,513.5	단독주택용지
				904-2	980.2	"
				904-3	735.2	"
				904-4	295.4	"
①	13	3,393.9	월하리	905-1	1,076.3	단독주택용지
				905-2	669.2	"
				905-3	264.0	"
				905-4	266.1	"
				905-5	394.9	"
				905-6	254.1	"
				905-7	188.4	"
				905-8	280.9	"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①	14	4,216.5	월하리	906-1	811.4	단독주택용지
				906-2	629.8	"
				906-3	320.6	"
				906-4	646.0	"
				906-5	241.5	"
				906-6	426.4	"
				906-7	909.8	"
				906-8	231.0	"
①	15	4,328.0	술산리	754-1	613.1	단독주택용지
				754-2	755.5	"
				754-3	406.0	"
				754-4	220.1	"
				754-5	313.3	"
				754-6	473.2	"
				754-7	209.7	"
				754-8	329.2	"
				754-9	260.4	"
				754-10	747.5	"
①	16	3,629.6	술산리	755-1	343.6	단독주택용지
				755-2	560.2	"
				755-3	1,873.1	"
				755-4	276.3	"
				755-5	576.4	"
①	17	4,779.7	월하리	907-1	1,074.4	단독주택용지
				907-2	940.2	"
				907-3	1,023.7	"
				907-4	751.9	"
				907-5	989.5	"
①	18	4,616.2	월하리	908-1	1,659.5	단독주택용지
				908-2	1,146.4	"
				908-3	1,163.0	"
				908-4	647.3	"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①	19	3,938.5	월하리	909-1	290.7	단독주택용지
				909-2	396.5	"
				909-3	307.3	"
				909-4	407.7	"
				909-5	228.6	"
				909-6	229.4	"
				909-7	700.6	"
				909-8	832.8	"
				909-9	229.8	"
				909-10	315.1	"
①	20	4,051.4	술산리	756-1	1,075.8	단독주택용지
				756-2	365.5	"
				756-3	733.4	"
				756-4	127.0	"
				756-5	774.2	"
				756-6	479.6	"
				756-8	495.9	"
①	21	4,131.0	술산리	757-1	491.1	단독주택용지
				757-2	203.5	"
				757-3	220.0	"
				757-4	309.1	"
				757-5	441.0	"
				757-6	385.2	"
				757-7	525.1	"
				757-8	489.8	"
				757-9	204.5	"
				757-10	205.3	"
				757-11	451.8	"
				757-12	204.6	"
①	22	1,326.4	월하리	910-1	1,326.4	단독주택용지
①	23	2,430.1		910-2	2,430.1	어린이공원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①	24	3,702.3	월하리	911-1	465.0	상 업 용 지
				911-2	484.0	"
				911-3	373.7	"
				911-4	899.6	"
				911-5	433.3	"
				911-6	800.8	"
				911-7	245.9	"
①	25	3,496.3	술산리	758-1	297.7	상 업 용 지
				758-2	870.1	"
				758-3	687.8	"
				758-4	412.5	"
				758-5	550.7	"
				758-6	457.0	"
				758-7	220.5	"
①	26	3,335.5	술산리	759-1	244.4	단독주택용지
				759-2	849.5	"
				759-3	642.9	"
				759-4	239.7	"
				759-5	204.6	"
				759-6	201.0	"
				759-7	595.4	"
				759-8	354.6	"
				759-9	3.4	"
①	27	2,012.7	술산리	760-1	381.2	상 업 용 지
				760-2	297.9	"
				760-3	202.2	"
				760-4	204.4	"
				760-5	421.7	"
				760-6	505.3	"
①	28	19,760.3	술산리	761	19,760.3	공동주택용지
①	29	904.6	월하리	910-3	904.6	주 차 장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변경결정 조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 정	변 경	
①	1	월하리 893-1~6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	월하리 894-1~3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3	월하리 895-1~6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4	월하리 896-1~4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5	월하리 897-1~4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6	월하리 898-1~ 10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7	월하리 899-1~6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8	월하리 900-1~6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9	월하리 901	용 도	어린이공원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기 정	변 경	
①	10	월하리 902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1	월하리 903-1~5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2	월하리 904-1~4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3	월하리 905-1~8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4	월하리 906-1~8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5	술산리 754-1~ 10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6	술산리 755-1~5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7	월하리 907-1~5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18	월하리 908-1~4	용도	어린이공원		
			건폐율			
			용적율			
			높이			
	19	월하리 909-1~ 10	용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	6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이	-	-	

도 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구 번호	획 지 번호		기 정	변 경	
①	20	술산리 756-1~ 6,8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1	술산리 757-1~ 12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2	월하리 910-1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3	월하리 910-2	용 도	어린이공원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24	월하리 911-1~7	용 도	상업용지	상업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5	술산리 758-1~7	용 도	상업용지	상업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6	술산리 759-1~9	용 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7	술산리 760-1~6	용 도	상업용지	상업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8	술산리 761	용 도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율	-	200%이하	
			높 이	-	-	
	29	월하리 910-3	용 도	주차장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구 변경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5	개발 진흥지구	주거개발진 흥지구	임피면 월하리, 술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148,691. 9	97. 7. 24	-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0 - 109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0. 9 . .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군산시 대야면산월리 795-1번지일원	29,995	+180	30,175	전북고6 ('03. 1)	세부조성 계획변경

2.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 내용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세 부 시설명	부지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95.00	180.00	30,175.00	
운동시설	소 계		14,597.00	2,074.00	16,671.00	
	1	축구장	8,970.00	1,294.00	10,264.00	
	2	테니스장	833.00	755.00	1,588.00	
	3	게이트볼장	781.00	-	781.00	
	4	실내체육장	3,180.00	-	3,180.00	
	5	족구장	833.00	- 143.00	690.00	
	6	배트민턴장	-	168.00	168.00	
편익시설	소 계		4,430.00	2,675.00	7,105.00	
	1	주차장	3,445.00	1,569.00	5,014.00	
	2	광장	985.00	5.00	990.00	
	3	라커룸	-	426.00	426.00	
	4	스탠드	-	562.00	562.00	
	5	본부석	-	113.00	113.00	
기타시설	소 계		3,274.00	- 1,929.00	1,345.00	
	1	운동장내도로	560.00	-	560.00	
	2	도시계획도로	1,929.00	- 1,929.00	-	
	3	대체도로	785.00	-	785.00	
녹지시설	소 계		7,694.00	- 2,640.00	5,054.00	
	1	녹 지	7,694.00	- 2,640.00	5,054.00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11호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10.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나포면 나포리 33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증축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 면 적 : 8,801㎡
 - ▷ 규 모 : 건축연면적 1,652.85㎡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 ▷ 사업시행자 성명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 2010. 5. ~ 2010. 9. 30.
 - ▷ 변경 : 2010. 5. ~ 2011.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변경없음)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	대	8,801	8,801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계	1필지		8,801	8,801						

군산시 고시 제2010 - 112호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 정정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0. 9 . .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군산시 대야면산월리 795-1번지일원	29,995	+180	30,175	전북고6 ('03. 1)	세부조성 계획변경

2. 도시관리계획(운동장) 변경결정 내용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세 부 시설명	부지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95.00	180.00	30,175.00	
운동시설	소 계		14,597.00	2,074.00	16,671.00	
	1	축구장	8,970.00	1,294.00	10,264.00	
	2	테니스장	833.00	755.00	1,588.00	
	3	게이트볼장	781.00	-	781.00	
	4	실내체육장	3,180.00	-	3,180.00	
	5	족구장	833.00	- 143.00	690.00	
	6	배트민턴장	-	168.00	168.00	
편익시설	소 계		4,430.00	2,675.00	7,105.00	
	1	주차장	3,445.00	1,569.00	5,014.00	
	2	광장	985.00	5.00	990.00	
	3	라커룸	-	426.00	426.00	
	4	스탠드	-	562.00	562.00	
	5	본부석	-	113.00	113.00	
기타시설	소 계		3,274.00	- 1,929.00	1,345.00	
	1	운동장내도로	560.00	-	560.00	
	2	도시계획도로	1,929.00	- 1,929.00	-	
	3	대체도로	785.00	-	785.00	
녹지시설	소 계		7,694.00	- 2,640.00	5,054.00	
	1	녹 지	7,694.00	- 2,640.00	5,054.00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0 - 113호

고 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 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9 . .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1번지 일원	47,629	감)441	47,188	군산고14 (‘10.2.26)	등록전환시 면적정정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내용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구분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주 소	성 명	
		기정	9개 필지			47,629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주식회사 남성환경	
		변경	9개 필지			47,188	"	"	
1	산곡리	-	624		답	3,881	"	"	
2	산곡리	-	624	1	대	1,438	"	"	
3	산곡리	-	624	2	잡	3,240	"	"	
4	산곡리	-	629	7	전	3,982	"	"	
5	산곡리	-	630		답	545	"	"	
6	산곡리	-	631		잡	1,045	"	"	
7	산곡리	-	632		답	1,329	"	"	
8	산곡리	-	633		답	764	"	"	
9	산곡리	기정	산44	5	임	31,405	"	"	등록전환으로 면적정정
		변경	633	1	임	30,964	"	"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승인도서 : 실음생략.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 실음생략. 끝.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39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9. 3.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내초동 187-29번지외 13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2)명 칭 : 군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 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면적(m ²)	면적(m ²)	
자동차정류장	군산공영차고지	56,912	56,912	
소 계		56,912	56,912	

-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교통행정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9. ~ 2015. 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0-4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성명	주소	
1	군산시	내초동	187-29	답	1,870	1,533.0	군산시	국	
2	군산시	내초동	187-6	답	4,827	4,428.0	군산시	국	
3	군산시	내초동	187-7	답	5,008	4,603.0	군산시	국	
4	군산시	내초동	187-8	답	4,959	4,551.0	천경식	서울강서구 내발산동665	
5	군산시	내초동	187-9	답	4,959	4,562.0	한화숙	군산시 구암동323-22	
6	군산시	내초동	187-10	답	5,018	4,607.0	강정순	군산시 경장동493-2	
7	군산시	내초동	187-11	답	4,899	4,464.0	최수경	군산시 미장동380-19	
8	군산시	내초동	188-24	답	1,478	1,478.0	정성래	군산시 산북동 2937-2	
9	군산시	내초동	188-5	답	4,828	4,828.0	정성래	군산시 산북동 2937-2	
10	군산시	내초동	188-6	답	5,008	5,008.0	한화숙	군산시 구암동323-22	
11	군산시	내초동	188-7	답	5,008	5,008.0	한화숙	군산시 구암동323-22	
12	군산시	내초동	188-8	답	5,068	5,068.0	빈상호	군산시 동홍남동 139	
13	군산시	내초동	188-9	답	4,694	4,694.0	최수경	군산시 미장동380-19	
14	군산시	내초동	226-79	구	3,074	2,080.0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0,698	56,91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조서

소재지			측점	한전주		신주		비고
시	리동	지번		연번	주수	연번	주수	
군산시	소룡동	10-9잡	0-55	0734E441-109	1			1
군산시	소룡동	10-7도	0-10	0734E331-108	1			2
군산시	소룡동	10-6잡	2+5	0734E231-107	1			3

군산시 공고 제2010-1436호

익산~대야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대야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9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대야 복선전철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 업 기 간 : 2005년~2013년
- 총 연 장 : 14.312km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 람 기 간 : 2010년 9월 14일 ~ 2010년 10월 14일
- 공 람 장 소 : 군산시 환경위생과, 대야면, 임피면

3. 주민설명회 개최

시·군	일 시	장 소
군산시	2010. 9. 28, 14:00	대야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따른 저감방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0년 0월 00일까지)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063-450-4331)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영향평가팀☎ 042-607-3496)

군산시 공고 제2010- 1437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군장국가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9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 오식도동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
- 총 연 장 : 30.99km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0년 09월 15일 ~ 2010년 10월 15일(20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 환경위생과 및 미성동, 옥구읍, 나운5동, 옥산면, 대야면, 개정면

구 분	일 시	장 소
1회	2010. 09. 29 10시	옥산면사무소
2회	2010. 09. 29 14시	옥구읍사무소

3.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4. 주민의견 제출

- 대상 및 제출내용 :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
- 주민의견 제출기한 : 2010년 10월 15일까지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063-450-6166),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4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0-1456호

관광안전요원 선발 공고(재공고)

은파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광안전요원 선발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군 산 시 장

1. 관광안전요원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2명
- 근무처 : 은파관광지
- 근무기간 : 2010. 9.17 ~ 11.17(2개월)
- 신청기간 : 2010. 9.14 ~ 9.16(3일간)
- 신청서류
 -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 등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무내용

- 은파관광지 종점광장 벽천분수 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
- 은파관광지 낚시행위 단속 및 낚시금지 계도
- 은파관광지내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

2. 선발 및 근무기준

- 선발(채용)기준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준용
 - 연령제한 : 18세 이상 58세 미만
 -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 필 또는 면제된 자
 - 신체조건 : 신장-160cm 이상, 체중 50kg 이상
시력-양안의 나안 각각 0.2이상, 교정시력 0.8이상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자

○ 근로계약 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군산시의 축제, 행사, 관광지의 여건등을 감안, 토·일요일 및 야간근무
가능자 우대
- 인건비 : 일당 35,000원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063-450-4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0년 - 1458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생활체육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0. 9. 17.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체육시설관리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대야면 산월리 795-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운동장:대야 생활체육시설)
 - 2) 명 칭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 조성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		실시계획 (㎡)			비 고
		당 초	변 경	기 조성	금 회	미 조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7,213	30,175	17,213	12,962	-	
소 계			30,175		12,962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9. ~ 2012. 6.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체육시설관리과 (450-6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1	대야면 산월리	784-17	답	63	63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643 계룡@6-206	김병찬	
2	"	784-18	답	85	85	대전광역시 중구 서선화동 156-7	정은하	
3	"	784-19	답	2	2	경남 김해시 삼방동 234-7 효동빌라 401	최광숙	
4	"	784-20	답	289	2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29. 301호	조성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1 다모아@ 102-606	윤정균	
						충남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492	박순자	
5	"	784-15	답	463	463	전남 영암군 상호읍 용당리 2179-1 삼호2차 사원임대 @207-706	박희용	
						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동 89-15. 401호	김용희	
6	"	784-21	답	166	16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10 목련@105-902	박현정	
7	"	785-1	전	69	69		군산시	
8	"	790-1	전	67	67		군산시	
9	"	791-1	전	602	602		군산시	
10	"	792-4	전	571	571		군산시	
11	"	792-5	전	21	21		군산시	
12	"	792-6	전	762	762		군산시	
13	"	795-8	답	612	612		군산시	
14	"	795-7	답	3,669	3,669	대야면 산월리 624-3	두종석	
15	"	796-15	전	324	324		군산시	
16	"	796-17	전	553	553		군산시	
17	"	796-16	답	2	2		군산시	
18	"	815-5	전	372	372		군산시	
19	"	985-21	도	61	61		국 (농수산부)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20	대야면 산월리	985-22	도	144	144		국 (농수산부)	
21	"	793	답	519	519	군산 나운동 롯데3차 207/901	김성옥	
22	"	794	답	2,579	2,579	군산 나운동 롯데3차 207/901	김성옥	
23	"	813	답	298	298		군산시	
24	"	814	답	151	151		군산시	
25	"	815-6	도	55	55		군산시	
26	"	813-3	답	314	314		군산시	
27	"	813-4	도	106	106		군산시	
28	"	814-3	도	31	31		군산시	
29		795-1	체	3,735	3,735		군산시	
30		795-4	체	3,313	3,313		군산시	
31		795-5	체	3,735	3,735		군산시	
32		795-6	체	1,907	1,907		군산시	
33		796-12	체	823	823		군산시	
34		803-1	체	1,368	1,368		군산시	
35		804	체	281	281		군산시	
36		805	체	760	760		군산시	
37		806-1	체	608	608		군산시	
38		982-1	체	380	380		군산시	
39		985-17	체	166	166		군산시	
40		985-18	체	149	149		군산시	
계					30,175			

군산시공고 제2010-146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실사를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군산시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실사를 위한 업무보조 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함을 재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1명

업 무	채용인원	근무지	비 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실사를 위한 업무보조 요원(사무직)	1명	군산시청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응시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가 공고일 현재 군산시로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상 주소가 최소 1년 이상 군산시로 되어있는 자
- 만20세 이상 남·녀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3개월)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수준 : 1일 35,000원(4대 보험가입)

선발기준

- 군산시 취업규칙 제9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기간 동안 담당업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유자 및 행정사무 경력자 우대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보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0. 9. 16 ~ 9. 17(2일간) ☞ 18:00까지
 - 응시원서 교부처 : 군산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9. 29(수) ☞ 개별통보

 면접시험

- 일 시 : 2010. 9. 28(화) 16:00
- 장 소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6층)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063-450-6240)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 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